

2015 연구보고

도서관에서의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방안 연구

- 법정허락을 중심으로 -

2015. 12



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CIP2015034799)

제 출 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도서관에서의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방안 연구: 법정허락을 중심으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12

-
- 연구책임자 : 정 경 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
 - 공동연구원 : 안 효 질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 호 신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교수)
김 규 환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

이 연구는 2015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연구개발비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이나 의견 등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를 밝혀 둡니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하고 있는 자료 중 고아저작물을 관외전송서비스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규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이 대량으로 고아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현행 저작권법의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현행 저작권법의 법정허락 승인신청에 따른 저작물 1건당 1만원의 수수료와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고아저작물 사용료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도서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점, 외국인저작물이 승인신청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도서관에 소장된 외국인 저작물이 고아저작물일 경우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 성실한 노력의 4번째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대량의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려는 도서관이 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둘째, 국외현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입법의 형태가 법정허락의 방식이든 저작재산권 제한의 방식이든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대량 디지털화하여 관외전송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저작권법에 마련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었다. EU지침을 따르고 있는 국가들은 권리자가 출현한 후 도서관이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호주는 유연한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기존에 법정허락제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와 일본은 도서관을 위한 법정허락 예외규정은 없으나 실무에서 도서관이 공익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이용에 비해 매우 낮은 명목상의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헝가리의 경우 EU지침에 따른 고아저작물 예외규정 도입이전에 마련한 법정허락 예외규정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고아저작물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이용행위 전에 공탁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셋째, 국가대표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현행 저작권법 제50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대표도서관에 대한 법정허락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보상금

을 기준으로 고아저작물의 관외전송 및 관내외 출력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되, 이를 공탁하는 대신 권리자가 나타나 보상금을 요청할 경우 도서관이 직접 저작재산권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승인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 등이다. 또한 상당한 노력의 4번째 기준인 ‘국내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한 권리자찾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이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향후 디지털화하는 자료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수행하는 절차, 디지털화된 원문 자료의 목록에 저작권관련 정보를 포함시킬 것, 권리자찾기 데이터베이스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SUMMARY

This study proposed amendment of statutory license provisions related to Copyright Act of Korea Article 50, 'Exploitation of Works in Which the Owner of Author's Property Rights is Not Known', for the purpose of transmitting to the public orphan works that are currently being digitalized by National Library of Korea (NLK).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when NLK uses orphan works in large quantity, the following problems occur with regards to relevant provisions in current Copyright Law. NLK cannot bear the current cost for using a work upon statutory license based on Copyright Law, 10,000 KRW per work, and fees for using an orphan work that is based on the commission decided by the relevant copyright management agency. Foreigners' works are fundamentally excluded from eligible works for statutory license, and, therefore, unable to use an orphan work stored in the library that was created by a non-Korean author. And the fourth requirement of 'considerable effort' is excessively ambiguous and general, and, therefore, cannot be performed by a library that intends to use orphan works in large quantity.

Second, the study on overseas cases showed that, unlike in South Korea, other countries established or are preparing measures in copyright law that allow a library to digitalize orphan works in large quantity and transmit to the public at the minimum costs, by using either statutory license or exception of authors property right. In the case of countries that follow the relevant EU directive demands, when the right holder appears, libraries library make fair compensation for the use of the relevant work until that time, while Australia applies a flexible exemption so that libraries can use orphan works without the burden of relevant costs. Canada and Japan have the statutory license system charge only a nominal fee to libraries using

orphan works for public purposes although no specific exemption is applied. Before adopting the exemption according to the EU directive, Hungary used to apply exemption to use of orphan works for non-profitable purposes that allowed users to not deposit the relevant fees before the said use.

Third, it is necessary to add an exemption provision to Copyright Act of Korea Article 50 so that NLK can digitalize and disclose orphan works on the internet. By creating a provision that provides exemption from court permission, NLK should be exempted from the application fee; calculate and deposit the compensation for transmitting to the public or printing orphan works based on the library remuneration fees; and, when the right holder appears and requests the compensation, it can directly provide the payment to the right holder. Also, the fourth requirement of 'considerable effort' must give more details for searching for the right holder by using information search tools related to domestic information networks.

Fourth, this study proposes process by which NLK can use works preferentially and make 'considerable effort' to digitalize copyright works in the future by using the statutory license system, and that NLK can include information related to copyright on the digitalized fulltext database. Also, the study proposed a way to link right holder database and catalogue database of NLK.

목 차

제1장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국내외 국립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현황 분석	3
2.1. 국내 현황	3
2.1.1.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현황	3
2.1.2. 도서관보상금 징수 자료 중 고아저작물 현황	4
2.1.3.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현황	5
2.2. 국외 국립도서관의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서비스 현황	7
2.2.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7
2.2.2. 미국 의회도서관	13
2.2.3. 프랑스 국립도서관	16
2.2.4. 영국 국립도서관	18
2.2.5. 독일 국립도서관	20
제3장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각국 제도 분석	22
3.1. 한국	22
3.1.1. 상당한 노력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23
3.1.2. 고아저작물 이용 승인 및 보상금 공탁 절차	26
3.1.3. 고아저작물 검색을 위한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29
3.1.4. 평가	37

3.2. 유럽연합	38
3.2.1. 고아저작물에 관한 지침	38
3.2.2. 고아저작물지침에 대한 평가	46
3.2.3. 접근방법상 우리법과의 차이	50
3.2.4. 고아저작물 검색 DB	51
3.3. 영국	56
3.3.1. 저작권법에서 법정허락제도 및 고아저작물 규정 현황	56
3.3.2. 고아저작물 관련 법 개정 경과	56
3.3.3.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규정	57
3.3.4. 도서관 및 문화유산기관을 위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예외	58
3.3.5. 성실한 노력의 요건	62
3.4. 프랑스	65
3.4.1. 고아저작물	65
3.4.2. 절판저작물	65
3.5. 독일	68
3.5.1. 법정허락제도와 고아저작물의 취급	68
3.5.2. 법개정안	69
3.5.3. 2013년 저작권법 개정	70
3.6. 헝가리	72
3.6.1. 2008년 개정 저작권법	72
3.6.2. 2013년 개정 저작권법	83
3.7. 일본	89
3.7.1. 저작권법상 도서관 관련 조항	89
3.7.2. 재정신청 제도	90
3.8. 미국	94
3.8.1. 현행 법률과 제도	94
3.8.2. 고아저작물 관련 법률 개정 시도에 대한 검토	96

3.9. 캐나다	101
3.9.1. 저작권법 제77조	101
3.9.2. 합리적 노력	101
3.9.3.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대한 예외	102
3.10. 호주	104
3.10.1. 유연한 예외 규정	104
3.10.2. 강제허락제도	105
3.10.3. 법률개정위원회 보고서	106
3.11. 비교분석	107
제4장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정허락 제도 적용 방안 제안 —	116
4.1. 제도개선의 필요성	116
4.2.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정허락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118
4.2.1.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 도입	118
4.2.2. 보상금의 기준과 공탁에 갈음하는 절차	119
4.2.3. 수수료의 면제	122
4.2.4. 상당한 노력의 문제	123
4.3.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적용 및 서비스 방안 제안	124
4.3.1.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적용	124
4.3.2. 디지털화와 상당한 노력의 수행	125
4.3.3. 법정허락제도를 활용한 서비스	126
4.3.4. 권리자찾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베이스 연계	128
제5장 결 론 —	129

표 목 차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연도별 도서관보상금 부과대상 자료의 디지털화 현황	4
<표 2> 연도별 도서관보상금 미분배율	5
<표 3> 2004~201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상금 징수 저작물 및 분배저작물 수	6
<표 4>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보상금 징수자료에 대한 보상금 분배 현황(연도별)	6
<표 5>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의 디지털화 자료 현황(2015년 8월)	8
<표 6> 상당한 노력의 절차	25
<표 7> 1년마다 재발행되는 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진송	27
<표 8>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저작물(2015년 11월 현재)	29
<표 9> 저작권등록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등록저작물 현황	30
<표 10> 승인된 저작권신탁관리업 단체	32
<표 11> 저작권찾기 사이트에 등록된 위탁관리 저작물 현황	33
<표 12> 저작권찾기 사이트에서 관리 저작물이 검색되는 저작권관리단체들	33
<표 13> 법정허락 이용승인 저작물	35
<표 14> IPO의 고아저작물 승인신청 수수료	57
<표 15> 영국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에 대한 예외규정과 라이선스 체제 비교	59
<표 16> 성실한 검색이 수행되어야 할 소스들	63
<표 17> 헝가리 수혜기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86
<표 18> 미국 저작권법 중 고아저작물과 연관이 있는 조항	95
<표 19> Canada Copyright Act(R.S.C., 1985, c. C-42)	103
<표 20>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각국 저작권법 규정 비교	109

그림 목차

[그림 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를 위한 저작권 처리과정	9
[그림 2]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통합검색 메뉴	10
[그림 3]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상세검색 메뉴	10
[그림 4] 서지정보에서 디지털화 자료의 공개범위와 저작권 처리 정보 제공	11
[그림 5] 서지정보에서 인터넷 공개(재정)와 인터넷 공개(허가) 사례	12
[그림 6] 의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	13
[그림 7] 아메리칸 메모리에서 서비스되는 디지털 컬렉션 리스트	14
[그림 8] 미국 의회도서관의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시 저작권 및 제한 조건 제공	15
[그림 9] 한나 아렌트 디지털 컬렉션의 저작권 및 제한 조건 정보 내용	15
[그림 10] 저작권에 따른 갈리카 관외 온라인 서비스 내용	17
[그림 11] 영국 국립도서관의 메인페이지	19
[그림 12] 독일 국립도서관의 메인페이지	20
[그림 13] 저작권등록부 검색화면	31
[그림 14] 저작권등록부 검색결과 화면	31
[그림 15] 저작권찾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34
[그림 16] 법정허락 이용승인신청 및 상당한 노력신청	35
[그림 17] 상당한 노력 신청 - 1건 신청화면	36
[그림 18] 상당한 노력 신청 - 다건 신청화면	36
[그림 19] ARROW 시스템에 대한 개요	52
[그림 20] ARROW 시스템의 구성요소	53
[그림 21] OHIM 고아저작물 데이터베이스	54
[그림 22] OHIM 고아저작물 데이터베이스 - 검색결과화면	54
[그림 23] OHIM에 고아저작물 등록 국가 현황	55
[그림 24] IPO 레지스터 검색화면	64
[그림 25]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 절차	127

제1장 서론

1.1. 연구 목적

국립중앙도서관은 2014년 현재까지 소장자료 중 약 45만책을 디지털화하였고, 이중 약 30만 책을 도서관보상금제도에 따라 도서관내 및 도서관간 전송과 출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보상금징수 현황을 보면 30만책 중 출력과 관간전송의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료는 약 26%에 그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디지털화한 자료를 도서관에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 중 하나라고 보인다. 그동안 디지털화한 자료 및 향후 디지털화할 자료가 보다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송 범위를 도서관 밖으로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이 저작권자를 찾아 그들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상당수는 관리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그의 거소를 파악하기 어려운 고아저작물이다. 영국국립도서관은 소장자료 중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40%가 고아저작물이라고 추정하고 있고, 영국의 신문자료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따라 1912년까지 발행된 신문자료는 95%가 고아저작물임이 밝혀졌다. 박물관에 소장된 사진자료 또한 90%가 고아저작물임이 밝혀졌다¹⁾.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 중 고아저작물의 비중은 그동안 징수된 도서관보상금의 미분배 현황을 볼 때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이미 제50조에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 즉,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정이 있어 국립중앙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이 규정을 활용하면 될듯하나, 제50조는 개별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의 고아저작물 이용을 전제한 규정이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뿐더러 그 이용이 공공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하는 자료 중 고아저작물을 도서관 밖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저작권법 제50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저작권법 차원의 해결방안은 국외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50조 이외의 다른 해결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고,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의 관점에서만 현행 제50조의 개선방안을 다루었다.

1) Borghi, Maurizio and Karapapa, Stavroula. 2013. Copyright and Mass Digit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pp.71-72.

1.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할 구체적 연구내용은 첫째 국내외 국립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현황 분석, 둘째 국내외 고아저작물 관련 제도 및 규정 분석,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정허락 제도 적용 방안 크게 세 가지이다. 국내외 국립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최근 10년간 디지털화 자료 현황을 분석하고 이중 도서관보상금 대상 자료의 보상금 분배현황을 파악하여 고아저작물의 비중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의 경우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의 국립도서관의 디지털화 및 인터넷 공개를 위한 저작권 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국내외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와 관련한 고아저작물 제도 및 규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저작권법 제50조를 비롯하여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8개국의 고아저작물 관련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앞장에서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저작권법의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 개정 방안 및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도서관의 대량디지털화와 관련한 고아저작물 관련 법률 내용 및 제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및 고아저작물 관련 법률, 고아저작물 관련 보고서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도서관 웹사이트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화한 저작물의 유형, 서비스 범위 등을 분석하였다. 웹사이트 내용분석으로 대표도서관의 서비스 범위와 고아저작물 디지털화 현황 파악을 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도서관의 담당자와 이메일 인터뷰를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고아저작물 이용의 주체, 보상금의 지급방법, 법정허락 승인에 따른 수수료, 대상저작물 등에 대하여 1회의 자문회의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제2장 국내외 국립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현황 분석

2.1. 국내 현황

2.1.1.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화 현황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간하고 있는 연보에 따르면 그동안 2002~2014년 간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저작물건수는 약 45만건이다(<표 1>). 디지털화된 자료 중에서는 도서관보상금 대상 자료는 최근 들면서 점차 증가하였으나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의 디지털화는 매해년도 15만책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고 디지털화한 자료도 일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연보에 따르면 2014년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중 인쇄자료²⁾는 838만 8951건이다. 즉, 소장자료의 5.4%가 디지털화 되었고, 디지털화된 자료 45만책 중 보상금 대상자료는 30만건으로 디지털화한 자료의 66.7%이다. 결국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의 약 67%는 도서관에 방문해야만 보거나 출력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닌 다른 도서관에서 전송받아 보거나 그에 따른 출력 또는 국립중앙도서관내에서 출력할 때 보상금을 지급해야만 이용할 수 있다.

2) 국립중앙도서관 연보의 장서통계 현황 중 총장서에서 비도서를 제외하고, 연속간행물종수를 합산하여 인쇄자료 수를 산출하였음.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연도별 도서관보상금 부과대상 자료의 디지털화 현황

연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인쇄자료)	디지털화 (책)	저작권 만료자료 (건)	보상금 대상자료 (책)	디지털화된 자료중 보상금 대상 자료 비율
2014	8,388,951	45만	15만책*	30만	66.7%
2013	7,946,989	44만	15만책*	29만	65.9%
2012	7,560,742	43만	15만	28만	65.1%
2011	7,171,056	42만	15만	27만	64.3%
2010	6,767,918	40만	15만	25만	62.5%
2009	6,384,146	39만	15만	24만	61.5%
2008	6,003,671	379,585	정보없음	174,444	46.0%
2007	5,605,796	371,346	정보없음	171,490	46.2%
2006	5,214,457	357,775	정보없음	160,664	45.0%
2005	4,837,479	337,677	정보없음	136,056	40.3%
2004	4,452,623	322,188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2003	4,096,253	29만**	정보없음	정보없음	
2002	3,809,013	270,204	정보없음	정보없음	

*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만료

** 신문학100년 대표소설(654책)을 저작권이용허락 받아 디지털화 후 관외전송

2.1.2. 도서관보상금 징수 자료 중 고아저작물 현황

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 2항에 의하면 교과용도서보상금이나 도서관보상금 등의 보상금이 분배공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도 미분배되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저작권등록부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자와 그의 거소를 조회하고, 권리자찾기 사이트에 저작재산권자를 찾는 공고를 2개월 이상 한 경우 상당한 노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04~2014년간 징수된 도서관보상금의 미분배금액을 분석한 결과 평균 90%를 넘는다 (<표 2>)³⁾. 즉, 도서관보상금이 징수된 상당수의 자료가 고아저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

3) 정경희, 2015. 도서관보상금제도 운영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pp.265-288.

〈표 2〉 년도별 도서관보상금 미분배율

이용 년도	분배받은 개인/기관수		분배금액		미분배액(원)	징수금액	미분 배율 (%)	최소 분 배액 기 준(원)	최소분배액 초과저작원자	
	개인 (명)	기관	개인(원)	기관(원)					개인 (명)	기관
2004	104	145	236,935	439,915	20,513,476	21,190,326	96.8		9	
2005	127	159	382,425	928,676	32,963,554	34,274,597	96.2	10,000	39	
2006	119	149	330,756	1,285,039	33,320,770	34,936,565	95.4	10,000	42	3
2007	112	114	227,173	1,194,686	32,022,681	33,437,995	95.8	10,000	25	4
2008	15	53	7,976	7,109,489	23,523,018	30,641,449	76.8	10,000	19	6
2009	11	42	6,878	6,605,401	25,245,694	31,857,973	79.2	10,000	35	2
2010	12	12	6,079	2,661,789	25,888,624	28,556,491	90.7	10,000	23	8
2011	11	10	2,437	151,425	22,499,812	22,653,674	99.3	10,000	18	16
2012	7	8	1,024	57,762	16,966,880	17,025,666	99.7	10,000	8	6
2013	1	4	144	57,705	16,048,004	16,105,853	99.6	10,000	5	7
2014					14,871,423	14,871,423		10,000	8	7
계	519	696	1,201,826	20,491,887	263,863,935	285,552,012	92.4		231	59

2.1.3.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현황

2013년 기준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보상금 부과대상 자료는 29만건이었다. 이들 자료 중 2004~2013년간 실제로 보상금이 징수된 자료는 총 75,954건(26.2%)이었고, 이중 보상금이 분배된 저작물은 544건이다. 즉, 보상금이 징수된 저작물 중 0.7%만이 보상금분배가 이루어졌다(<표 3>⁴⁾). 보상금이 징수된 저작물중 99.3%에 해당하는 미분배보상금 저작물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면 고아저작물로 확정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2013년 기준 인쇄자료는 7,946,989건이고, 디지털화된 도서관보상금 부과대상자료는 29만건으로 전체 인쇄자료의 3.65%에 불과하다. 또한 실제로 보상금이 징수된 자료는 29만건 중 약 26.2%인 7만 5천건에 불과하다. 이 건수는 국립중앙도서관 인쇄자료의 약 1%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데이터만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자료의 고아저작물 비중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대략적인 가늠을 위한 단서는 될 것으로 본다.

4)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 제공데이터(2015. 11. 25)

〈표 3〉 2004~2013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의 보상금 징수 저작물 및 분배저작물 수

구분	도서관보상금 부과 대상 저작물 수	보상금 징수 및 분배 저작물 수			
		징수저작물수	비율	분배저작물수	비율
2004~2013	290,000	75,954	26.2%	544	0.7%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도서관보상금 징수대상 자료 중에서 실제로 보상금이 부과되는 방식 즉, 관간전송 또는 관내 출력이나 관간전송 후 출력이 이루어졌던 자료는 매해년도 약 3.5% ~ 7% 범위에 있었고, 보상금이 징수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중 분배가 이루어진 저작물은 징수자료의 약 0.1 ~ 4% 범위에 있는데 분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표 4〉)⁵⁾.

〈표 4〉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보상금 징수자료에 대한 보상금 분배 현황(년도별)

년도	보상금부과대상 저작물(책)(a)	보상금 징수 저작물건수(b)	비율(b/a)(%)	보상금 분배 저작물 건수 (c)	비율(c/b) %
2004		4,465	5.8	173	3.9
2005	136,056	7,913	5.8	179	2.3
2006	160,664	11,927	7.4	184	1.5
2007	171,490	11,981	7.0	64	0.5
2008	174,444	11,664	6.7	41	0.4
2009	240,000	12,883	5.4	16	0.1
2010	250,000	13,812	5.5	10	0.1
2011	270,000	10,796	4.0	9	0.1
2012	280,000	11,114	4.0	5	0.04
2013	290,000	10,176	3.5		
계		106,731		681	

5)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 제공데이터(2015. 11. 25)

2.2. 국외 국립도서관의 소장자료 디지털화 및 서비스 현황

본 장에서는 고아저작물 대량디지털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이 이루어진 국가 대표도서관을 대상으로 고아저작물 디지털화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국가 대표도서관의 웹사이트 내용을 주로 조사하였고 웹사이트 내용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고아저작물 디지털화 현황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서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웹사이트 조사결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화 자료 및 관외 서비스(인터넷 공개) 현황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었고 또한 해당 정보를 통해 고아저작물 관련 저작권 처리과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 외 국가 대표도서관들의 웹사이트 상에서는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현황 정보가 상세히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해당 도서관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관련 정보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을 포함한 국가 대표도서관들이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고아저작물 관련 저작권 처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향후 기존 저작권법이나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고아저작물 디지털화와 저작권 처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다⁶⁾. 이에 본 장에서는 고아저작물에 국한하기 보다는 국가 대표도서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디지털화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여 제시하였다.

2.2.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1) 자료의 디지털화 현황

국립국회도서관은 자료의 이용과 보존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소장 자료의 매체 변환을 실시하여 왔다. 2009년도 이후의 매체 변환은 원칙적으로 기존 마이크로 필름에서 디지털화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의 디지털화는 크게 자료의 보존적 측면과 전자도서관 서비스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자료의 보조적 측면은 지질 또는 빈번한 이용으로 자료의 열화 손상 상황이 현저하거나 열화 손상의 상당한 진행이 예상되는 자료를 대상으로 매체 변환을 수행하며 이용에 따른 원자료의 열화 손상을 방지하고 있다. 둘째, 자료의 디지털화를 실시하여 자료 열람의 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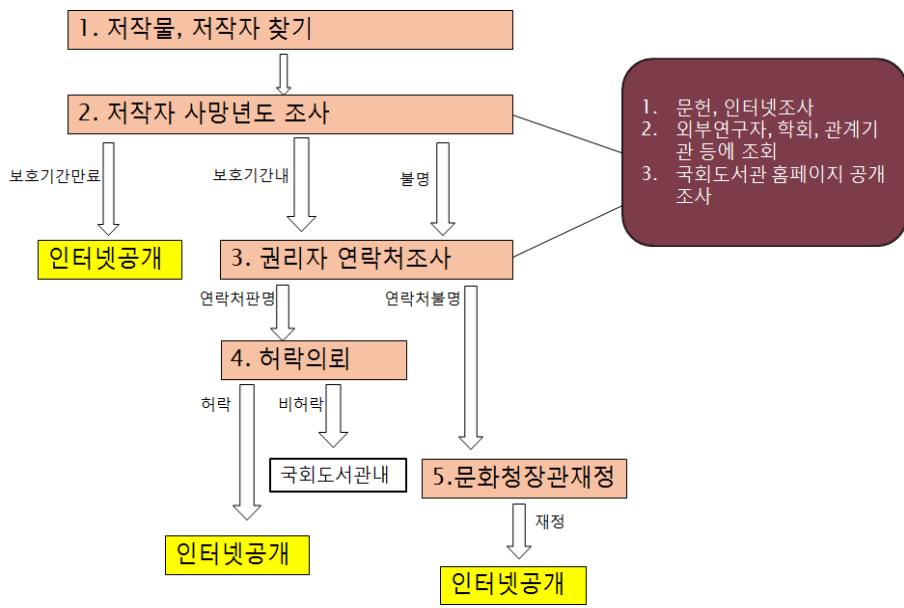
6) 국가 대표도서관 이메일 회신 일자 : 프랑스 국립도서관(2015.11.19), 미국 의회도서관(2015.11.17), 독일 국립도서관(2015.11.24.), 일본 국립국회도서관(2015.12.1.), 영국 국립도서관(2015.11.19.)

지털화 자료는 국립국회도서관 또는 연계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아날로그 매체 자료(종이자료, 기록 등)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디지털화가 끝난 자료는 저작권 확인을 실시한 2002년부터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2015년 8월 현재 디지털화 자료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의 디지털화 자료 현황(2015년 8월)

자료유형	디지털화 자료 제공 수(개수)			
	인터넷 공개 자료	도서관 전송 대상 자료	국립 국회 도서관 관내 제공 자료	총 계
도서	35만점	50만점	5만점	90만점
잡지	0.9만점	73만점	50만점	123.5만점
고전적	7만점	2만점	-	90,000점
박사 논문	15만점	12만점	0.5만점	14만점
관보	2만점	-	-	2만점
헌정 자료	300점	-	-	300점
일본 점령 관계 자료	3만점	-	0.1만점	3만점
뿌란게 문고	-	-	2만점	2만점
역사적 음원	0.1만점	-	48만점	5만점
과학 영상	-	-	300점	300점
각본	2점	-	33점	35점
신문	6점	-	-	6점
총 계	49만점	137만점	62.5만점	248.5만점

국립국회도서관은 디지털화 자료를 인터넷 공개하기 위한 저작권 처리를 하고 있다. 대상 자료는 도서와 고전적 자료이며, 출간시기가 오래된 것부터 순차적으로 저작권 확인을 실시하고 있고 권리 처리가 완료된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잡지는 제작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에 공개를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만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 전체적으로는 49만점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도서는 35만점이 포함되어 있다.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를 위한 저작권 처리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서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를 위한 저작권 처리과정

[그림 1]을 보면,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공개 조사를 통해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저작권 보호 기간 만료로 인터넷에 공개한다. 둘째,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연락처가 확인된 경우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요청하고 허락을 얻을 수 있으면 인터넷에 공개한다. 셋째, 저작권 상태를 알 수 없거나 저작권 보호 기간 내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모르는 것 (이른바 ‘고아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67조에 의거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아 보상금을 공탁한 후 인터넷에 공개한다. 문화청 장관 재정은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에 대하여 국가가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이용허락을 하는 것이다.

한편, 저작권의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자료나 현재 저작권의 확인 대상이 되지 않는 자료 중 절판 등의 이유로 구하기 어려운 자료는 “도서관을 위한 디지털 자료 전송 서비스(도서관간 전송)”를 통해 공공도서관·대학 도서관 등(국립국회도서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관에 한함)에 디지털화 자료를 전송하고 각 도서관에서 해당 디지털화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2015년 8월 현재 도서관간 전송대상 자료는 137만점의 자료가 있다(<표 5>참조). 137만점의 디지털화 자료들은 향후 저작권 처리가 완료될 경우 순차적으로 인터넷에 공개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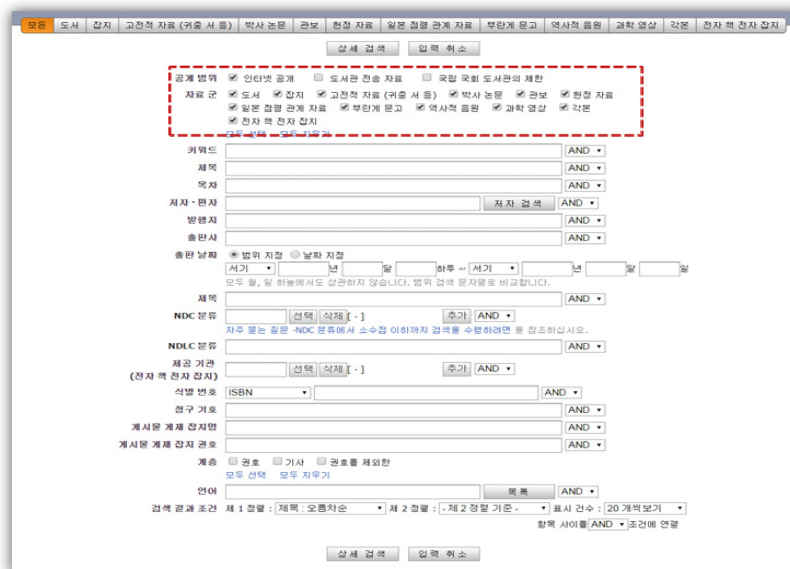
2) 디지털화 자료의 서비스 현황

디지털화 자료들은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http://dl.ndl.go.jp)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그림 2]와 같이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에서는 디지털화 자료를 『공개범위』에 따라 1) 인터넷 공개 자료, 2) 도서관간 전송가능 자료, 3) 국립국회도서관내 이용가능 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2]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통합검색 메뉴

상세검색 메뉴에서도 우선적으로 3가지 공개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료군과 일반 서지정보를 입력하도록 세부메뉴들을 구성하고 있다([그림 3] 참조). 자료군은 <표 5>에서 제시된 도서, 잡지, 고전적 자료, 박사논문, 관보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3]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상세검색 메뉴

[그림 4]는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컬렉션을 통해 최종 디지털화 자료(원문)에 접근한 검색결과 화면이다. 이용자는 최종 디지털화 자료를 열람하는 것과 함께 해당 디지털화 자료의 공개범위와 저작권 처리 사항을 알 수 있다. 검색결과 화면의 좌측 상단 [서지정보] 메뉴에서 디지털화 자료의 공개범위와 저작권 처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4]에서 제시된 디지털화 자료의 경우에는 인터넷 공개 자료이며 인터넷 공개는 보존기간만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터넷 공개(보존기간만료)’와 같이 표현해 주고 있다. 인터넷 공개 자료일 경우 저작권 처리 사항은 ‘인터넷 공개(보존기간만료)’, ‘인터넷 공개(재정)’, ‘인터넷 공개(허가)’의 3가지로 표현되고 있다([그림 5] 참조).



[그림 4] 서지정보에서 디지털화 자료의 공개범위와 저작권 처리 정보 제공

<p>디지털화 출판사 (digitizedPublisher) 국립 국회 도서관</p> <p>디지털화 일 (W3CDTF 형식) (dateDigitized : W3CDTF) 2008-03-31</p> <p>제공자 (provider) 현대 디지털 도서관</p> <p>제공 제한 (accessRights) 인터넷 공개</p> <p>비고 (note) 국립 국회 도서관 내에서 일부 만 인쇄 할 수 있습니다.</p> <p>공개 범위 (rights) 인터넷 공개 (재정) 저작권법 제 67 조 제 1 항에 따 라 문화청 장관 판결을 받고 공 개 결정 일자 : 2012-03-01</p> <p>계층 수준 (type : biblevel) 0</p> <p>작성자 전자 ID (creator : NDNLAIId) 00537141</p> <p>발행지 (국가 코드) (publicationPlace : ISO3166)</p>	<p>서지 정보</p> <p>세부 레코드 표시하기</p> <p>영구 식별자 info : ndljp / pid / 3948671</p> <p>제목 자연 공원 면적 (해제이 03년 3월 31일 현재)</p> <p>저자 자연 환경국 국립공원과</p> <p>출판 날짜 1991/03</p> <p>공개 범위 인터넷 공개 (허가)</p> <p>세부 레코드 표시하기</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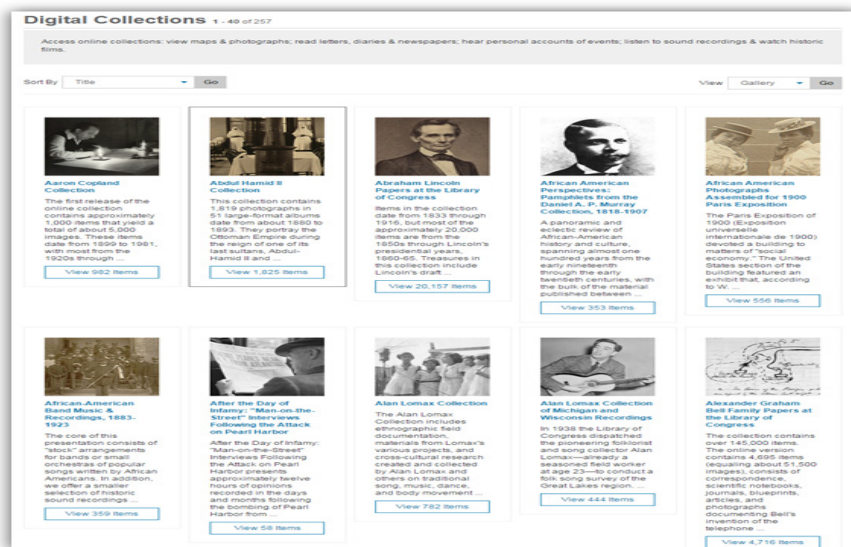
[그림 5] 서지정보에서 인터넷 공개(재정)와 인터넷 공개(허가) 사례

2.2.2. 미국 의회도서관

1) 자료의 디지털화 현황

의회도서관의 국가 디지털도서관 프로그램은 미국의 역사와 문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5년간에 걸친 파일럿 프로젝트를 거친 후 1995년에 시작되었다. 현재 257개의 컬렉션을 미국 및 전 세계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놓고 있다. 의회도서관 아카이브 자료 가운데 선택된 컬렉션부터 디지털화를 시작하였고 미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다. 디지털화는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독특한 소장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이행될 것이지만 소장품 전체를 디지털화할 계획은 아니다. 선정대상은 연구자, 학생, 교육자, 평생 학습자에게 유용한 것에 역점을 두고, 최종 선정 기준은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중요성과 예상 수요, 콘텐츠를 디지털화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유지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다.

의회도서관 홈페이지⁷⁾에서는 총 257개의 디지털 컬렉션을 제공하고 있다. 각 디지털 컬렉션 별로 개별 아이템들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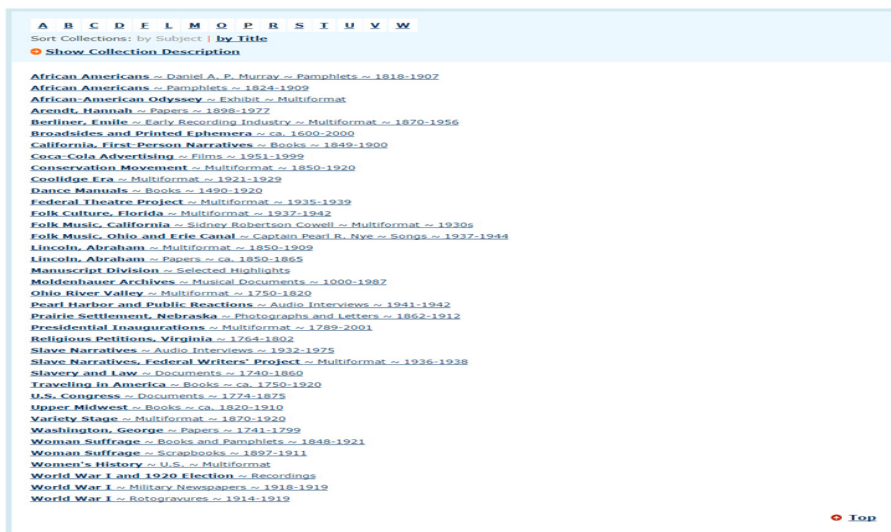


[그림 6] 의회도서관의 디지털 컬렉션

7) <<http://www.loc.gov/collections>> (2015.11.25. 방문)

2) 디지털화 자료의 서비스 현황

의회도서관은 디지털화 자료 서비스를 위하여 산하에 전자도서관인 아메리칸 메모리(American Memory)를 1995년부터 1,300만 달러를 기증받아 운영하고 있다. 아메리칸 메모리는 의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자료에서 역사 문헌, 사진, 사운드 레코딩, 영화, 도서 팸플릿, 지도, 기타 자료를 디지털화한 멀티미디어 웹 사이트로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만을 서비스하고 있다([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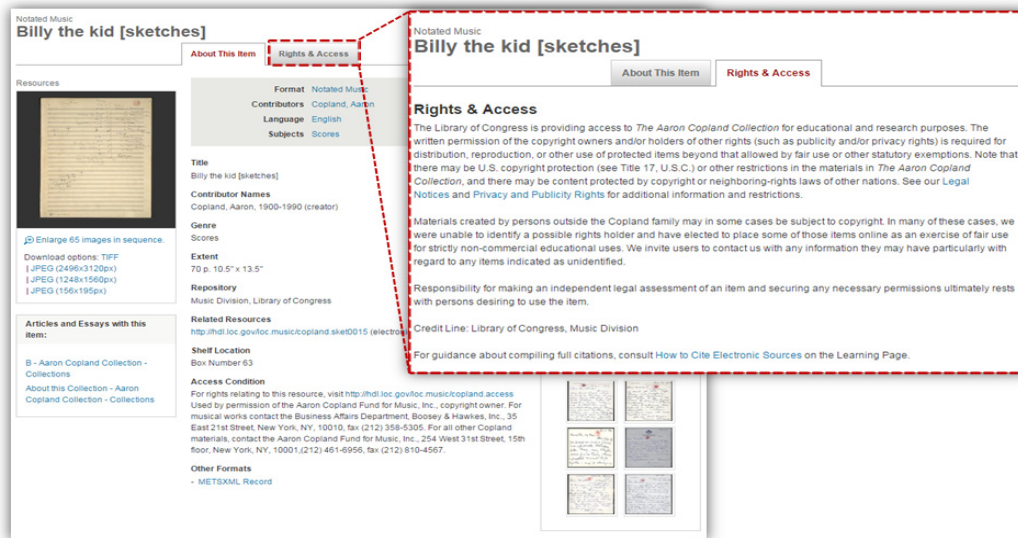


[그림 7] 아메리칸 메모리에서 서비스되는 디지털 컬렉션 리스트

의회도서관은 의회도서관 홈페이지와 아메리칸 메모리 웹 사이트를 통해 구축한 디지털 컬렉션을 인터넷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공개는 미국저작권법의 공정이용(Fair Use)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의회도서관은 상업적 영역에 있는 고아 저작물 이용의 경우에는 공정이용에 의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공정이용과 별도로 고아저작물을 위한 법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⁸⁾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 방식에서 주목할 것은 앞서 제시된 디지털 컬렉션의 인터넷 공개와 함께 저작권과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표시해 준다는 점이다.

8) Library of Congress, 2013. Comments of the Library of Congress. In Response to the Copyright Office Notice of Inquiry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그림 8] 미국 의회도서관의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시 저작권 및 제한 조건 제공

[그림 9]는 한나 아렌트의 디지털 컬렉션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제시되는 저작권 및 제한조건(Copyright and Other Restrictions)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Despite extensive research (see [About the Collection](#) for more information), the Library has been unable to identify or locate all possible rights holders in the materials in this collection. Thus, some of the items provided here online are made available under an assertion of fair use (17 U.S.C. 107). Therefore, we stress that this collection and the materials contained therein are provided strictly for noncommercial educational and research purposes. Again, responsibility for making an independent legal assessment and independently securing any necessary permissions ultimately rests with persons desiring to use particular items in the context of the intended use.

[그림 9] 한나 아렌트 디지털 컬렉션의 저작권 및 제한 조건 정보 내용

2.2.3. 프랑스 국립도서관

1) 자료의 디지털화 현황

2011년부터 국립도서관은 민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공적자금 지원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투자를 위해 저작권 만료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 7월 국립도서관은 “미래를 위한 투자(Investments for the Future)”사업의 하나로 12개 문헌 정보에 대한 디지털 사업에 대하여 민간 사업자들의 파트너십을 요청하였고, 총 21개의 제안을 받아 다음과 같은 4개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 1470년부터 1700년까지의 모든 고대 인쇄문헌 70,000종
- 725,000종의 음악과 음원 자료
- 38,000종의 프랑스 문학
- 1억 페이지의 프랑스 신문

국립도서관은 2013년도에는 상업적 잠재력이 있는 50,000종의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시작하였고, 2014년 이후에는 매년 5만 종에서 6만 종의 도서에 대한 디지털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디지털화 자료의 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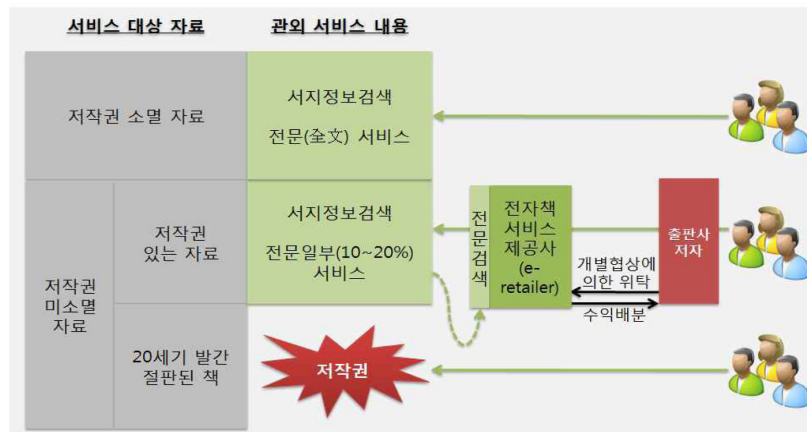
국립도서관은 디지털 도서관인 갈리카(Gallica)를 1997년도부터 설립하였다. 갈리카는 프랑스 최초로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과 전자책의 전문(全文)검색 및 관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 국립도서관 및 관련 도서관에서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다. 국립도서관은 2008년부터 프랑스 출판협회, 문화부(Ministry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국립도서센터(National Center for the Book)와 함께 저작권을 준수하면서 온라인으로 접근이 가능한 법적, 기술적인 방법들을 찾기 위해 협력하였고 갈리카 서비스를 전자책 포털사이트로 구상하였다. 디지털화된 자료들에 대하여 갈리카를 통하여 도서관 사용자들은 도서관내에서 무료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고, 배타적 사용기간 내에는 제한적으로 접근과 이용이 허락되지만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관외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2015년 11월 현재 갈리카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자료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잡지 : 151,4837
 *이미지 : 843,555
 *시트 : 39,141
 *카드 : 94,918

*비디오 : 13
 *스크립트 : 61,501
 *사운드 : 34,398
 *책 : 614,811
 *객체 : 353,217

갈리카를 통한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저작권 만료 저작물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디지털화 및 디지털 서비스 이용에 법적 문제가 야기됐고 국립도서관은 정보 이용의 평등화 관점에서 이의 극복을 위하여 2012년에 “20세기 절판된 책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⁹⁾

갈리카는 저작권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자저작물에 대하여 통합된 검색엔진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 소멸 디지털 저작물에 대해서는 검색엔진을 통하여 서지정보와 전문검색(full-text search)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자료는 관내에서 무료로 전문(全文) 이용이 가능하고 관외 이용은 저작물의 10~20%이내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 때 검색엔진의 검색결과에서 목차, 표지 이미지, 뒷면 표지의 글, 저작물에 대한 설명 등 저작물의 서지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검색결과와 관련된 짧은 요약문(abstract)을 검색결과로 제공한다.



[그림 10] 저작권에 따른 갈리카 관외 온라인 서비스 내용

9) LAW No. 2012-287 of 1 March 2012 on the exploitation of digital books unavailable in the twentieth century.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jsessionid=4DF7CE32F2AC28D89A73FE53CB632D53.tpdjo05v_2?cidTexte=JORFTEXT000025422700&dateTexte=20121029> (2015.10.25. 방문)

[그림 10]과 같이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자료의 전문 접근과 열람은 출판사에 의하여 승인받은 전자책 유통 플랫폼을 통하여 가능하며, 출판사가 직접 전자책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판사를 통하여 전자책 접근이 가능하다. 갈리카 서비스를 통하여 전자책을 제공하고자 하는 전자책 유통업자들은 국립도서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함은 물론 전자책 유통과 관련하여 출판사들로부터도 공식적인 협약을 체결해야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때 전자책은 하나의 전자책 유통회사를 통해서만이 공급되어야 하며, 전자책의 유통에 관하여 국립도서관의 기술적인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자책 유통 플랫폼은 기술적으로 전자책을 보호하고 있고, 이렇게 제공되는 전자책은 기술적 방법과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전자책 일부를 읽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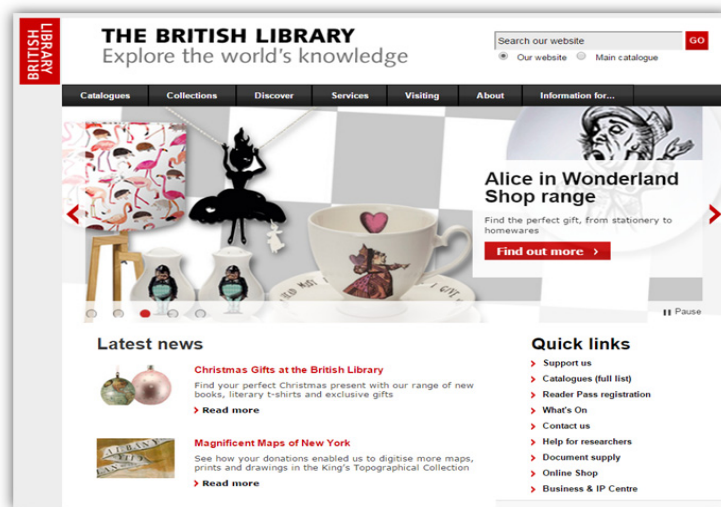
2.2.4. 영국 국립도서관

1) 자료의 디지털화 현황

국립도서관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지금까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하여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최근 출판사의 동의하에 일부 학술저널에 한정하여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Vision 2020”이라는 국립도서관의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도서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에 대하여 가능한 한 많이 디지털 작업을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2) 디지털화 자료의 서비스 현황

저작권이 없는 일부 저작물에 대하여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서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그 이용 조건에 대하여 동의하에 일부 서비스를 시험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출판사와 관외 온라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모델링을 정립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명시하나, 현재로서는 모든 출판사가 만족하는 관외 온라인 서비스 모델은 정립하지 못하고 있고 개별 출판사와 온라인 접근 방법에 관한 세부 계약내용을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림 11] 영국 국립도서관의 메인페이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관외 온라인 서비스는 시험적으로 일부 프로젝트를 통하여 국립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온라인 이용의 사용료는 개별 출판사와의 협상에 의해서 결정되며, 다양한 방식의 사용료 지급 방식이 있으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1권-1대출(1 copy-1 loan)”원칙이다. 대표적인 예가 경영학 포털 프로젝트(The Management and Business Studies Portal project) 서비스이다.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자료(전자책, 보고서, 산업통계자료 등)를 도서관 사용자 카드를 보유한 자에 한해 도서관내 지정된 열람실에서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나, 다운로드 받거나 관외에서 인터넷으로 접근할 경우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경영학 포털 프로젝트(The Management and Business Studies Portal project)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면 저작권이 있는 모든 경영학 관련 저작물에 대하여 온라인 상으로 전문검색은 무료로 허용하고 있으나 다운로드 및 온라인상의 관외 접근은 개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

2.2.5. 독일 국립도서관

1) 자료의 디지털화 현황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은 저작권법에 의해 납본된 도서의 디지털화 작업은 실행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한 판결 사례로 2009년 다름슈타트 대학 도서관(ULB Darmstadt)은 장서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서 500권에 대해서 디지털화하여 전자책 형태로 학생들에게 도서관내에서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 2011년 출판사의 허락없이 전자책 제작은 불법으로 판결한 바 있다.

2) 디지털화 자료의 서비스 현황

프랑크푸르트 국립도서관에는 약 1백만 종의 디지털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자료의 유형을 보면 전자책(eBooks), 전자잡지, 논문, 오디오북, 사진,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독일 국립중앙도서관법과 저작권법에는 전자책에 대한 접근은 도서관 관내에서만 이루어져야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립도서관의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장치(PC)에서만 국립도서관이 전자책 서비스를 공중에게 제공한다.



[그림 12] 독일 국립도서관의 메인페이지

중앙도서관은 일부 전자책에 대하여 관외 열람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관외 열람과 2명을 초과한 전자책 접근은 개별 출판사와 별도의 계약에 의해 실행한다. 약 5,000종에서 6,000종의 전자책만 출판사와 중앙도서관간 별도의 계약 하에 전자책 접근을 관외에서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적법한 도서관카드 보유자에게만 열람이 가능할 것을 도서관과 출판사간의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도서관카드는 도서관사용신청서 작성자에게만 발급되는데 이 신청서에 저작권법 준수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전자책 접근을 관외 서비스까지 확대를 허락한 출판사들은 학위논문을 제공하는 대학 출판부나 군소 출판사들로 이러한 서비스 확대를 자사도서나 출판사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상업용 도서의 출판사들은 아직 관외서비스를 허락하고 있지 않다.

제3장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각국 제도 분석

3.1. 한국

우리 저작권법 제50조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저작물이다. 또한 이러한 저작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다(법 제50조 1항). 또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해야 한다(법 제50조 2항). 그러나 외국인의 저작물은 이러한 이용으로부터 제외된다. 미공표 저작물을 제외한 것은 저작자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 저작물을 제외하는 것은 2006년 저작권법 개정시 도입된 것으로 국내 법에 의해 외국인 저작물을 거소불명이라는 이유로 행정명령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조약 위반의 문제가 있으므로 외국인 저작물은 제외하였다¹⁰⁾. 그러나 국제조약은 자국민의 보호수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조약 위반의 문제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고, 우리 국민의 저작물을 외국인의 저작물에 비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첫 사례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¹¹⁾

2005년부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차례 저작권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해왔다. 2005년도 저작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위하여 일간신문 공고를 통해서만 권리자를 찾도록 한 것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승인신청 내용에 대한 관보공고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시켰다(저작권법 시행령[시행 2005.12.30.] [대통령령 제19240호, 2005.12.30., 일부개정]). 또한 2012년도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권리자찾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상금공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을

10) 오승중. 2013. 저작권법. 제3판. 박영사. p.799.

11) 임원선. 2014. 저작권법. 제4판. 한국저작권위원회. pp.306-307.

일정한 절차를 거쳐 권리자찾기 시스템에 2개월간 공고한 후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5.7.13.]). 2015년도에는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승인을 위한 공고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10일간으로 단축시켰다(저작권법 시행령 [시행 2015.7.13.] [대통령령 제26398호, 2015.7.13., 일부개정]).

이와 같이 그동안의 법 개정은 주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그 노력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자찾기 사이트를 개발하고, 승인을 위한 공고기간을 단축하는 등 권리자를 찾는 노력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3.1.1. 상당한 노력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저작권자의 거소를 파악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이용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 둘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이다. 먼저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네 가지의 상당한 노력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 1항).

첫째, 저작권등록부를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해야 한다. 저작권등록부란 저작권법 제53조 및 제54조에 의거하여 저작자가 자신의 실명, 공표 당시에 사용한 이명, 국적, 주소 또는 거소와 저작물의 제호, 종류, 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 및 공표연월일 등을 등록하거나 권리상속이나 일반승계 이외의 권리양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기재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55조 3항, 2008년 개정).

둘째,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를 통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해야한다.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그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는 경우이다. 만일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다면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에게 위와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또는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 권리찾기정보시스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경우이다.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1. 저작재산권자를 찾는다는 취지 2.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 등(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저작물의 제호 4. 공표 시 표시된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실명 또는 이명)

5. 저작물을 발행 또는 공표한 자 6. 저작물의 이용 목적 7. 복제물의 표지사진 등의 자료(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8. 공고자 및 연락처(저작권법시행규칙 제3조)이다.

넷째,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2015년 7월 시행령 개정시 도입된 것이나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제시되지는 않았다. 네이버나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포털사이트에는 카페, 블로그, 각 기관의 DB, 신문 등 무수히 많은 유형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색결과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그 결과를 일일이 확인하며 권리자와 그의 소재를 찾아내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 요건은 그동안 성실한 검색의 절차를 간소화해온 노력에 역행하는 개정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과 같은 일정한 노력을 한 경우 이를 상당한 노력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 2항). 즉, 교과용도서보상금, 수업목적복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등의 보상금이 분배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 관련 저작물과 이 외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다음 세 가지 노력을 한 경우이다.

첫째, 저작권등록부를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고 둘째, 저작권위탁관리사업자가 보고한 사항 즉, 관리저작물 목록, 신탁, 대리 및 중개하는 저작물의 권리 정보를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하고 셋째,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을 공고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을 경우이다.

한편 이미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될 때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하고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나타나 이의를 제기할 때는 그렇지 않다(법 제50조 3항). 개별 이용자가 수행해야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는 상당한 노력에 해당하는 절차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6〉 상당한 노력의 절차

수행주체 절차	개인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찾기 사이트
대상저작물	- 공표된 내국인 저작물 중 저작권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치 않는 저작물	- 공표된 내국인 저작물 중 저작권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명확치 않는 저작물 - 3년경과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	
저작권등록 부	-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 신청을 통하여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조회할 것	-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 2005년 이후 등록저작물 검색가능
저작권신탁 관리업자를 통한 조회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재산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거소를 조회하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를 보냈으나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문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는데도 회신이 없을 것 - 해당 저작물이 속하는 분야의 저작물을 취급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받은 사실이 있는 이용자 중 2명 이상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보고한 사항을 통한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재산권자나 그의 거소의 조회	- 신탁관리업자 관리 저작물 (일부) 검색가능
저작권자를 찾는 공고	- 저작권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을 다음 어느 하나에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났을 것 -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 또는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	-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 저작권재산권자나 그의 거소 등을 공고한 날부터 2개월 이상이 지났을 것	- 권리자찾기 사이트에서 공고
정보통신망 검색	- 국내의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권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검색할 것	- 해당사항 없음	

3.1.2. 고아저작물 이용 승인 및 보상금 공탁 절차

1) 승인신청 서류

저작권법시행령 제19조는 상당한 노력을 수행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승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하여 저작물의 제목, 종류, 형태 및 수량, 이용내용, 승인신청사유, 보상금액, 신청인 정보 등을 기재할 수 있는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저작권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한다.

1. 이용 승인신청명세서: 이용승인신청하는 각 저작물마다 제호, 종류, 공표방법과 일자 및 공표국가, 신청물의 내용을 저작권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중 세 번째와 네 번째 서류는 곧 상당한 노력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들로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로 이를 갈음하고 있다. 즉, 상당한 노력의 첫 번째 요건인 저작권등록부를 통한 조회를 입증하는 서류는 위원회에 요청하여 ‘미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두 번째 요건인 권리관리단체를 통한 조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신탁관리단체에 보낸 확정일자 있는 문서와 회신공문이 필요(회신이 없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해야 함), 세 번째 요건인 포털사이트 상에서의 저작자 조회를 진행한 문서는 특별한 형식은 없다.

2) 수수료 및 보상금

승인신청을 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한다(저작권법 제132조 제1항). 저작권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은 제13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금액을 별표로 정하고 있다. 별표에 따르면 수수료는 전산처리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이용신청하는 저작물 1건당 1만원이다(저작권법시행규칙 별표(2012. 4. 5. 개정).

고아저작물의 보상금산정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50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고아저작물에 대하여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해 놓은 기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업무처리 규칙(개정 2015. 08. 21.)' 제10조 '승인여부 및 보상금 결정' 제4항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 즉,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 이용형태,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횟수에 따라 관련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금액 또는 요율, 이것이 없는 경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 또는 요율에 따라 이용자가 신청한 법정허락 보상금을 심의한다.

현재 어문저작물 분야의 대표적인 신탁관리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서책형 도서 등으로의 복제·배포, 1년마다 재발행되는 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복제·배포, 1년마다 재발행되는 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전송 등 세가지 유형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금액을 책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만일 도서관이 어문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공중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보상금을 산정할 경우 이 세가지 사용료를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단체의 전송에 대한 사용료는 아래와 같은데 이는 이용자수가 1만명인 경우를 기준으로 한 비용이다. 만일 도서관에서 한편의 소설을 디지털화하여 공중송신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를 아래 전송에 대한 사용료로 계산할 경우(A4 용지 기준 아래한글 한페이지가 원고지로 8매라고 할 경우 약 300쪽 소설 한편에 대한 사용료) 약 3백만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표 7〉 1년마다 재발행되는 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전송

구분	분량	사용료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1/2편 이상 ~ 1편	21,600원
	2연 이상 ~ 1/2편 미만	17,790원
	1연	12,710원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전편 이용시(200자 원고지 31매이내)	43,200원
	일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동화	전편 이용시(200자 원고지 31매이내)	43,200원
	일부분 이용시(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 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390원	

※ 저작물 이용자수가 1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저작물 사용료에 10,000명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1년간 이용자수가 10,000명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법정허락 승인현황 데이터¹²⁾에 의하면 2005~2015년 11월 30일간 42건의 법정허락승인이 이루어졌다. 법정허락이 이루어진 저작물은 주로 영상저작물과(17건) 음악저작물(13건)이 어문저작물(9건)에 비하여 조금 더 많았다. 보상은 최소 6300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다양하였고, 단체이나 출판사, 개인이 주로 출판이나 DVD 제작, 영화상영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비영리 목적으로 영상저작물 법정허락 신청을 한 예로 한국영상자료원이 있었다. 이 기관은 특정 영상저작물 1편을 DVD 2500부 제작하는 것에 대하여 400만원의 보상을 지급하였다. 이 DVD 제작 목적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즉, 지금까지의 법정허락 승인신청은 몇건을 제외하고는 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비영리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도서관에서 이용처럼 공공의 서비스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도 보상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제10조 (승인여부 및 보상금 결정)

-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안 및 검토보고서를 심의전문위원 또는 담당 직원에게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영 제18조제2항에 의한 법정허락 신청저작물에 대하여 심의안을 작성할 때에는 법정허락 대상 저작물 여부를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저작물 이용승인 심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에 따른 저작물 이용의 신청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2. 저작물 이용의 승인 전에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가 확인되었거나 협의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 3.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출판이나 그 밖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저작물의 모든 복제물 회수 여부 또는 절판 여부
 - 4. 해당 저작물이 아니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④ 위원회는 보상금 심의시 저작물의 이용형태, 이용방법, 이용기간, 이용횟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액 또는 요율을 정한다.
 - 1. 관련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금액 또는 요율
 - 2. 관련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 금액 또는 요율이 없는 경우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금액 또는 요율

12)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 (2015. 11. 22. 정보공개통지 2015.12.3.)

승인신청을 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권리자 찾기 사이트에 10일간 이를 공고해야 하고(저작권법 시행령 제20조 1항),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인에게 알리고 저작물의 제호 및 공표연월일,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의 성명, 이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저작물의 이용승인 조건(이용허락기간 및 보상금), 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형태 등의 승인내용을 권리자 찾기 사이트에 1개월 이상 게시해야 한다.

3.1.3. 고아저작물 검색을 위한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

성실한 검색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정보원들 즉, 저작권등록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를 통한 조회, 저작권 찾기 사이트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1) 저작권등록부

2015년 11월 현재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저작물은 총 448,786건이다¹³⁾.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이 전체 등록저작물의 약 56%이고, 그 다음으로는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이 많다.

〈표 8〉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저작물 (2015년 11월 현재)

저작물의 종류	건수
어문저작물	37,898 건
음악저작물	12,661 건
연극저작물	375 건
미술저작물	74,909 건
건축저작물	2,738 건
사진저작물	18,248 건
영상저작물	11,621 건
도형저작물	5,580 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50,336 건
편집저작물	20,057 건
2차적저작물	7,577 건
기타저작물	298 건
실연	252 건
음반	5,608 건
데이터베이스	605 건
등록부 미작성	23 건
총 건수	448,786 건

13)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 (2015.11.22. 정보공개통지 2015.12.3.)

저작권등록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등록 사이트¹⁴⁾를 통해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단, 어문·미술 등 일반저작물의 등록부는 2005년 이후의 등록부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2004년 이전의 등록부의 열람·사본교부는 위원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여 열람해야한다. 저작권위원회¹⁵⁾에 따르면 2004년 이전 자료를 사본신청할 경우 온라인 신청시 800원, 오프라인 신청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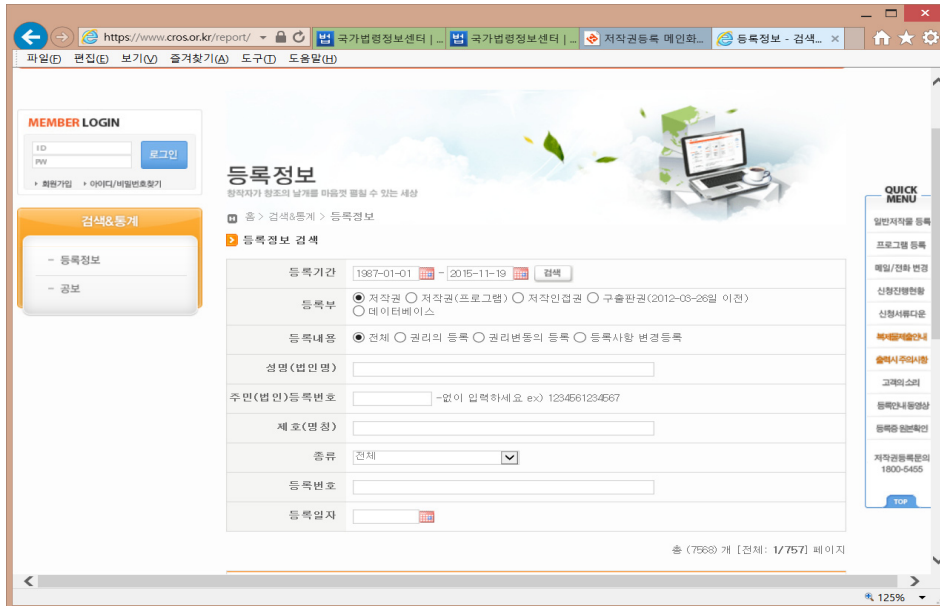
향후 저작권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2004년 이전 등록저작물도 저작권등록사이트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게 되면 성실한 검색의 첫 번째 요건은 비교적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림 13]에서 볼 수 있듯이 DB의 검색화면에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은 제호, 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를 통해서이다. 이러한 검색키들은 소수의 저작물을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는 매우 편리할 수 있으나 매년 약 1만건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있는 국가대표 도서관이 이 자료를 일일이 등록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저작권등록 DB에 ISBN 등 문헌고유번호를 통한 검색이 가능하다면 도서관이 성실한 노력을 통하여 찾고자 하는 저작물이 해당 DB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일괄검색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 등록시 ISBN 등 문헌관리를 위한 요소가 요구되고 있지 않다.

〈표 9〉 저작권등록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등록저작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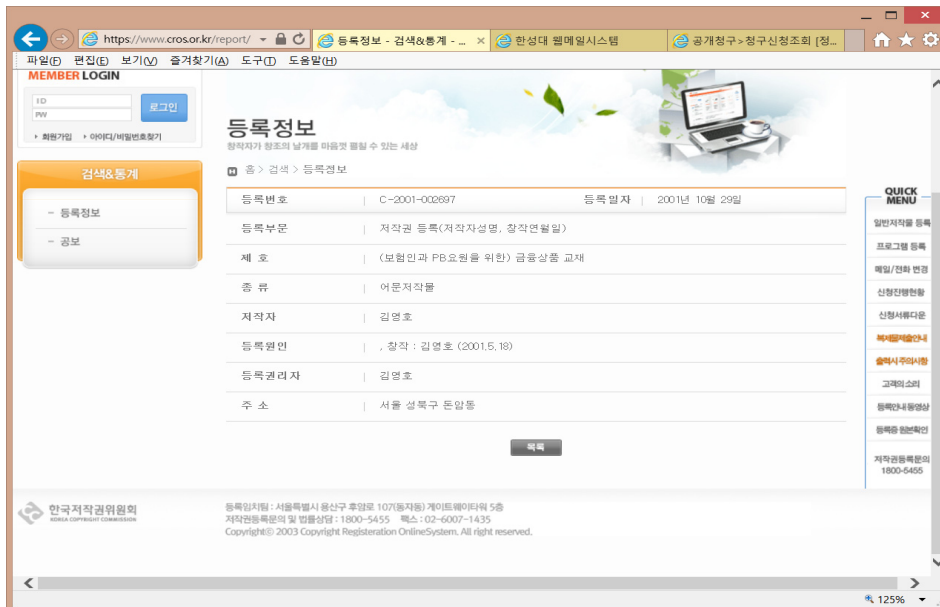
유형	건수
어문	37,864 건
음악	12,724 건
연극	375 건
미술	74,680 건
건축	2,751 건
사진	18,247 건
영상	11,653 건
도형	5,580 건
편집	20,022 건
2차저작물	7,568 건
계	19,1464 건

14) <<https://www.cros.or.kr/>>(2015.11.30. 방문)

15)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 (2015.11.22. 정보공개통지 2015.12.3.)



[그림 13] 저작권등록부 검색화면



[그림 14] 저작권등록부 검색결과 화면

2)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저작권대리중개업자 관리 저작물 조회

상당한 노력의 두 번째 요건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저작재산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조회하기 위하여 문서를 보내고 이를 알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야 한다. 또는 보낸 문서에 대하여 1개월이 지나도 회신이 없는 경우이다. 저작권법 105조에 따르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관리저작물 목록을 도서나 전자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법 제106조). 2015년 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락을 득한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13개이고, 저작권대리중개업자는 823개이다¹⁶⁾.

〈표 10〉 승인된 저작권신탁관리업 단체

연번	단체명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2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3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4	한국음반산업협회
5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6	한국방송작가협회
7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8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9	한국영화제작가협회
10	한국영화배급협회
11	한국방송실연자협회
12	한국언론진흥재단
13	한국문화정보원

현재 저작권찾기 사이트에서 위탁관리단체의 관리저작물도 함께 검색이 되고 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관리저작물을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현재 접수된 저작물은 총 7,789,649건으로 유형별로는 <표 11>과 같다.¹⁷⁾ 이 저작물은 현재 저작권찾기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권찾기 사이트

16)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보공개신청. (2015.12.1. 정보공개통지 2015.12.1.)

17)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 (2015.11.22. 정보공개통지 2015.12.3.)

에서 국내 모든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을 검색할 수 없으며, 위탁관리업자가 등록한 관리저작물만 검색이 가능하다. 보고하지 않은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 정보는 저작권찾기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없다.¹⁸⁾

〈표 11〉 저작권찾기 사이트에 등록된 위탁관리 저작물 현황

음악	어문	방송대본	영화	방송	뉴스	미술	이미지	기타	합계
1,372,217	464,052	22,446	1,138	1,019	1,593,700	24,248	27,940	4,282,889	7,789,649

저작권찾기 사이트에 제시된 바로는 아래와 같은 단체에서 저작권찾기 사이트에 관리저작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위탁관리단체 관리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실한 검색을 위한 두 번째 절차인 저작권관리단체를 통한 조회의 조건이 이 사이트를 통해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이 적어도 어느 권리단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뿐이다. 만일 찾고자 하는 저작물이 위탁관리단체의 저작물일 경우 해당 단체에 이용허락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단체의 DB에서 찾고자 하는 저작물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해당 저작물 분야의 권리단체에 저작재산권자 확인을 위한 조회문서를 보내야 한다. 만일 저작권찾기 사이트에서 위탁관리단체의 관리저작물을 모두 검색할 수 있다면 상당한 노력의 두 번째 요건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고자 저작물이 어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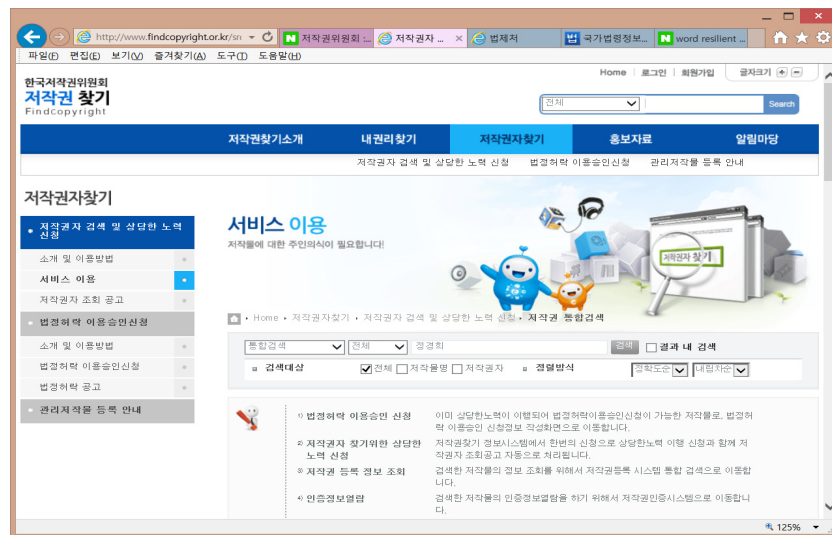
〈표 12〉 저작권찾기 사이트에서 관리 저작물이 검색되는 저작권관리단체들

구분	제공기관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등
어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영화	한국영화배급협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등
방송대본	한국방송작가협회
미술	(주)대중문화저작권관리 등
기타	방송, 이미지 등 관련 저작권위탁관리업자

18)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 (2015.11.22. 정보공개통지 2015.12.3.)

3) 저작권찾기 서비스

상당한 노력의 세 번째 요건은 저작재산권자를 찾기 위한 공고이다.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된 일반 일간신문 또는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 공고한 후 10일이 지나야 한다. 일간신문보다 시스템을 통한 공고가 편리함이나 비용면에서 월등하므로 대부분은 이 사이트를 통하여 공고를 할 것이다. 현재 이 사이트는 권리자 찾기를 위한 공고 뿐 만 아니라 이미 상당한 노력이 이루어져 법정허락이용 신청이 가능한 저작물, 3년이 지난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도서관보상금, 교과용도서 보상금, 방송음악보상금)과 저작권등록정보DB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저작물을 동시에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15] 저작권찾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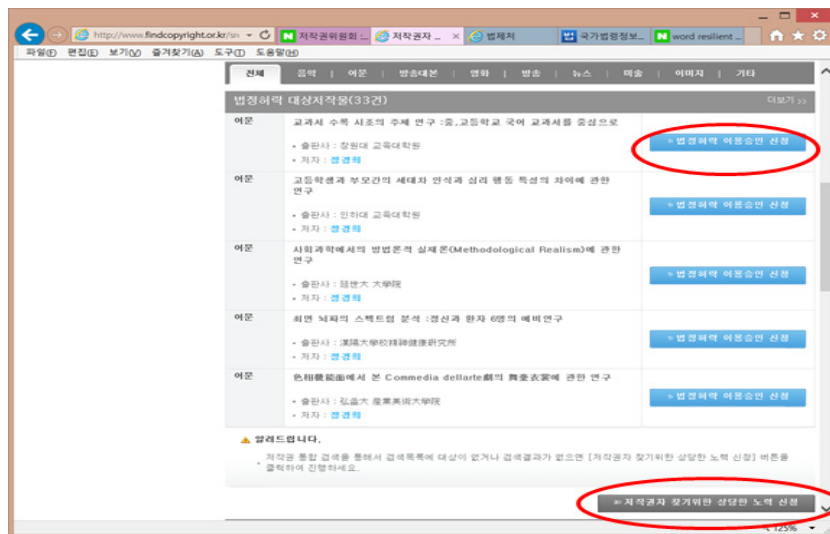
검색결과 이용하려고 하는 저작물이 이미 법정허락이용 신청이 가능한 저작물일 경우 상당한 노력의 절차 없이 바로 이용승인신청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2015년 11월 현재 이 사이트를 통하여 바로 법정허락 이용신청이 가능한 저작물은 약 74만건이고 유형별로는 <표 13>과 같다¹⁹⁾.

19)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 (2015.11.22. 정보공개통지 2015.12.3.)

〈표 13〉 법정허락 이용승인 저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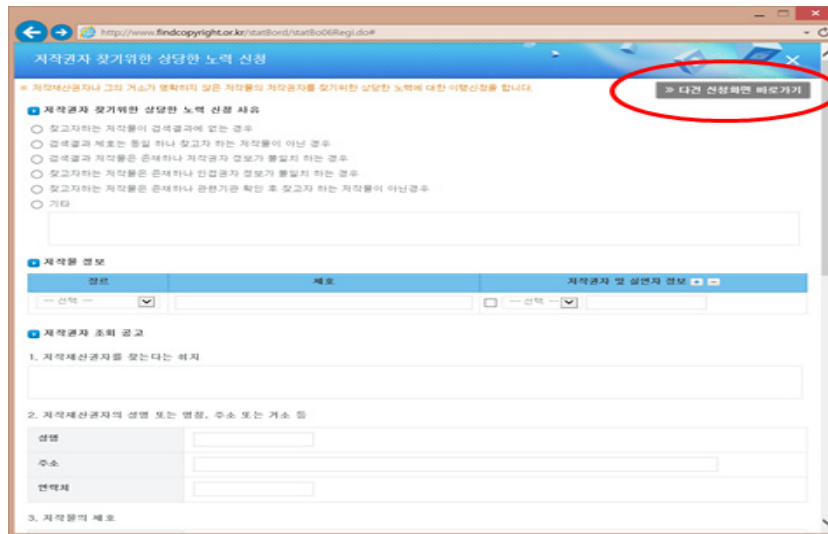
방송음악 (미분배)	교과용 (미분배)	도서관 (미분배)	거소불명	기승인	합계
26,745	310,334	402,356	15	117	739,567

또한 검색결과에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없을 경우 바로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한다. 상당한 노력의 신청은 개별저작물 혹은 복수 저작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대량의 저작물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사유 및 저작권자조회 공고 시 필요한 사항 등을 엑셀파일 1파일당 최대 50건을 정리하여 업로드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담당기관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권리자찾기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직접 상당한 노력을 수행해야 한다.²⁰⁾ 따라서 상당한 노력을 신청받는 것은 저작권자찾기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가 제대로 검색하지 못한 것을 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색을 수행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인다.



[그림 16] 법정허락 이용승인신청 및 상당한 노력신청

20) 대한민국정보공개(<https://www.open.go.kr>) 사이트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정보공개신청. (2015.11.22. 정보공개통지 2015.12 3.)



[그림 17] 상당한 노력 신청 - 1건 신청화면



[그림 18] 상당한 노력 신청 - 다건 신청화면

3.1.4. 평가

국내 저작권법에서 고아저작물 관련규정은 고아저작물 확인을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는 그동안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비교적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1년에 약 1만건을 디지털화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일일이 해당 저작물에 대한 상당한 노력을 수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서관이라 할지라도 성실한 노력에 대한 예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대량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찾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작권찾기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저작물 DB와 도서관이 저작물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일괄처리 작업을 위해서는 저작권등록부,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작물, 기존의 법정허락 승인 저작물 등의 DB에 수록된 저작물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고유식별기호(ISBN 등)가 관리되면 보다 쉽게 매칭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통한 검색은 너무 포괄적이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검색을 말하는 것인지도 모호하다. 특히 대량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에 포털사이트 검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이 규정은 검색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및 수수료는 개별적인 영리 목적의 이용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법정허락 승인신청 수수료와 보상금의 산정은 영리, 비영리 목적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만일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영리목적의 이용과 달리 공익적 차원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 및 보상금 시스템이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유럽연합

3.2.1. 고아저작물에 관한 지침

1) 서

디지털화된 고아저작물은 그 성질상 어느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이용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하여 여러 국가에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은 인류 공통의 문화유산이고, 특히 유럽의 국가들은 어느 정도 동질적인 문화를 형성·발전시켜 왔다. 유럽 내 단일시장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유럽연합은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통일규범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유럽연합 위원회(Commission)는 2011년 5월 24일 「고아저작물의 일정한 허용된 이용에 관한 지침안(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²¹⁾을 공표하였다. 동 지침안에 대해서 2012년 6월 6일 유럽연합의 의회(Parliament), 이사회(Council)와 집행위원회(Commission)는 ‘최종합의문(final compromise text)’²²⁾을 채택하였고, 같은 해 9월 13일에 유럽의회는 이 합의문에 기초한 수정안²³⁾을 승인하였다. 이어 2012년 10월 4일 이 수정안이 유럽연합의 이사회에서도 승인되었고,²⁴⁾ 같은 달 25일 의회 의장과 이사회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공식 지침(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으로서 제정,²⁵⁾ 공포되었다.²⁶⁾

지침은 ‘고아저작물(orphan works)’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게시에 관한 공통된 규칙을 제정

21) COM(2011) 289 final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pyright/orphan_works_en.htm> (2015.11.25. 방문).

22)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 Approval of the final compromise text, Document No. 10953/12,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pdf/en/12/st10/st10953.en12.pdf>> (2015.11.25. 방문).

23) 유럽의회의 승인 후 9월 18일 공표된 지침안은 위의 최종합의문을 기초로 각 조항의 번호를 다시 배열하고 자구를 일부 수정한 것임.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 Outcome of the European Parliament's first reading (Strasbourg, 10 to 13 September 2012), Document No. 13636/12 <<http://register.consilium.europa.eu/pdf/en/12/st13/st13636.en12.pdf>> (2015.10.25. 방문).

24) 14456/12 PRESSE 408, <http://www.consilium.europa.eu/uedocs/cms_data/docs/pressdata/en/intm/132721.pdf> (2015.11.25. 방문).

25) PE-CONS 36/2/12 REV 2, <<http://data.consilium.europa.eu/doc/document/PE-36-2012-REV-2/en/pdf>> (2015.11.25. 방문)

26) OJ L 299, 27.10.2012, p.5.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아저작물은 책, 신문 및 잡지의 기사, 영화 등의 저작물로서 아직까지 저작권으로 보호받고는 있으나 그 저작자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저작권허락을 받기 위하여 저작자를 찾거나 그와 접촉할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과 그 개념이 다르지 않다. 만일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게시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공통의 규범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내의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도서의 일부는 이용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저작물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할 것인지에 관한 공통의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로피아나(Europeana)' 포털과 같은 보다 큰 차원에서의 디지털화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2) 지침제정의 목적 및 배경

지침은 회원국 내에 설립된 것으로, 공중이 접근 가능한 도서관, 교육시설, 박물관, 기록보존소, 영화 또는 청각 유산 보존기관 및 공공(공법상의) 방송사(이하 '문화기관'이라 함)가 공적인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일정한 행위를 규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지침 제1조 제1항).

보호받는 저작물을 디지털 도서관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관련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거나 그의 소재 등을 찾을 수 없는 '고아저작물'에 대해서는 이용에 필요한 허락을 받을 수 없다. 만일 도서관, 기록보존소 및 다른 공공서비스기관들이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온라인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의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다.

지침은 2006년 유럽위원회의 「문화콘텐츠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접근성과 디지털 보존에 관한 권고」²⁷⁾에 기반을 두고 있다. 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오직 몇 개의 국가만이 고아저작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고아저작물에 관한 몇 개 국가에 존재하는 기존의 법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고아저작물에 관한 입법제안을 지침의 형태로 하는 이유는 각국의 자발적인 입법노력에는 이와 같이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각국의 관련 법률규정의 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이 유럽연합의 회원국간 고아저작물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지침 이유 8번 및 25번).²⁸⁾

27) Commission Recommendation 2006/585/EC of 24 August 2006 on the digitisation and online accessibility of cultural content and digital preservation, OJ L 236, 31.8.2006, pp.28-30.

28) 프랑스와 같은 몇몇 회원국들에서는 입법적 해결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럽차원의 해결책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아저작물의 문제는 디지털 도서관의 구축에 큰 장애물이다. 고아저작물을 국경을 초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럽차원의 통일된 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의 단일시장에서 고아저작물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화 및 유포를 촉진시키기 위한 법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또한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²⁹⁾의 7개 중점추진계획(flagship initiatives) 중 하나인 「유럽을 위한 디지털 의제(Digital Agenda for Europe)」³⁰⁾에 포함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이기도 하다(지침이유 2번).

3) 지침의 적용범위

지침은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지침은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제반문제들 중 일정한 사항들, 특히 대량 디지털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일련의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지침은 (i)공중이 접근 가능한 도서관, 교육시설, 박물관, 기록보존소 및 영화 또는 청각 유산 보존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로서 책,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또는 기타 인쇄물의 형태로 발행된 저작물, (ii)위 기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영화저작물, 시청각저작물 및 음반, 또는 (iii)공법상의 방송사업자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하고 소장하고 있는 영화저작물, 시청각저작물 및 음반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방송사업자의 소장자료에 대해 시간적 적용범위를 제한한 이유는 음반 및 시청각자료의 제작자로서 방송사업자의 특수한 위치를 고려하고(예컨대 해당 방송사업자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도록 제작된 시청각자료를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기타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됨), 향후 고아저작물의 출현을 제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지침이유 10번). 위 저작물 또는 음반은 회원국 내에서 처음 발행되었거나 방송된 경우에만 지침이 적용된다(지침 제1조 제2항). 이는 국제적 관행을 고려한 것이다(지침이유 12번).

지침은 저작물 또는 음반이 회원국 내에서 발행 또는 방송되지는 않았으나,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 문화기관에 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예컨대 출판되지는 않았으나 도서관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Conseil Supérieur de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19 mars 2008, Commission sur les oeuvres orphelines, Rapport, p.19. <<http://www.cspla.culture.gouv.fr/CONTENU/rapoeuvor08.pdf>> (2015.11.25. 방문).

29) 동 전략의 기본문서로는 「Europe 2020: A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Brussels, 3.3.2010, COM(2010) 2020 final 참조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2020:FIN:EN:PDF>> (2015.11.25. 방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그 홈페이지 참조 <http://ec.europa.eu/eu2020/index_en.htm> (2015.11.25. 방문).

30) 「A Digital Agenda for Europe」, Brussels, 26.8.2010, COM(2010) 245 final/2, p.9 and 37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OM:2010:0245:FIN:EN:PDF>> (2015.11.25. 방문).

도서대출이나 기타 방법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는 그 권리자가 지침 제6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 또는 음반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회원국은 지침에서 정하는 일정한 시점 이전에 위 기관 등에 기탁된 저작물 또는 음반에 대해서만 이러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지침 제1조 제3항).

지침은 전술한 저작물 또는 음반에 포함되어 그 일부를 구성하는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각국의 법률상황에 따라 저작권접권으로 보호받는 음반, 영화 등을 말함.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을 ‘저작물’이라 칭함)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지침 제1조 제4항).

지침은 다른 법률규정의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특히, 특허권, 상표, 디자인권, 실용신안, 반도체칩, 타이프페이스, 조건부 접근, 방송서비스 케이블에 대한 접근, 국가 문화유산의 보호, 법률상 기탁 요건, 제한적 거래관행 및 부정경쟁, 영업비밀, 보안, 신뢰, 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보호 또는 공적 문서에 대한 접근에 관한 법률, 계약법,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지침 제7조).

4) 고아저작물의 정의

지침에서 고아저작물 또는 고아음반(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고아저작물’이라 칭함)이란 지침 제3조에 따라 권리자를 찾기 위하여 ‘성실한 조사(diligent search; sorgfältige Suche)’를 하고 이를 기록하였으나, 그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거나, 권리자를 확인하였으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지침 제2조 제1항). 권리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들 중 어느 1인도 확인할 수 없거나 찾을 수 없어야 한다. 따라서 만일 어떤 저작물에 대하여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고, 그들 중 어느 1인을 확인하고 찾은 경우에는 고아저작물로 간주되지 않는다(지침이유 17번).

만일 저작물에 대하여 다수의 권리자가 존재하나 그들 중 일부만 확인되고 찾아진 경우에는, 지금까지 확인되고 찾아진 권리자가 그의 권리부분에 관하여 문화기관에 해당 저작물의 복제 및 전송을 허락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저작물은 이 지침에 따라 이용될 수 있다(지침 제2조 제2항). 환언하면, 권리자 불명인 부분은 이 지침에 따라서, 권리자가 분명한 부분은 계약에 의한 이용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그 권리자의 권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지침 제2조 제3항). 따라서 권리자는, 다른 권리자들의 불명 상태와는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에 기하여 해당 저작물의 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고아저작물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문화기관은 각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성실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실한 조사는 해당 저작물의 종류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원(appropriate sources)’에 문의 내지 조사하는 방법에 의한다(지침 제3조 제1항). 성실한 조사는 지침에서 정한 문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서 실시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그 기관은 조사비용을 받을 수도 있다(지침이유 13번).

‘성실한 조사(diligent search)’가 무엇인지 지침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우선, 어떤 것이 ‘적절한’ 정보원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회원국에 일임되어 있으나, 최소한 지침의 부록에 열거된 일정한 정보원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적절한 정보원인지 여부는 각 회원국에서 권리자 및 이용자와의 ‘협의(consultation)’를 통해서 정해져야 한다(지침 제3조 제2항).

부록에서 열거된 정보원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발행된 서적의 경우에는 (a)법정 기탁(출판물의 법정 납본), 도서관 및 기타 기관 등의 목록, (b)해당 국가의 출판사 및 저작자협회, (c)기존의 데이터베이스, WATCH,³¹⁾ ISBN³²⁾ 및 서적재고목록, (d)해당 신탁관리단체의 데이터베이스, (e)VIAF,³³⁾ ARROW³⁴⁾를 포함하여 통합 데이터베이스 등(부록 1).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a)ISSN,³⁵⁾ (b)도서관 목록, (c)법정 기탁, (d)해당 국가의 출판사·저작자 및 기자협회, (e)해당 신탁관리단체의 데이터베이스 등(부록 2). 회화,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건축물 등의 시각저작물의 경우에는 (a)부록1과 2에 열거된 정보원, (b)관련 신탁관리단체(특히 시각예술을 위한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c)사진 에이전시의 데이터베이스 등(부록 3). 시청각저작물과 음반의 경우에는 (a)법정 기탁, (b)해당 국가의 제작자협회, (c)영화 또는 청각유산 보존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국립 도서관의 데이터베이스, (d)시청각자료에 대해 ISAN,³⁶⁾ 음악저작물에 대해 ISWC,³⁷⁾ 음반에 대해 ISRC³⁸⁾ 등의 관련 데이터베이스, (e)해당 신탁관리단체(특히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또는 시청각 제작자 등을 위한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f)저작물의 포장에 표시된 크레딧(credit) 및 기타 정보, (g)특별한 종류의 권리자들을 대표하는 관련 권리자들의 협회의 데이터베이스 등(부록 4). 이처럼 최소한의 통일화된 조사방법을 제시한 이유는 유럽연합 내에서 저작권을 되도록 강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지침이유 14번).

성실한 조사는 해당 저작물이 최초로 발행 또는 방송된 회원국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영화

31) Writers, Artists and their Copyright Holders.

32)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33)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s.

34) Accessible Registries of Rights Information and Orphan Works.

35)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36) 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

37)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Work Code.

38)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또는 시청각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제작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상시 거소가 있는 회원국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지침 제3조 제3항 제1문). 공동제작의 경우에는 각 관련 회원국들에서 모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지침이유 15번). 만일 저작물이 발행 또는 방송되지는 않았으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어서 문화기관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경우(지침 제1조 제3항의 경우)에는, 성실한 조사는 그 문화기관이 설치된 회원국 내에서 실시되어야 한다(지침 제3조 제3항 제2문). 만일 권리자에 관한 정보가 다른 국가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원도 조사하여야 한다(지침 제3조 제4항).

문화기관은 성실한 조사의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 정보에는 조사의 결과, 고아저작물의 이용방법, 고아저작물 지위의 변경, 해당 문화기관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지침 제3조 제5항). 회원국은 위 정보가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청(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OHIM))³⁹⁾이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으로서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단일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문화기관으로부터 위 정보를 획득한 후 이를 지체 없이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청에 전달하여야 한다(지침 제3조 제6항). 단일의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문화기관과 권리자가 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잠재적 저작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다(지침이유 16번).

어느 회원국에서 지침의 규정에 따라 고아저작물로 간주된 저작물은 다른 모든 회원국 내에서도 고아저작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 저작물은 각 회원국에서 고아저작물로서의 요건을 별도로 증명할 필요없이 유럽연합 전역에서 지침이 정하고 있는 예외 또는 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용될 수 있다(지침 제4조). 유럽 내 여러 회원국간의 국경을 초월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지침은 ‘상호 승인(mutual recognition)’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지침이유 8번 참조). 더 나아가서 어느 회원국의 문화기관은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 내의 공중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지침이유 23번). 이는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침에서 고아저작물의 상태를 상호 승인하도록 한 것은 조사를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적 절차,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지침이유 15번 참조). 이렇게 됨으로써 혹시 ‘포럼 쇼핑(forum shopping)’ 현상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

39)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청은 유럽연합 규칙 No 386/2012에 의하여 2012년 6월 5일부터 유럽연합 내 지적재산권 침해 감시업무를 위탁받았음. Regulation (EU) No 386/201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April 2012 on entrusting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Trade Marks and Designs) with tasks related to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he assembling of public and private-sector representatives as a European Observatory on Infringemen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J L 129, 16.5.2012, p.1.

나, 각 저작물에 대해서 최초 발행국인 회원국 내에서 성실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없다.

고아저작물로 간주된 저작물의 권리자가 추후 나타난 경우, 그 권리자는 언제든지 고아저작물로서의 지위를 종료시킬 수 있다(지침 제5조).

5) 고아저작물의 이용방법과 보상

지침은 문화기관에서 그 소장자료 중 고아저작물을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에게 저작권산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exception or limitation)'을 허용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다. 여기서 허용되는 예외 또는 제한의 범위란 정보사회지침(Directive 2001/29/EC)⁴⁰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에 대한 이용제공(making available)'(우리 법상 '전송'에 해당)과 위 지침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지털화, 이용제공, 색인작업(indexing), 목록작업(cataloging), 보존 또는 복원을 위하여 요구되는 '복제'를 말한다(지침 제6조 제1항). 문화기관에서 이와 같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이든 확인된 저작자 및 기타 권리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지침 제6조 제3항).

저작권산권의 예외 또는 제한은 원칙적으로 문화기관의 공적인 고유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특히 그 소장자료를 보존, 복원하고 이에 대해 문화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지침 제6조 제2항).

문화기관은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이는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온라인에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로만 허용된다. 환언하면, 모든 수익은 디지털화 및 온라인제공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지침 제6조 제3항). 이는 박물관 등에서 기념품을 판매하는 경우를 예상한 규정으로 추측된다. 수익창출을 허용한 것은 디지털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함이다(지침이유 21번). 지침은 문화기관이, 공공-민간 간 협력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지침 제6조 제4항). 이는 특히 수익창출의 경우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직접 민간 파트너에게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권한이나 통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지침이유 22번).

만일 고아저작물의 권리자가 나타나서 그 저작물의 고아상태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그 권리자에게 문화기관에서 행한 이용에 대해서 '공정한 보상(fair compensation)'을 지급하여야

40)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J L 167, 22.6.2001, p.10. 동 지침의 내용에 대해서는 안효질, 2000. "정보사회에서의 유럽저작권법의 변화", 지적소유권법연구, 제4집, pp. 63-94 참조.

한다. 어떤 상황의 경우에 그 보상금을 지급할 지는 각 회원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보상의 정도는 유럽공동체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아저작물을 이용한 문화기관이 설치된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정해진다(지침 제6조 제5항).

지침은 추후 저작권자가 나타나는 경우 도서관과 같은 문화기관이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실제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만 보상받도록 하고 있다. 보상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문화기관의 공적인 목적, 이용의 비영리성 등과 권리자의 손실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지침이유 18번). 그러나 해당 저작물이 성실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기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고아저작물이 된 것이 아니라면,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저작권침해에 대한 통상적인 구제수단이 주어져야 한다(지침이유 18번).

6) 지침의 이행 및 평가

지침의 주된 목표는 도서관, 교육시설, 문화유산 보존기관 등의 문화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아저작물을 적법하게 복제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이다. 지침은 이러한 정책목표와 국제저작권법에 부합하도록 이행되어야 한다.⁴¹⁾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정보원의 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어떤 출판사 또는 저작물을 이 지침의 적용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또한 디지털 도서관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 지침의 적용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유럽 내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지침에 대한 개정안도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지침의 이행으로 인하여 권리관리에 관한 회원국내의 조치(지침 제1조 제5항)를 시행하는데 장애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은 이를 집행위원회에 통지하고, 집행위원회는 향후 지침의 이행결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 또는 지침의 개정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이상 지침 제10조).⁴²⁾

41) Impact Assessment on the Cross-Border Online Access to Orphan Works, Brussels, 24.5.2011, SEC(2011) 615 final, p.38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pyright/docs/orphan-works/impact-assessment_en.pdf> (2015.11.25. 방문).

42) 이에 대해서는 또한 *Id.* at 39 참조.

3.2.2. 고아저작물지침에 대한 평가

1) 고아저작물 입법의 성질

2011년의 지침안과는 달리 최종지침은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전송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재산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exception or limitation)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원 지침안이 이 점을 밝히고 있지 않았던 점은 중요한 결점이었다. 저작권재산권의 예외 또는 제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단계테스트(three-step-test)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점은 지침의 전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지침이유 20번). 학자들은 원래 지침안은 이 점에 관하여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었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의무와도 부합하지 않았다고 비판하였다.⁴³⁾ 지침의 각 규정들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의무에 부합하는지, 특히 나중에 권리자가 나타나는 경우 제한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예외 내지 제한의 범위가 국제적 수준과 부합하는지는 추후 검토해 볼 일이다.

2) 이용의 주체

지침은 유럽의 도서관, 기록보존소, 방송국 기타 시설에서 그 소장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한 합법적인 기초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물론 유럽의 전자도서관 구축 계획인 유로피아나(Europeana)도 이 지침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지침은 고아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공익에 관한 임무 즉, 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 교육시설 등과 같이 공공 시설 내지 기관들이 그 소장 저작물을 보존 또는 복원하거나 그 저작물에 대한 문화적 또는 교육적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1조 제1항, 제6조 제2항).

이에 대해서는 검색엔진, 오픈콘텐츠 기관 또는 위키피디아(Wikipedia)와 같은 영역에서도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곳에 대해서도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이 허용되어야 하며, 이것이 또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주장

43) 국제문학예술인협회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고아저작물지침안에 대한 토론을 하였는데, 위 집행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 7인의 학자들은 그 토론에 대한 후속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 논평에서는 특히 원 지침안 제7조가 보상금청구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었던 점과 고아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용하고 있었던 점은 '삼단계 테스트(three-step test)'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Orphan works - compatibility of the draft Directive with the international norms」. 이에 대해서는 위 7인 중 한 명인 Ficsor 박사의 블로그 <<http://www.copyrightseesaw.net/>> 참조 (2015.11.25. 방문).

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또한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한 추가적으로 상업적 이용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⁴⁴⁾

그러나 원래 지침안(제6조 제3항)과 현재 지침(제6조 제4항)은 모두 문화기관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지침은 공공-민간 협력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도서관 등의 문화기관이 검색엔진 등의 민간기업에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 또는 이용제공을 위탁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유포라는 공익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현재 지침이 원래 지침안에 비하여 고아저작물의 상업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원래 지침안은 추후 나타날 저작권자를 위하여 보상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각 회원국이 문화기관에 공적 임무 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지침안 제7조). 반면, 현행 지침은 고아저작물의 영리목적 이용 자체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임무 수행을 위한 이용 과정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수익은 모두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이용제공을 위해 지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지침 제6조 제2항 제2문).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이용제공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와 같은 제한이 오히려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3) 대량 디지털화 비용

지침이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온라인제공에 대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된다. 다만, 각 고아저작물마다 그 이용 전에 성실한 조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고, 따라서 많은 문화기관에서는 디지털화 계획 자체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특히 도서관계를 중심으로 일고 있다.⁴⁵⁾ 반면, 권리자 측에서는 각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자를 찾기 위한 성실한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⁴⁶⁾ 사실 대규모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성실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비용이 상당히 소요

44) Rainer Kuhlen, Stellungnahme zur Anhörung des Rechtsausschusses des Deutschen Bundestags am 19. September 2011 zur Digitalisierung verwaister und vergriffener Werke entsprechend den drei Vorschlägen der Fraktion der SPD, der Fraktion DIE LINKE und der Fraktion BÜNDNIS 90/DIE GRÜNEN, 13.9.2011, S. 4. <http://www.bundestag.de/bundestag/ausschuesse17/a06/anhoeerungen/archiv/13_Urheberrecht/05_Stellungnahmen/Stellungnahme_Kuhlen.pdf> (2015.11.25. 방문).

45) '성실한 조사' 요건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Karin Ludewig, Wohin mit den verwaisten Werken?: Eine Untersuchung aus den Bereichen Museum und Archiv, Institut für Bibliotheks- und Informationswissenschaft der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2012, S. 54 und 73 ff. 및 그 인용문헌 참조. <<http://edoc.hu-berlin.de/series/berliner-handreichungen/2012-321/PDF/321.pdf>> (2015.11.25. 방문).

46) 유럽의 인쇄부문(print sector)의 권리자들의 대표기관들은 2012년 2월 28일 유럽의회 법사위원회(Committee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를 근거로 지침은 소규모 디지털화에 대한 법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라고 그 가치를 평가 절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지침에서 제시한 방법만이 대량 디지털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그 전문에서도 알 수 있다. 지침은 이 지침이 대량 디지털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미 각 회원국내에서 고안된 해결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지침이유 4번). 또한 지침은 ‘확대된 집중이용허락(extended collective licensing)’과 같이 각 회원국 내에서 저작권의 관리에 관하여 취해진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지침 제1조 제5항, 지침이유 24번 참조). 지침은 또한 지난 201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중재하여 얻은 결과물로서, 「절판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온라인 전송에 관한 주요원칙에 대한 양해각서」⁴⁷⁾를 참조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지침이유 4번). 요컨대 지침은 고아저작물과 절판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위해 각국에서 법률상 허용하고 있거나 관련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방법의 시행을 오히려 예상하거나 전제로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차원에서 최소한의 입법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공동저작물

원래 고아저작물지침안은 저작물의 권리자가 다수이고 그 권리자 중 1인이 확인되고 찾아진 때에는, 그 저작물은 고아저작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지침안 제2조 제2항). 최종지침도 공동권리자 중 어느 누구도 확인되거나 찾아지지 않은 경우에만 고아저작물로 보고 있으므로(지침 제2조 제1항), 이 점에 관한 한 양자 간에 차이는 없다. 다만, 최종지침은 공동권리자 중 확인되고 찾아진 권리자가 있고 나머지 권리자는 불명인 경우, 권리자 불명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의하여 이용하고 권리자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에 의하여 이용하도록 함으로써(지침 제2조 제2항), 권리자의 일부가 고아상태인 저작물의 이용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on Legal Affairs(JURI))에 고아저작물에 관한 서한을 전달했다. 여기서 위 기관들은 각 저작물마다 그 이용 전에 성실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실한 조사기준은 지침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권리자들과 협의(consultation)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합의(agreement)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참여한 기관은 다음과 같다. European Magazine Media Association (EMMA), European Newspaper Publishers Association (ENPA), European Publishers Council (EPC), European Writers Council (EWC), Federation of European Publishers (FEP),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production Rights Organisations (IFRR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And Medical Publishers (STM). Letter from the European print sector to the European Parliament. <http://www.ifrro.org/sites/default/files/letter_to_mep_juri_print_sector_28022012.pdf> (2015.11.25. 방문).

47)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Key Principles on the Digitisation and Making Available of Out-of-Commerce Works, 20 September 2011. <http://ec.europa.eu/internal_market/copyright/docs/copyright-infso/20110920-mou_en.pdf> (2015.11.25. 방문).

특히 고아저작물 중에 적지 않은 양을 차지하는 영화의 경우, 모든 권리자가 불명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사실상 그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영화의 경우 보통 다수의 공동저작자가 존재한다. 예컨대, 우리 법상으로는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므로(저작권법 제48조 제1항), 그 중 어느 1인을 찾을 수 없는 때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공동저작물의 이용이 불가능하다.⁴⁸⁾ 따라서 관련 저작자들을 모두 찾을 수 없는 때에만, 고아저작물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⁴⁹⁾

이러한 현상은 음악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아날로그 형태로 존재하는 녹음된 음악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이에에는 음악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가 원칙적으로 모두 동의하여야 한다. 만일 관련 권리자 모두가 확인되지 않거나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만 고아저작물규정의 적용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물론 지침 제2조 제2항은 다수의 권리자 중 확인되거나 소재가 파악된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부분에 관한 한 이용허락을 한 경우에는 권리자 불명인 부분에 관하여는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5) 보상금의 징수와 공익목적 사용

원래 지침안은 도서관 등의 문화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공탁할 의무를 지우고 있지는 않았다. 다만, 공익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추후 나타날 권리자의 청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지침안 제7조 제1항 제4호, 지침안이유 22번). 이 경우 권리자는 그 이용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최소 5년의 범위 내에서 각 회원국이 정하는 기간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지침안 제7조 제1항 제5호). 위 기간 경과 후에는 각 회원국이 징수된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지침안 제7조 제2항), 저비용의 자동화된 방법을 통하여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성실한 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과 같이 권리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데 쓸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지침안이유 22번).

48) 영상저작물의 경우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공동저작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받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 공동저작자 중 1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영상저작물의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1957년 구저작권법에는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었다. 1986년 구저작권법 제75조 제1항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오래된 영화의 제작 당시 영화의 이용방법을 고려하건대 디지털 복제 및 전송도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결국 고아저작물에 해당할 정도의 오래된 영상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그 영화감독, 카메라감독 등의 공동저작자가 전원이 합의하여 그 저작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영상저작물에 관하여 우리 법과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49) Kuhlen, *supra* note 44, S. 5.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교과용도서보상금, 도서관보상금 또는 방송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분배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 25조 제8항, 제31조 제6항, 제75조 제2항, 제76조 제2항, 제76조의2 제2항, 제82조 제2항, 제 83조 제2항, 제83조의2 제2항, 제101조의3 제3항)과 그 내용이 유사하다. 다만, 차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고아저작물(제50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의 이용시 공탁 하는 보상금에 대해서는 미분배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종 지침은 고아저작물의 영리목적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고, 공익목적 이용 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익목적 이용에 대해서도 추후 권리자가 출현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지침 제6조 제5항 제1문). 그 외에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각 문화기 관에 보상금을 징수하여야 할지, 언제 내지 언제까지 권리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지 기 타 보상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회원국에게 일임하고 있다(동 조항 제2문, 지침이유 18번).

3.2.3. 접근방법상 우리법과의 차이

유럽연합의 경우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전송과 관련하여 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 신설 하는 취지의 지침을 제정·공포하였고, 독일과 다른 회원국들도 이를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였 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저작권법 제31조에 따른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하므로 유럽연합에서와 같은 입법적 노력은 상당부분 필요하 지 않다고 보여 진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이 아니라 어떤 개인 또는 기업이 권리자 불 명인 저작물을 영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1조는 더 이 상 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이러한 측면에서는 저작권법 제50조의 법정허락제도만이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고아저작물지침은 우선 공공기관에서 공익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업적 이용은 허용되지 않는 반면,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예컨대 도서관 등이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고아저작물을 공익목적으로 복제·전 송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도서관의 재정부담을 고려하건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⁰⁾

우리나라의 경우 도서관은, 고아저작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이용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 보관 된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저작권법 제31조 제1

50) Kuhlen, *supra* note 24, S. 2.

항 제2호, 제3항). 그러나 그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만 복제할 수 있고, 다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전송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고아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1조 제5항).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은 결국 대부분이 미분배될 것이 예상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까지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재고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3.2.4. 고아저작물 검색 DB

1) 고아저작물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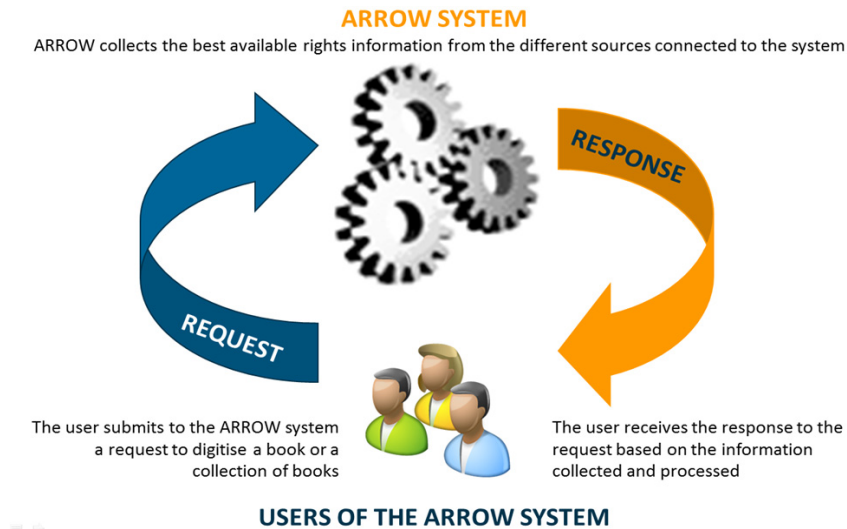
유럽연합 각 회원국내의 고아저작물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는 이른바 'ARROW'⁵¹⁾에 의해 구축·운영되고 있다. 여기서는 유럽 각국의 도서관·출판사·작가 단체 및 집중관리단체와 제휴하여, 권리자 및 권리 확인, 보호상태 확인, 퍼블릭 도메인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RROW 시스템⁵²⁾은 텍스트 및 이미지 기반 저작물의 저작권 권리 및 저작권자에 대한 성실한 검색(diligent search)을 지원하는 틀로써 개발되었다. ARROW 시스템은 이용자가 성실한 검색을 위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때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간에 정보교환을 위한 자동화되고 표준화된 연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ARROW의 작동방식은 아래와 같다.

- (1) 이용자는 출판물이나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요청을 ARROW 시스템에 제출한다.
- (2) ARROW 시스템은 해당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에 해당 요청을 보낸다.
- (3) ARROW 시스템은 해당 저작물에 대한 가장 적합한 저작권 권리 정보를 수집한다.
- (4) 이용자는 자신의 요청사항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 (5) ARROW 시스템의 처리과정에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과 값이 고아저작물 등록부에 보내진다.

51) Accessible Registries of Rights Information and Orphan Works. <<http://www.arrow-net.eu>> (2015.11.25. 방문).
52) <<http://www.arrow-net.eu>> (2015.12.3. 방문)



[그림 19] ARROW 시스템에 대한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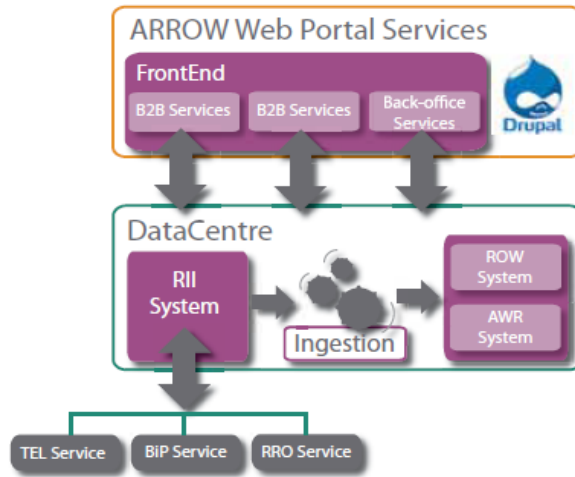
ARROW 시스템은 이용자들의 디지털화 프로그램 수준에 따라서 2가지의 이용자 요청제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1) 웹 폼(Query Form)을 이용하여 서지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이는 개인 이용자가 한 두 개의 저작물에 대한 성실한 검색을 수행할 때 적합하다.
- (2) MARC 21 XML 형식으로 작성된 서지정보를 최대 100건까지 일괄 업로딩할 수 있다. 이것은 중소 규모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위한 성실한 검색에 적합하다.

ARROW 시스템은 EDItEUR의 개방형 표준인 ONIX-RS 메시지를 사용하여 데이터베이스간의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주요 데이터베이스는 다음과 같다.

- (1) 유럽도서관(the European Library, TEL) : 이용자가 요청한 도서를 식별하고 같은 저작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도서들을 클러스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 (2) 가상 국제전거파일(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 VIAF) : 저자 식별과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에 대한 식별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 (3) 출판국의 출판도서 데이터베이스(Books in Print database, BiP) : 어떤 도서가 현재 어느 출판사를 통해서 상업적으로 출판중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 (4) 저작권관리단체(Reproduction Rights Organization, RRO)과 집중관리단체(Collective Management Organization, CMO) :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ARROW 시스템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4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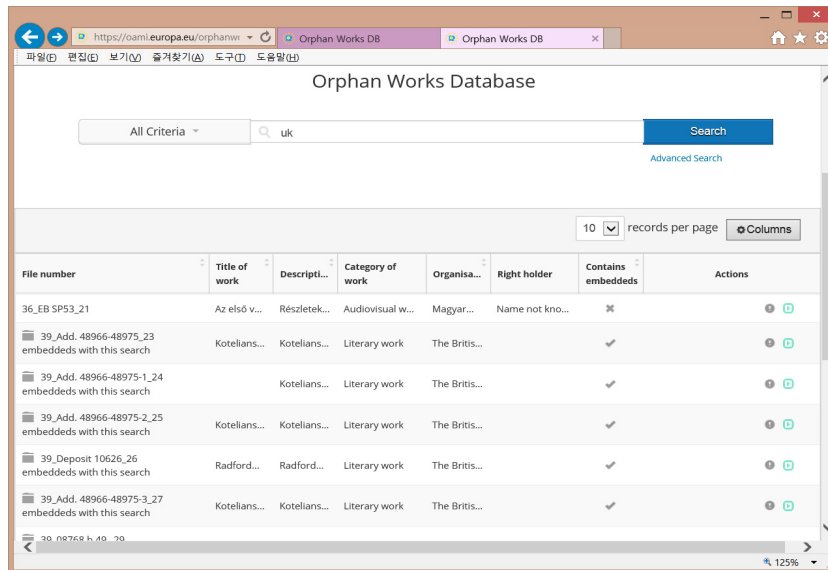
[그림 20] ARROW 시스템의 구성요소

- (1) ARROW 웹 포털 서비스 : 이용자와 시스템간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2) 저작권 권리 정보 인프라(Rights Information Infrastructure, RII) : ARROW 시스템의 백본으로 연계된 데이터베이스에 질의를 하고 관련 정보를 검색한다. 그리고 검색된 정보를 처리하고 정교화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최종적으로 계획된 업무절차에 따라 정보를 교환한다.
- (3) ARROW 저작물 등록부(Arrow Work Registry, AWR) : 저작권 권리 정보 인프라(RII)의 워크플로에 따라 수집된 모든 관련 정보들을 저장한다.
- (4) 고아저작물 등록부(Registry of Orphan Works, ROW) : ARROW 저작물 등록부(AWR)의 부분집합으로 '잠정적 고아저작물'로 선언되어진 저작물을 관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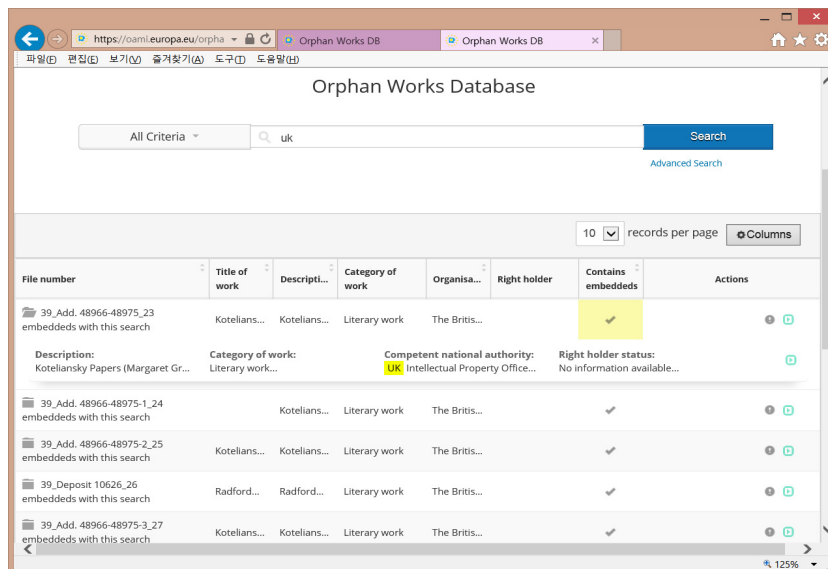
2)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OHIM⁵³⁾은 EU의 상표와 디자인 등록기관으로 상표, 디자인 DB를 관리한다. 고아저작물 DB도 관리하고 있다. 이 DB를 통해 EU 회원국의 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 기록관, 영화 및 오디오 문화기관, 공영방송기관에 있는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53) <<https://oami.europa.eu/orphanworks/>> (2015.12.3.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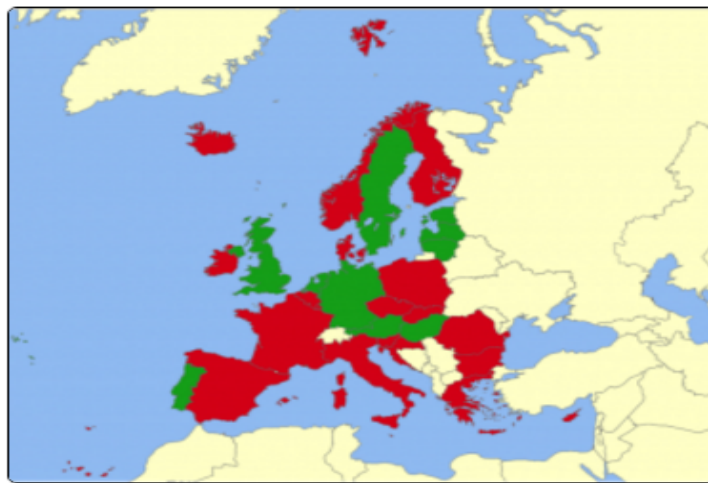


[그림 21] OHIM 고아저작물 데이터베이스



[그림 22] OHIM 고아저작물 데이터베이스 - 검색결과화면

OHIM에서 관리하는 고아저작물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고아저작물의 수는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9월에 1,352건의 고아저작물이 등록된 것에 대비하여 2015년 12월에는 1,430건의 고아저작물이 등록되었다. 1,430건의 고아저작물 중에서 829건은 필름 자료이며 네덜란드의 EYE Filmmuseum이 단독으로 750건을 등록하였다. 아직까지는 고아저작물을 등록하는 EU 회원국의 수는 적은 편이다. [그림 23]은 OHIM에 고아저작물을 등록한 국가 현황을 제시한 것이다. 현황을 보면 OHIM에 고아저작물을 등록한 국가는 11개국이며 OHIM에 고아저작물을 미등록한 국가는 20개국으로 이는 전체 EU 회원국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림 23] OHIM에 고아저작물 등록 국가 현황

※ 출처 :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 OHIM에 고아저작물을 등록한 국가: 영국, 스웨덴 등 총 11개국
- OHIM에 고아저작물을 미등록한 국가: 스페인, 프랑스 등 총 20개국

3.3. 영국

영국은 2014년 10월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2개의 저작권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화유산 기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적용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법정허락 제도를 적용하였다.

3.3.1. 저작권법에서 법정허락제도 및 고아저작물 규정 현황

2014년 10월 저작권법 개정 이전까지 영국의 저작권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 1988)에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다. 다만 1988년 법 제9조 (5)항에는 합리적인 조사(reasonable inquiry)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저자 불명인 것으로 간주하되, 만일 저자의 신원이 밝혀지게 되면 저자불명 상태를 중단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2조 (3)항에는 저자불명인 저작물의 보호기간 기산을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CDPA 190조 (1)항은 공연녹음물을 복제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복제권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저작권위원회(Copyright Tribunal)가 동의를 해 줄 수 있으며 (2)항은 그 위원회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 따라 복제하려는 사람은 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경우에 한해서만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권리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3.3.2. 고아저작물 관련 법 개정 경과

영국은 2006년에 고아저작물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2010년에 다시 시도하였으나 성공을 못하다가 2011년에 저작권 개정을 위한 권고에 따라 2014년 10월에 해결책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저작권법에 2개의 중요한 변화가 생겼다. 영리 혹은 비영리 목적의 이용을 위하여 마련한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규정’(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Licensing of Orphan Works) Regulations 2014(2014 No. 2863 COPYRIGHT)(2014년 10월 27일 의회승인, 2014년 10월 29일 효력발생)과 문화유산기관의 고아저작물 사용을 위하여 마련한 ‘특정의 허용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정’(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Regulations 2014(2014 No. 2861 COPYRIGHT)

(2014년 10월 27일 의회승인, 2014년 10월 29일 효력발생)이다.

3.3.3.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한 규정

‘고아저작물 이용허락 규정’에 따르면 고아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실한 검색(diligent search)’을 수행한 후 저작권 소유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규명해야한다. 성실한 검색을 수행해야할 정보원은 영국 이용허락을 위한 고아저작물 등록부, OHIM(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고아저작물 데이터베이스, 문화유산기관이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하여 검색해야하는 정보원들이다(규정 4(3)항).

고아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승인하는 주체는 IPO(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이다. 성실한 검색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였을 때 IPO는 고아저작물 이용을 허락하는 비배타적 라이선스를 발부해준다. 단 영국 내에서 만의 이용이다. 이 라이선스는 권리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7년간 지속된다.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서는 한 저작물에 20파운드의 수수료(application fee)와 라이선스 이용료를 지불해야한다. 수수료는 저작권 1건에 기본요금 20파운드이고 2건은 24파운드이다. 이후 저작물이 1건 추가될 때마다 2파운드씩 추가하고 있다.

〈표 14〉 IPO의 고아저작물 승인신청 수수료

저작물 수	요금	저작물 수	요금	저작물 수	수수료
1	£20	11	£42	21	£62
2	£24	12	£44	22	£64
3	£26	13	£46	23	£66
4	£28	14	£48	24	£68
5	£30	15	£50	25	£70
6	£32	16	£52	26	£72
7	£34	17	£54	27	£74
8	£36	18	£56	28	£76
9	£38	19	£58	29	£78
10	£40	20	£60	30	£80

라이선스 비용은 라이선스를 얻고자하는 저작물의 형태(어문, 예술, 음악 등)를 고려하여 책정되고, 이용의 형태(영리목적인지 비영리목적인지), 해당 저작물과 유사한 비고아저작물 사용에 지불된 라이선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책정된다. IPO는 고아저작물에 라이선스 비용을 8년간 보유하고 있다가 이후에는 라이선스 체제를 정비하고 관리하는 비용과 사회, 문화, 교육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한다고 계획하고 있다.

IPO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라이선스 비용을 저작물당 10펜스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해 놓았다. IPO는 비영리 목적에 대한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⁵⁴⁾.

- 라이브 이벤트나 전시, 이와 유사한 것을 위한 무료로 나누어주는 유인물
- 라이브 인벤트나 전시, 이와 유사한 것에 이용
- 뉴스레터, 블루틴, 전자뉴스레터, 전자 블루틴에 이용
- 비영리 목적의 홍보 자료 - 인쇄 및 디지털
-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온라인상에서 디지털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보존목적
- 무대나 공연에서 이용
- 교육목적 이용-이러닝을 포함하여 교육, 훈련자료로 이용
- 학위논문에 이용
- 개인적 이용

3.3.4. 도서관 및 문화유산기관을 위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예외

문화유산기관을 위한 '특정의 허용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정'은 이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관, 고아저작물의 요건 및 그 지위의 종류, 허용가능한 저작물, 성실한 노력의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앞에서 기술한 이용허락 체제와 적용대상 기관, 적용되는 저작물 유형, 이용범위, 비용, 권리소유자 출현 후 조취, 허용기간, 요구조건 등이 다르다. 그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표 15>와 같다⁵⁵⁾.

54) IPO. 2015. Orphan Works Licensing Scheme Overview for Applicant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50649/Orphan_Works_Licensing_Scheme_Overview_for_Applicants.pdf> (2015.11.10. 방문)

55) Pedley, Paul. 2015. Practical Copyright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London: Facet publishing. p.136.

〈표 15〉 영국 저작권법상 고아저작물에 대한 예외규정과 라이선스 체제 비교

구분	저작권예외	라이선스
적용대상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 아카이브, 영화, 오디오 유산기관, 공영방송기관	저작물 이용을 원하는 모든 이용자
포함되는 저작물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 아카이브 장서에 있는 도서, - 저널, 신문, 잡지, 기타 저술 - 영화유산기관장서에 포함된 영화 및 오디오 저작물 - 2002년 12월 31년 이전에 공영방송기관에서 제작하여 그 기관 아카이브에 포함되어 있는 영화, 오디오, 시청각저작물 -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도 	모든 유형의 저작물
이용조건	비영리 목적의 이용	영리 또는 비영리적 이용 모두 포함
비용	없음	지원에 따른 수수료와 라이선스 비용
권리소유자 출현시	권리소유자가 해당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제공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동안 라이선스 지속됨 또는 라이선스에 지정된 고지기간 만료시까지 라이선스 지속됨. - 승인당국은 권리소유자에게 라이선스가 지불한 보상금액을 지불해야함.
허락이 지속되는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이 만료될 때까지 또는 - 권리소유자가 출현할 때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7년까지 - 잠재적으로 7년 더 갱신될 수 있음
이용범위	EU 회원국내	영국 내
요구조건	성실한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실한 검색 - 라이선스 갱신할 경우 성실한 검색 다시 수행

1) 적용기관 및 이용범위

기록관리기관, 도서관, 박물관, 교육기관, 공영방송국 등의 문화유산기관(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은 IPO에 라이선스를 지원하지 않고 고아저작물의 특정한 이용을 할 수 있다. CHI는 성실한 검색을 완료한 후에 고아저작물을 공중에게 접근시킬 수 있고, 디지털화, 보존, 목록이나 색인 목적을 위해 복제할 수 있다. '특정의 허용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규정'에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는 '적합한 기관(relevant body)'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1)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 교육시설 및 박물관
- (2) 기록관
- (3) 영화 또는 오디오 유산기관
- (4) 공영방송기관

단, 이러한 기관에서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공중에게 이용시키는 과정에서 수입이 발생하거나 공익목적과 무관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거나, 권리소유자가 나타나 CHI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거나, CHI가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면서 확인된 저자나 권리소유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고아저작물 요건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고아저작물'이란 권리소유자들에 대한 성실한 검색에도 불구하고,

- 저작물의 단독 권리소유자가 있을 경우 그 권리소유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찾지 못할 경우
- 저작물 권리소유자가 한명 이상일 경우 그 권리소유자 중 누구도 식별되지 않고 찾을 수 없는 경우
- 저작물의 권리소유자가 한명 이상일 경우 그 권리소유자 중 한명 혹은 그 이상이 식별되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다른 회원국에서 이미 고아저작물로 지정된 저작물도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고아저작물'에 포함된다.

3) 고아저작물 지위의 종료

고아저작물의 권리소유자가 그 권리 소유권에 대한 증명을 OHIM 또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성실한 검색을 처음으로 수행하여 고아저작물임을 확인한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고아저작물 지위를 종료시킬 수 있다. 또한 고아저작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해왔던 적합한 기관은 합리적인 기간 내에 권리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에 대한 산출방법과 더불어 그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즉, CHI는 앞으로 계속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사용해왔던 것에 대하여 보상해야한다. 만일 적합한 기관과 권리소유자가 보상액에 동의할 수 없다면 그 둘 중 한 측이 그 총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저작권심판소(Copyright Tribunal)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4) 이용가능한 저작물의 범위

CHI가 상당한 노력을 거친 후 이용할 수 있는 ‘적합한 저작물(relevant work)’이란 해당 기관의 장서에 포함되어 있는 다음 저작물이다.

- (a) 도서, 저널, 신문, 잡지, 기타 저술
- (b) 영상저작물, 시청각저작물, 음반
- (c) 2002년 12월 31일 혹은 그 이전에 공영방송기관에 의하여 생산되었거나 배타적 이용을 위하여 이 기관에 위탁된 영상저작물, 시청각저작물, 음반 그리고 이들 기관의 아카이브에 소장되어 있는 영상, 시청각, 음반저작물

공표된 저작물과 더불어 미공표저작물도 ‘적합한 저작물’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미공표저작물인 경우 권리소유자 동의하에 도서관에 소장된 미공표 저작물이 이용자에게 공개되고 있어야 하며 권리자의 특별한 반대가 예상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적합한 저작물’은 그것이 독립된 하나의 저작물이거나, 전체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것, 끼워 넣어져 있거나 병합되어 있는 저작물 모두 포함된다.

3.3.5. 성실한 노력의 요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적합한 기관은 해당 저작물이 고아저작물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실한 검색(diligent searches)을 수행하되, 해당 저작물 분야에 적합한 소스를 활용했음을 증명해야한다. 성실한 검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성실한 검색을 수행한 후, 이를 수행하였다는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성실한 검색결과, 해당 고아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 해당 고아저작물을 사용하고자하는 기관의 연락처 정보 등을 OHIM에 제출해야한다(제5조 (9)항).

- the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에서 관리하고 있는 적합한 데이터베이스들
- OHIM DB에서 사용하려는 저작물이 고아저작물이라는 기록이 없는 경우 <표 16>에 있는 분야별 소스를 검색해야한다.⁵⁶⁾

56) The Copyright and Rights in Performances(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Regulations, 2014, Part 2 Sources to be Searched during Diligent Search. <<http://www.legislation.gov.uk/ukdsi/2014/9780111117682>> <2015.11.1.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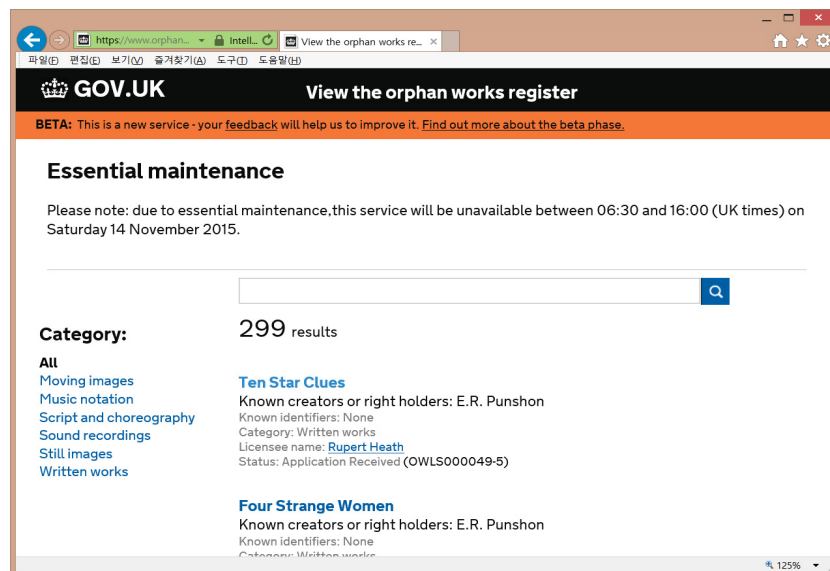
〈표 16〉 성실한 검색이 수행되어야 할 소스들

적합한 저작물의 범주	검색대상 DB
1. 공표된 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관과 다른 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납본, 도서관 목록, 권위 있는 파일들 ▪ 당해국에 있는 출판사와 저자 협회 ▪ 기존의 DB와 등록부, WATCH (Writers, Artists and their Copyright Holders), the ISBN (International Standard Book Number), 출판된 책들이 포함된 DB ▪ 복제권 단체를 포함하여 적합한 권리관리단체들의 DB ▪ VIAF (Virtual International Authority Files)와 ARROW (Accessible Registries of Rights Information and Orphan Works) DB..
2. 신문, 잡지, 저널, 정기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간행물의 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 도서관 장서의 색인과 목록 ▪ 납본 ▪ 당해국에 있는 출판사 협회, 저자와 저널리스트 협회 ▪ 복제권 단체를 포함하여 적합한 권리관리단체들의 DB
3. 도서, 저널, 신문, 잡지, 기타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순수예술,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건축, 현대저작물(latter works)의 스케치들, 기타 이와 유사한 저작물을 포함한 시각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의 1, 2에서 언급된 소스들 ▪ 복제권 단체를 포함하여 특히 시각예술을 위한 적합한 권리관리단체들의 DB ▪ 해당되는 경우 그림 에이전시들의 DB
4. 시청각저작물과 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본 ▪ 당해국의 제작자 협회 ▪ 영화나 오디오 문화유산 기관의 DB와 국립도서관 ▪ 적합한 표준과 식별자(시청각 자료 ISAN (International Standard Audiovisual Number), 음악자료 ISWC (International Standard Music Work Code), 음반 ISRC (International Standard Recording Code)) ▪ 특히 저자, 공연자, 음반 제작자, 시청각 제작자에 대해서는 권리관리단체들의 DB ▪ 해당 저작물의 포장에 나타나 있는 이름들(credits)이나 다른 정보들 ▪ 특정 범주의 권리소유자를 대표하는 적합한 단체들의 DB
5. 출판되지 않았거나 방송하지 않은 적합한 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판되지 않은 적합한 저작물에 적합한 앞의 1~4에 제시된 소스들

고아저작물 규정에 의하면 승인당국이 고아저작물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유지관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있다. 승인당국 IPO(Intellectual Property Office)는 이 레지스터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공개해야 한다. 관리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5조).

- 고아저작물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하여 성실한 검색을 수행한 후 지원을 한 고아저작물과 승인당국에 의하여 이미 고아저작물로 인정되었거나 검토 중인 고아저작물에 대한 세부사항
- 고아저작물 라이선스가 취득된 고아저작물에 대한 상세사항 및 승인내역
- 고아저작물 라이선스가 거부된 고아저작물에 대한 상세사항

아래 그림은 IPO⁵⁷⁾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아저작물 레지스터이다. 현재 시험버전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 11월 13일 현재 299개의 저작물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



[그림 24] IPO 레지스터 검색화면

57) <<https://www.orphanworkslicensing.service.gov.uk/view-register>>(2015.11.13.방문)

3.4. 프랑스

3.4.1. 고아저작물

프랑스는 2015년 2월 20일 지적재산권법전(CPI, 이하 '저작권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고아저작물지침(2012/28/EU)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프랑스저작권법 제113-10조는 고아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는데, 고아저작물이란 “보호받고 있으며 유포된 저작물로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찾고 이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의 신원 또는 연락처를 알아내지 못한 저작물”을 말한다.

공중에 공개된 도서관과 기록보존소 등(이하 '문화유산시설'이라 함)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즉, 공중의 구성원이 그 자신의 선택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아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디지털화, 이용에 제공, 인덱싱, 보존 또는 복원을 위하여 고아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프랑스저작권법 제135-2조). 문화유산시설은 그들의 문화적, 교육적 및 연구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으로만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수입을 얻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며, 그 수입은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이용제공에 직접 관련된 비용만을 충당하기 위한 정도이어야 한다(동조). 게다가 문화유산시설은 고아저작물의 이용 전에 권리자를 찾기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검색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각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조사하여야 할 적절한 정보원(출처)이 있다. 이러한 검색의 결과는 문화부장관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문화부장관은 이를 다시 OHIM에 보낸다(동법 제135-3조).

권리자가 출현하게 되면, 문화유산시설에 의한 이용은 중지되어야 하며, 그 권리자에게 그의 저작물의 이용으로 인하여 겪은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 135-6조).

3.4.2. 절판저작물

프랑스 저작권법은 절판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소장 자료 디지털화 사업에 큰 문제는 저작권이었다. 출간된 지 오래된 공유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거나 디지털자료로 서비스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없으나 최근의 저작물들은 저작자와 출판사간에 모두 디지털권리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약 50만 종의 도서가 20세기에 출간되었지만 디지털

화 되지 않았고 원저작자로부터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디지털서비스가 불가능하였다. 이렇게 저작권이 소멸된 공유저작물과 디지털 저작권이 있는 최근의 저작물 사이에 있는 방대한 양의 저작물들은 사용자의 이용가치가 높으므로 저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다수의 공중이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립도서관의 소장자료를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대중에게 서비스하고자 했던 프랑스 문화부와 국립도서관은 2012년 “20세기 절판된 책의 디지털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저작물에 대한 디지털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률은 문화·커뮤니케이션부, 투자위원회, 프랑스 출판협회, 프랑스저작자협회, 프랑스국립도서관 등 모든 당사자가 합의한 협약으로서 2012년 2월 23일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은 프랑스저작권법 제134-1조 이하에 신설되었다. 절판저작물이란 “2001년 1월 1일 전에 프랑스에서 발행되었으나 출판사가 더 이상 상업적으로 배포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고, 인쇄 또는 디지털 형태로 현재 출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동법 제134-1조). 20세기 절판된 책의 디지털 이용에 있어 저작권자와의 협상과 거래비용의 절약을 위해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xtended Collective License: ECL)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동법 134-3조에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화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디지털 형태의 복제권 및 배포권을 집중관리기구(Collective Management Society)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집중관리기구에서 관리되는 권리는 디지털 재생산 및 디지털자료의 대표를 위한 권리에 한정되는데, 이는 디지털화 및 전자책의 서비스를 위해 저자와 출판사간 모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재협상해야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디지털화 된 저작물(전자책)이 시장에 재등장하게 될 때 전자책 저작권에 대한 수익의 수집과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2012년 11월 22일 프랑스 정부는 “2013년도 미디어, 도서, 문화산업 관련 재정 법률안14”을 통과시켰다. 또한 ‘20세기 절판책의 디지털 이용’과 관련해서는 문화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저자와 출판사 동수의 대표가 참여하는 집중관리기구(SPRD: La société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La société organisme de gestion collective)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다. 프랑스 문화부의 SPRD은 2013년부터 가동되었으며, 문학, 음악, 미술, 공연 등 각 분야별 집중관리단체가 개별적으로 있고 이 중, 도서관 대출, 복제, 보상과 관련된 단체는 SOFIA(la Société Française des Intérêts des Auteurs de l’écrit, 대출징수권 단체)이다. 따라서 SOFIA에서 20세기 절판 책 디지털 이용에 관련된 저작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SOFIA는 6,000여 명의 작가와 200여 출판사와 연계되어 있고, 저자 대표(9인), 출판사 대표(9인) 동수로 대표단이 구성되며, 문예저작권단체(SGDL)의 대표와 출판협회(SNE) 대표도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다.

동법 134-2, 134-4, 134-7의 조항은 프랑스국립도서관이 저작권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모든 저작권자가 자유롭게 열람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권리자에 대한 최상의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게 광고하는 방법, 인도 조건, 집중관리기구의 철회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서비스하고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동법 134-4조에서는 저작권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자신들의 저작물이 공개(publication)된 이후 저작물 중 하나, 수개 또는 전부를 철회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저작권양도에 대하여 찬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저자는 그 이후라도 자기 작품이 디지털로 이용되어 명예에 훼손이 발생하고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저작물의 복제와 배포를 반대할 수 있다. 출판사가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2년 내에 스스로 책을 재출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중관리기구가 제3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비독점, 5년간, 갱신 가능)를 주며, 저작권 보유자는 자신의 몫을 지불 받게 된다.

6개월의 데이터베이스 열람기간을 거친 후에 SPRD는 최초로 종이책을 출판했던 출판사와 접촉하여 디지털 이용을 제안하며(10년 독점, 갱신가능 조건으로) 출판사는 2달 내에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저작물의 원(原) 출판사는 집중관리기구가 저작물의 디지털 이용을 위해 10년 간 갱신 가능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우선권’을 가지며 이 우선권의 사용으로 출판사는 실제로 책을 종이책이나 전자책으로 재출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출판사를 찾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저자가 합의하면 집중관리기구가 5년 동안 갱신가능하고 비독점적인 조건으로 제3자에게 책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며, 이때 저자는 수익의 50%를 배당 받게 된다.

3.5. 독일

3.5.1. 법정허락제도와 고아저작물의 취급

과거 독일 저작권법상에서는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법정허락제도가 없었다. 다만, 2010년경부터 고아저작물의 적절한 이용과 관련하여 법개정 논의가 일고 있었다. 독일과 유럽에서 고아저작물에 관한 논의는 주로 기존의 저작물들 중 오래된 것으로서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이를 디지털화하여(복제권)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전송권 내지 이용제공권) 것과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었다.

저작물을 디지털화하고 인터넷상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복제권(독일 저작권법 제16조)과 이용제공권(동법 제19조의a)(우리법상 전송권)에 대한 허락을 얻어야 한다. 이는 고아저작물 또는 절판저작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독일 저작권법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 제50조와 유사한, 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독일에서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이 없었던 이유는, 우선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어서 이용하여야 한다는 저작권보호의식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저작권집중 관리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자 불명인 저작물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또는 상속인 등의 승계인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디지털화와 이용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권리자를 찾을 수 없을 때에는 결국 어느 누구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현재 독일 내의 전체 저작물 중 약 5%~40% 정도가 고아저작물이라고 하며, 특히 사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90% 정도까지 된다고 한다.⁵⁸⁾ 다른 자료에 의하면, 독일국립도서관(DNB)의 소장자료 중 고아저작물의 수는 책이 585,000권, 음반은 138,000개, 영화는 49,64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대략 80~90만개에 달한다고 한다.⁵⁹⁾

문화유산, 특히 기록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고, 중요한 문화정책적 과제이기도 하다. 도서관, 특히 유럽의 디지털도서관인 ‘유로피아나(Europeana)’⁶⁰⁾의 일부로서 ‘독일 디지털 도서관(Deutsche Digitale Bibliothek(DDB))’⁶¹⁾

58) BT-Drucks. 17/3991, S. 3.

59) BT-Drucks. 17/13423, S. 13.

60) 유럽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공중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디지털 도서관. 2005년 4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폴란드 및 헝가리의 대통령 또는 수상들이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에 가상의 유럽 도서관을 창설할 것을 권유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 촉매가 되어 설립되었다. 2008년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

권리자 대표, 기록보존소 대표, 방송사 대표, 산업계의 대표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아저작물과 절판저작물의 취급과 관련하여 현재 매우 큰 법적 불안정의 상황에 처해 있다.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고아저작물을 비영리적 내지 영리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독일의 각 정당에서는 각자 법개정안을 제출하였다.

고아저작물에 관한 지침의 제정 등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움직임에 대비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독일 디지털 도서관(DDB)' 계획의 실행을 촉진하고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하루 속히 고아저작물에 관한 입법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합리적이라는 판단하에 개정안을 제출하였다.⁶²⁾

3.5.2. 법개정안

먼저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2010년 11월 30일 저작권신탁관리(Urheberrechtswahrnehmungsgesetz(UrhWG)) 개정안을 제출하였다.⁶³⁾ 개정안은 저작권신탁관리법에 제13조의d와 제13조의e를 신설하는 것이었는데, 각각 '절판저작물(vergriffene Werke)'과 '고아저작물(verwaiste Werke)'에 관한 것이었다. 개정안은 절판저작물과 고아저작물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절판저작물은 더 이상 재고가 없는 것이고, 고아저작물은 보호받는 저작물이긴 하지만, 그 권리자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저작물을 말한다. 고아저작물은 보통의 경우 절판저작물에 해당할 것이지만, 거꾸로 절판저작물이 반드시 고아저작물에 해당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즉, 절판저작물의 권리자가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다.

이어 독일 좌파당(DIE LINKE)은 2011년 2월 8일 독일 저작권법에 제52조의c를 신설하여 고아저작물에 관한 새로운 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하였다.⁶⁴⁾ 위 개정안은 '기록된 표준조사(dokumentierte Standardsuche)'를 하였으나 권리자를 찾지 못한 경우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표준'이란 전술한 '성실한(sorgfältig)'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인 것이고, 이는 권리자를 찾기 위한 노력과 주의의 정도를 너무 높게 책정

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유럽 디지털 도서관 네트워크(European Digital Library Network)'로 출발하였고, 2009년 2월부터 '유로피아나(Europeana)'라는 이름하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ttp://www.europeana.eu/portal/>> (2015.11.25. 방문).

61) 2009년 12월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체결된 협정(Verwaltungs- und Finanzabkommen zur Errichtung und zum Betrieb der DDB)에 따라 설치된 가상도서관으로 2012년 가을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자세한 것은 <<http://www.deutsche-digitale-bibliothek.de/>> 참조 (2015.11.25. 방문).

62) A.a.O., S. 3.

63) BT-Drucks. 17/3991.

64) BT-Drucks. 17/4661.

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독일 녹색당(BÜNDNIS 90/DIE GRÜNEN)도 2011년 2월 9일 독일연방정부에 대하여 고아저작물에 관한 입법적 조치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동 제안은 법률안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법률안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모두 담고 있었다. 그 주요 내용은 고아저작물의 전자적 복제와 비상업적 전송을 위해서 저작권법에 새로운 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⁶⁵⁾

3.5.3. 2013년 저작권법 개정

독일은 2013년 10월 1일 「고아 및 절판저작물의 이용과 저작권법의 다른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Nutzung verwaister und vergriffener Werke und einer weiteren Änderung des Urheberrechtsgesetzes)⁶⁶⁾에 의하여 유럽연합의 고아저작물지침(2012/28/EU)을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고아저작물지침 제6조 제1항은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각 회원국이 정보사회지침(2001/29/EC)⁶⁷⁾ 제2조와 제3조에 규정된 복제권과 이용제공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을 도입할 것을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독일은 저작권법 제61조 이하에 새로운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르면, 저작자 내지 권리자가 ‘성실한 조사’(sorgfältige Suche)를 한 후에도 확인되지 않거나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고아저작물은 복제되거나 공중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 권리자를 찾기 위한 ‘성실한 조사’에 대한 요건은 제61a조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적어도 제61a조의 부록에 열거된 정보원(情報源) 내지 출처는 찾아보아야 한다. 조사의 결과는 독일특허상표청(DPMA)에 기록되어야 한다(독일저작권법 제61a조 제4항).

독일 저작권법 제61a조의 부록은 권리자를 검색하여야 할 출처를 책, 신문, 시각저작물, 영화, 미공표 저작물 등 5개의 분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체로 고아저작물의 그것과 일치한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65) 각 개정안의 내용과 평가에 대해 자세한 것은 안효질, “독일 및 유럽연합에서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관한 입법 동향”, 『안암법학』, 제39호(2012.9), 39, 43 이하 참조.

66) BGBl I, S. 3728, 2014년 1월 1일 시행. 동 법률에 의하여 절판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권신탁관리법 제13d조와 제13e조가 신설되었고, 학술논문 저작자에게 이른바 ‘2차공표권’(Zweitveröffentlichungsrecht)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항이 저작권법 제38조 제4항에 신설되었다.

67) 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J L 167, 22.6.2001, p.10.

- (i) 공표된 책의 경우 (a)독일 국립도서관 목록, (b)출판자협회와 저작자협회 정보(특히 VLB), (c)현존 DB나 목록, WATCH, ISBN, (d)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DB(특히 VG의 DB).
- (ii) 신문, 잡지, 전문잡지와 정기간행물의 경우 (a)ISSN, (b)도서관 색인과 목록, 특히 독일국립도서관의 목록, 정기간행물DB(ZDB), (c)법률상 납본, (d)출판자협회·저작자 및 저널리스트협회, 특히 VLZ·VLB 등의 목록, (e)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DB.
- (iii) 미술, 사진, 일러스트레이션, 디자인 및 건축저작물과 그것들의 초안(설계도)과 기타 이러한 종류의 저작물로서 책, 잡지, 신문 또는 다른 저작물에 포함된 것의 경우 (a)위 (i)과 (ii)에서 언급한 출처들, (b)저작권집중관리단체(특히 VG Bildkunst)의 DB, (c)사진 에이전시의 DB.
- (iv) 영화, 영화가 수록된 녹화매체와 녹화·녹음매체, 녹음매체(음반)의 경우 (a)법률상 납본, (b)제작자협회의 정보, (c)연방과 주의 영화진흥기관의 정보, (d)영화 및 음 유산보존기관과의 DB, (e)ISAN, ISWC, ISRC, (f)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DB, (g)포장의 크레딧 또는 크레딧 화면에 나타나는 참여자들의 정보, (h)관련 권리자단체의 DB.
- (v) 미공표된 소장물의 경우 (a)저작물(원본 또는 복제본을 의미함)의 현재 또는 원래 소유자, (b)국립 유산목록, (c)국립기록보존소의 목록, (d)박물관의 목록, (e)정보자료와 전화번호부.

제61조에 따라 허용되는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과거 제출되었던 개정안들이 대부분 이용에 대해 보상금을 징수하여 이를 신탁관리단체를 통해서 저작자에게 지급하도록 제안하였으나, 개정법은 고아저작물지침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취지에서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하였다. 그러나 추후 권리자가 확인되거나 그 소재가 파악된 경우에는 제61b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이용을 중지하여야 하며(동 제1문), 이미 발생한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 제2문).

제61c조는 고아저작물지침 제1조 제2항 (c)호에 따라 공법상의 방송사에 소장된 매체의 자유 이용과 관련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즉,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위 방송사에서 제작되고 소장하고 있는, 영화저작물, 영화저작물이 수록된 녹화매체와 녹화 및 녹음매체(음반)도 제61조 제2항 내지 제5항까지의 조건하에 위 방송사에서 복제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신설된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은 유럽연합의 영토 내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3국에서 최초로 공표된 저작물은 고아저작물지침이든 독일 개정저작권법이든 적용되지 않는다.

제61조에 따라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특혜를 받는 문화기관은 해당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용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⁶⁸⁾

68) BT-Drucks. 17/13423, S. 13.

3.6. 헝가리

3.6.1. 2008년 개정 저작권법

1) 서

2008년 12월 28일 개정되고,⁶⁹⁾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은 2009년 2월 1일 시행되었다. 동 개정법은 제57/A조를 신설하였다. 동 규정은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자를 찾기 위하여 그 저작물의 성질과 이용방법을 고려하여 정당화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를 찾을 수 없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물의 종류를 불문하고 있다.

헝가리 특허청(HPO)은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비배타적인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라이선스는 5년 동안 유효하다. 이 라이선스는 서브 라이선스(재이용허락)를 부여할 수 없으며, 2차적저작물작성권에도 미치지 않는다. 이른바 ‘라이선싱 모델’(licensing model)에 의하여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2008년 개정 헝가리 저작권법에 따른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제도의 본질적인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⁷⁰⁾

- (i) 이용권은 헝가리 특허청에 의해서 부여된다.
- (ii) 이용권은 잠재적인 이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여되며, 이용권은 제한된 기간과 장소적 범위(헝가리 영토) 내에서만 유효하며, 비배타적이고 양도 불가능하다.
- (iii) 이용자는 저작자를 찾기 위하여 저작물의 종류와 이용의 방법을 고려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그에게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 (iv) 신청자는 행정절차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v)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관리권한범위 내에 속하는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이용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 (vi) 신청자는 이용권의 부여시에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69) Act LXXVI of 1999 on Copyright, <http://www.sztnh.gov.hu/en/English/jogforras/hungarian_copyright_act.pdf> (2015. 12. 10. 방문).

70) 이하 Klaudia Franciska Fodor, Verwaiste Werke im ungarischen Urheberrecht, MR-Int 2010, 25 이하 참조.

2008년 개정법은 고아저작물에 관하여 저작권법에 하나의 절(節)을 신설하였고, 정부의 시행령(후술하는 ‘2014년 시행령’과 비교하여 이를 ‘2009년 시행령’이라 함)⁷¹⁾에서 이용권을 부여하는 절차, 이용기간, 수수료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⁷²⁾ 시행령에 따르면, 고아저작물에 관한 규정은 ‘고아실연’, 즉 실연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준용된다(제57/A조 제8항, 시행령 제1조 제2항). 이용허락절차는 관청의 승인절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그 시행령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으로서 적용된다.

2) 2008년 강제허락제도의 내용

(1) 이용권 부여 기관

헝가리 특허청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정부기관으로서 법령에 따라 특허권 등의 산업재산권 이외에 저작권법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이에 근거하여 헝가리 특허청은 고아저작물에 관한 법률상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권리자를 대신하여 이용권을 부여한다.

(2) 이용허락의 신청과 이용권의 내용

이용허락신청시 신청자는 저작물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성명도 이에 포함된다. 해당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 경우에는, 저작자는 모든 저작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하거나 공동저작자들 중 알려진 저작자들과 체결한 이용허락계약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용허락이 흡결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용허락신청을 하는 것이다.

통상적인 계약상의 이용허락과는 달리 이용권의 범위와 기간 등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특허청)에 의하여 정해진다. 이용권은 최대 5년 동안, 헝가리 영토에 대해서만 부여된다. 이용자는 비배타적, 양도 불가능의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며, 재이용허락과 저작물의 개작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헝가리 특허청은 위 라이선스를 부여할 때에, 이용의 성질과 범위(예상 가능한 이익을 포함)를 고려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자에 대하여 보상금의 액수를 결정한다. 헝가리법에 따른 고아저작물의 이용권은 권리자의 동의 없이, 특허청에 의해서 부여되는 것이므로 본질상 강제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⁷³⁾

71) Decree 100/2009. (V. 8.) Korm. of the Government on the detailed rules related to the licensing of certain use of orphan works, <http://www.sztnh.gov.hu/en/English/jogforras/100_2009.pdf> (2015. 12. 10. 방문).

72) 헝가리 저작권법 제112조 제4항은 정부로 하여금 고아저작물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3) 저작자 또는 그 승계인을 찾을 수 없다는 증명(성실한 검색)

신청자는 저작자 또는 그의 승계인(즉, 권리소유자)를 찾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이고 기대 가능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시행령은 이러한 조치의 최소한의 기준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동 제3조).

- (i) 접근 가능한 DB의 검색: 헝가리 특허청과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자들이 신고한 저작물들이 포함된 저작물목록을 비치·관리한다. 또한 집중관리단체는 저작물의 실제 이용 및 보상금의 분배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갖고 있다. 집중관리단체는 저작자의 승계인과 실연자의 성명목록도 갖고 있다. 이용허락신청자는 인터넷과 온라인 DB를 통해서 가능한 한 철저히 저작자를 검색해야 한다. 저작물은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의 목록과 같은 공익적인 DB에서도 검색이 가능하기도 하다. 신청자는 출판사 또는 저작물의 공표와 관련된 다른 기관의 목록을 검색하여야 한다. 헝가리 국민의 개인정보와 주소와 관련된 공적 목록도 검색하여야 한다.
- (ii) 신청자는 또한 해당 저작물의 다른 이용자 또는 그 저작물의 다른 저작자에게도 문의하여 저작자를 찾아야 한다.
- (iii) 신청자는 전국적인 신문에 이용 의도를 공지하여야 한다.
- (iv) 만일 해당 저작물이 헝가리 외의 지역에서 최초로 공표된 경우에는, 그 최초 공표국가에서 전술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것이 불합리하게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컨대 저작자는 저작자를 찾기 위하여 광범위한 조사활동을 하여야 하며, 그에 수반되는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모든 조사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를 찾지 못하였다는 점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4) 행정절차 수수료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수수료는 특허청에 귀속된다. 이 수수료는 이용허락신청의 조사, 고아저작물의 목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수수료의 금액은 이용허락신청시 기재된 이용목적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다. 영리목적의 이용의 경우에는 수수료는 102,500 HUF(한화 약 417,000원)에 달하고, 전자적 양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92,500 HUF(한화 약 376,000원)에 달한다.

직·간접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할인되어 40,000 HUF

73) Klaudia Franciska Fodor, MR-Int 2010. Verwaiste Werke im ungarischen Urheberrecht, pp.25-26.

(한화 약162,000원)에 달하고, 전자적 양식을 사용할 경우에는 30,000 HUF(한화 약 122,000 원)에 달한다(이상 시행령 제4조 제1-4항).

이외의 수수료에 대한 할인 또는 환불은 없다. 위 수수료는 행정서비스에 대해 납부하는 수수료이므로 저작물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저작물마다 이용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저작자의 동일한 종류의 저작물을 동일하게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저작물을 한번에 이용신청할 수 있다. 어쨌든 이용허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수수료로서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용의 종류와 방법

신청자는 신청시에 의도하고 있는 이용의 종류와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용허락신청 양식에는 ‘복제’, ‘발행’, ‘공연’, ‘방송 또는 기타의 공중전달’, ‘원래 방송사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재전송(유선방송사업자)’, ‘전시’, ‘기타’ 등이 표시되어 있다.

헝가리 저작권법상으로는 이른바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제도가 있다. 따라서 법률상 규정된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이용권은 권리자가 직접 행사하지 않고, 그 권리자가 집중관리단체의 구성원인지 여부 또는 그 저작물이 신고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집중관리단체가 행사하게 된다(동법 제87조 제1항 참조).⁷⁴⁾ 이 경우 저작자가 불명인 저작물도 해당 집중관리단체가 저작자 대신에 이용허락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작물은 사실상 ‘고아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헝가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은 실제로는 이용허락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⁷⁵⁾ 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서만 고아 상태에 빠진다는 결론이 된다.⁷⁶⁾

헝가리 저작권법상 집중관리단체에 의해서만 권리행사가 허용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⁷⁷⁾

74) 저작자가 해당 집중관리단체에 서면으로 반대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확대된 집중관리는 기능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작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집중관리단체가 그 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하는 것(강제적 집중관리, compulsory collective rights management. 이는 예컨대 우리 저작권법상 방송보상금을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수령하는 것과 유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을 반대할 수 없다(동법 제87조 제3항 참조).

75) 이는 그 저작물이 저작자가 신탁관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반대한 저작물에 해당하거나, 그 저작물이 신탁관리의 대상에는 포함되나 특정 권리를 신탁관리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6) Klaudia Franciska Fodor, MR-Int 2010, Verwaiste Werke im ungarischen Urheberrecht, p. 25, 27. 2008년 개정된 헝가리 저작권법은 행정기관에 의한 이용허락에 의하여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ECL)를 적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이용허락신청자가 ‘성실한 검색’(diligent search)을 수행한 후 해당 집중관리단체로서 이용허락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이용권은 (법률상의 권리자로부터 계약에 따라 부여받은 것이므로) 그 이용자에게 보다 큰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는 다른 시장참여자의 입장에서도 거래안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ECL을 고아저작물과 출판저작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견해는 이미 2009년 10월 22일의 유럽연합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다. Creative Content in a European Digital Single Market: Challenges for the Future. A Reflection Document, 5.1. Consumer access, p.14, <http://ec.europa.eu/archives/information_society/avpolicypolicy/docs/other_actions/col_2009/reflection_paper.pdf> (2015. 12. 10. 방문).

77) Péter Mezei, IIC 2014, The New Orphan Works Regulation of Hungary, p. 940, 943.

- (i) 강제녹음허락(compulsory mechanical license)⁷⁸⁾(제19조)
- (ii) 사적복제 보상금의 징수(제20조-제21조)
- (iii) 영화저작물과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대여권(제23조 제6항)
- (iv) 영화저작물과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공공대출권(제23조 제3항)
- (v) 어문저작물과 악보의 공공대출권(제23/A조)
- (vi) 공표된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제25조 제1항과 제3항)
- (vii) 송신, 방송, 재방송을 가능하게 하는 복제(제26조 제6항과 제7항, 제27조 제1항과 제2항)
- (viii) 공표된 음반의 공중전달(이용제공 포함)(제26조 제8항, 제27조 제3항)
- (ix) 제작자에 의한 시청각저작물의 복제와 그 후의 이용에 대한 보상청구권(제66조 제3항)⁷⁹⁾
- (x) 추급권(제70조)

위 각 경우에는 그 권리 내지 보상청구권을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고, 집중관리단체는 비회원인 권리자를 위해서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고아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그러나 고아저작물 이용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도서관에서 그 소장 도서를 디지털복제하고 전송하는 것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57/A조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도 이용허락이 집중관리단체의 권한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고아저작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제57/A조 제6항). 따라서 저작권집중관리기관이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거나 강제허락 또는 확대된 집중관리에 기초하여 고아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징수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전술한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위 기관의 분배규칙이 저작권자의 신원과 연락처가 파악된 후 그가 어떻게 보상금을 청구하는지는 규율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헝가리 저작권법상으로는, 적어도 확대된 집중관리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한, 특허청에 의한 강제허락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78) 이는 '강제 기계적 이용허락'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음악저작물의 저작자(작곡가와 작사가)의 허락을 얻어 복제된 음악저작물을 다시 복제하고 배포하는 권리는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그 집중관리단체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와 이용(녹음)허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상금을 징수·분배하여야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79) 제66조 제3항의 법문상으로는 이 경우 저작자의 보상청구권을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행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관행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6) 보상금

특허청은 재량으로 이용신청에 대해 공탁하여야 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한다. 보상금의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용 기간, 이용 방법, 저작물의 종류와 개수 등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각각의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고 최종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용이 직·간접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은 실제 이용행위 전에 특허청에 공탁하여야 한다(제57/A조 제2항 제2문). 즉, 보상금의 공탁은 이용개시의 전제조건이다. 만일 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한 보상금의 액수를 이용행위 전에 공탁하지 않고 이용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기간 동안 관리자가 알려진 때에는 이용자는 그에게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조항 제1문). 이용기간의 경과 후 5년 이내에는 나중에 출현한 관리자가 특허청(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또는 이용자로부터 직접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제57/A조 제5항 제1문). 5년 경과 후에는 특허청은 해당 종류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관계 있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공탁된 보상금을 이전한다. 만일 그러한 집중관리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은 '국가문화기금'(National Cultural Fund(NCF))에 귀속된다(동조항 제2-3문). 위 기금은 이렇게 이전된 보상금을 문화재를 일반공중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동조항 제5문).

저작자가 특허청에서 정한 보상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는 그 금액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57/A조 제6항).

(7) 특허청에서의 절차(신청, 신청의 거절, 이용권의 철회)

이용허락신청은 한 개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저작물로서 동일한 종류의 다수의 저작물을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 저작물에 대해 하나의 신청으로 할 수 있다(시행령 제2조 제5항).

특허청은 우선 수수료의 납부 여부, 신청 양식의 준수 여부 등 형식적인 규정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한다. 이어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여 이용자가 성실한 검색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와 저작자 또는 그 승계인이 실제로 불명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청은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가 그 오류를 시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허락신청을 거절한다(시행령 제5조). 특허청은 '성실한 검색'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량으로 그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용기간 동안에 권리자가 출현한 경우에는, 특허청은 이용자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권을 철회하며, 이 경우 10,500 HUF(한화 약 42,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 제5항). 이용권이 철회되었다 하더라도,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즉, 이용자는 권리자가 출현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존의 이용범위 내에서 그 이용을 계속할 수 있다(제57/A조 제3항). 그러나 위 추가 기간보다 특허청에 의해 부여된 이용권이 먼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권리자가 출현한 때에 이용자가 아직 이용을 개시하지는 않았으나 진지하게 그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 이용자는 1년 동안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제57/A조 제4항).

특허청의 결정은 행정절차상으로 취소될 수 없으며, 오직 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다. 검사(檢事)도 특허청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제57/B조 제1항-제2항 참조).

헝가리 특허청은 고아저작물의 등록부를 관리하며, 이를 공중이 전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부는 우선 크게 신청 번호, 저작물의 서지정보, 부여된 이용권에 대한 정보로 나뉘어 있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신청번호, 승인번호, 고아저작물의 제목, 저작자, 절차개시일(이용권의 개시일로 추측됨), 이용자(신청자), 그 대표자, 저작물의 장르, 저작물의 매개체(음반, 종이인쇄물 등), 부여된 이용권(복제, 배포 등), 이용권의 기간, 이용권의 범위(복제물의 개수를 의미함), 보상금의 액수, 보상금의 공탁일, 이용권의 철회 여부, 해당 저작물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시행령 제8조).⁸⁰⁾

3) 평가

2008년 헝가리 저작권법이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정부기관에 의한 이용허락’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다만 고아저작물을 적은 비용으로 적법하게 이용하게 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복잡하고 고비용이 소요되는 절차가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밖에 헝가리 모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 아래와 같다.⁸¹⁾

(i) 우선 이용권은 헝가리 영토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온라인 이용의 경우 국경의 제한이라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ii) 특허청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서만 고아저작물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특허청은 자체적으로 고아저작물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오로지 그 이용허락 신청이 법령상 정해진 요건

80) 이는 시행령과 실제 헝가리 특허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아저작물의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참고한 것이다. 고아저작물 목록은 <<http://www.sztnh.gov.hu/hu/szakmai-oldalak/szerzoi-jog/mivel-fordulhat-hozzanak/arva-mu/arva-muvek-nyilvantartasa>> (2015. 12. 10. 방문) 참조.

81) Klaudia Franciska Fodor, MR-Int 2010. Verwaiste Werke im ungarischen Urheberrecht, p. 25, 28 참조.

을 충족하는지 여부만을 심사한다. 인터넷 검색 등 별도의 기술적인 도움을 받거나 고도의 법률적인 평가를 하지도 않는다. 또한 특허청은 고아저작물 목록을 비치·관리하고, 이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다. 위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절차를 위해 상당한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영리목적 이용자의 경우 행정 수수료뿐만 아니라 보상금도 미리 공탁하여야 한다. 게다가 보상금은 저작물을 이용한 사업의 성패와는 관계없이 사전에 공탁하여야 한다. 비영리 목적의 이용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각 저작물마다 행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헝가리식의 강제허락 방식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⁸²⁾ 특히 ‘대량 디지털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이상적인 방식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⁸³⁾

(iii) 헝가리 저작권법은 이미 이른바 ‘LAMs’(libraries, archives, and museums) 기관이 저작물을 공익(즉,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⁸⁴⁾ 2008년 개정법에 의해 도입된 강제허락제도는 이러한 공익 기관만을 수혜자로 하지는 않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한편, 시행령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따라 차등화된 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 이용자는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지 알기 전에 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주 많은 이익을 올리거나 일상적인(적은) 이익을 올리거나 구분하지 않고 정액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우선 수수료 자체가 고액인 것도 문제이고, 영리목적 이용의 경우에도 향후 창출되는 이익의 크기를 고려하지 않고, 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⁸⁵⁾ 고액의 수수료는 비영리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영리목적의 이용자라 하더라도 그 이익액이 크지 않은 경우 선뜻 강제허락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v) 이용허락신청과 그 수수료의 징수는 하나의 저작물 내지 하나의 저작자에 대해서 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이거나 이용자가 다수의 고아저작물에 대해 이용허락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 별개의 신청을 하고 수수료도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어떤 한(신원은 알려졌으나 그 연락처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저작자의 동일한 종류의 저작물을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이용허락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시

82) Péter Mezei, IIC 2014, The New Orphan Works Regulation of Hungary, p. 940, 944.

83) Mihály Ficsor, How to deal with orphan works in the digital world? An introduction to the new Hungarian legislation on orphan works, Directorate General for Internal Policies, Policy Department C: Citizens' Rights and Constitutional Affairs, Legal Affairs, p.25. <<http://www.europarl.europa.eu/document/activities/cont/200911/20091113AT64507/20091113ATT64507EN.pdf>> (2015. 12. 10. 방문).

84) 헝가리 저작권법은 공공도서관, 기록보존소, 박물관과 학교 등의 기관에 대해서는 학문연구 또는 기록보존의 목적을 위하여 모든 저작물을 복제(디지털 형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그 복제물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배포될 수 있고, 그 저작물은 위 기관들 내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서만 이용될 수 있다.

85)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컨대 집중관리단체를 통해 저작물이 이용되는 경우, 집중관리단체는 그 저작권사용료의 금액의 일정한 비율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행령 제2조 제5항). 예컨대 사진저작물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 저작자들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수의 이용허락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헝가리 저작권법은 이러한 복수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할인이 없다. 수수료의 반환도 없다. 따라서 신청자가 예컨대 여러 개의 사진저작물이 모두 동일한 저작자의 것이라는 점을 증명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v) 특허청에서는 고아저작물 목록을 비치·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추후 이용자가 그 DB에 등록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헝가리 저작권법은 추후 이용자가 위 DB에 등록된 저작물의 저작자를 찾기 위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고아저작물 DB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다시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고아저작물 DB의 현실적 기능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vi) 이용자는 고아저작물의 이용이 비영리 목적인 경우 보상금을 공탁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그 이용허락기간이 끝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보상금 지급의무가 없게 된다. 반면, 영리목적의 이용자는 저작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비교적 고액의 행정수수료를 납부한 후에도, 여전히 특허청에 보상금을 별도로 공탁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용허락기간 동안 저작자가 출현한 경우에는 그 이용권이 철회될 위험도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그 저작자와 계약에 의하여 그 이용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률상 1년 동안 추가이용기간이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특히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영리목적 이용자의 경우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vii) 영리목적 이용의 경우 보상금은 사전에 특허청에 공탁되어야 한다. 비영리 목적의 경우 향후 출현한 저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청에서 정한 보상금의 액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소하여 법원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이용자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조사비용을 지출하였고, 고액의 수수료도 납부하였다. 이용자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는 없다. 이용기간도 5년으로 짧고, 도중에 저작자가 출현할 경우 이용권이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

고아저작물 이용자의 입장이라면, 저작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만일 찾지 못하였다면, 특허청에 이용허락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그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고, 추후 권리자가 출현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저작권사용료 내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거나, 만일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에 의해서 정해지는 금액을 지급하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통상 사용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하게 될 것이다. 고아저작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법률상의 강제허락제도를 이용하든, 아니면 우선 이용한 후 추후 출현하는 저작자에게 저작권사용료 내지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든 결과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불법이용이라는

위험은 있을 수 있으나, 오히려 고액의 행정수수료를 절약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2008년 헝가리식 모델은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제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⁸⁶⁾

(viii) 개작권의 배제

2008년 개정법이 개작권(우리법상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아마도 저작자의 인격권, 특히 동일성유지권의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부득이한 경우 저작권이 제한될 수는 있으나, 이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적인 측면에 국한하며, 저작인격권은 제한받지 않는다. 우리 저작권법 제38조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고아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예컨대 소설을 영화화하는 것처럼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여 이용할 필요성을 느낄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즉, 문화유산으로서의 고아저작물의 보존 이외에 고아저작물을 활용한 ‘저작권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개작권의 부여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신청인이 저작자의 인격권을 존중할 것을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권 부여기관인 특허청이 재량으로 개작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만일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이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인격권 침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⁸⁷⁾

4) 시행결과

2008년 개정법은 2009년 2월 1일 시행되었는데, 2015년 10월 19일까지 약 6년 10개월 동안 9명의 신청인에 대하여 50건의 이용권 부여(승인)가 있었다.⁸⁸⁾ 총 82개의 신청(82개의 저작물 또는 음반)에 대한 것이었다.⁸⁹⁾ 23건의 승인은 비영리 이용자가 한 것이고,⁹⁰⁾ 27건의 승인은 영리 이용자가 한 것이다. 7건을 제외하곤 비영리 신청자는 모두 ‘John von Neumann Digital Library and Multimedia Centre’⁹¹⁾이고,⁹²⁾ 영리 신청 중 21건은 헝가리 관보(Official

86) 같은 취지로 Klaudia Franciska Fodor, MR-Int 2010, Verwaiste Werke im ungarischen Urheberrecht, p. 25, 29 참조.

87) Péter Mezei, IIC 2014, The New Orphan Works Regulation of Hungary, p. 940, 944-5.

88) 이하는 2015년 10월 19일 헝가리 특허청에서 공표한 고아저작물 목록을 분석한 것을 근거로 하였다. 고아저작물 목록은 <<http://www.sztnh.gov.hu/hu/szakmai-oldalak/szerzoi-jog/mivel-fordulhat-hozzank/arva-mu/arva-muvek-nyilvantartasa>> (2015. 12. 10. 방문) 참조.

89)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로서 서로 다른 저작물에 대한 각각의 이용허락신청을 한꺼번에 1건으로 승인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건수와 승인건수가 다르다. 예컨대 승인번호 20번은 31개의 이용허락신청(저작물)에 대해 승인한 경우인데, 보상은 각 신청마다 별개로 정하고 있다.

90) 비영리 신청 중 마지막 4건은 2015년 10월 19일 공표된 고아저작물 목록상으로는 아직 보상이 공탁되지 않은 상태여서 비영리로 분류하였다. 동 목록을 분석하여 보면, 보상은 절차개시 후 곧 공탁되는 경우도 있고, 절차개시일로부터 약 2~3개월 후 늦게 공탁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위 4건은 영리신청자인 헝가리 관보 출판사가 신청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후 영리 신청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이를 고려하여 다시 계산하면, 19건의 신청은 비영리이고, 31건의 신청은 영리인 셈이다.

91) Neumann János Digitális Könyvtár és Multimédia Központ Nonprofit Kft. 1997년 헝가리 문화부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헝가리 문화유산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Journal of Hungary, Magyar Közlöny Lap- és Könykiadó)의 출판사가 신청한 것이다.⁹³⁾ 결국 국립 디지털 도서관이나 관보 출판사가 거의 대부분을 신청한 것이다. 복제물의 개수는 도서관이 신청한 비영리 목적의 복제의 경우 1개이고, 영리 목적의 복제와 배포의 경우 복제물은 500개~20,000개에 달하였다. 신청된 이용권은 모두 최대 기간, 즉 5년 동안 부여되었다.

비영리 목적의 복제에 대해 특허청이 정한 보상금의 금액은 1,750 HUF~5,500 HUF(한화 약 7,200원~22,600원)에 달하였다. 비영리 복제와 배포에 대해서는 40,000 HUF~80,000 HUF(한화 약 164,400원~328,800원)에 달하였다.

영리목적의 복제와 배포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보통 10,000 HUF~20,000 HUF(한화 약 41,100원~82,200원)에 달하였고, 몇몇 사례의 경우 보상금이 150,000 HUF~700,000 HUF(한화 약 616,500원~2,877,000원)에 달하기도 하였다.

2013년말 까지(시행후 약 4년 10월 동안) 특허청에 공탁된 보상금의 총액은 2,000,000 HUF(한화 8,220,000원)를 넘지 않았다. 특허청에 의한 이용권 부여 후 권리자가 출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⁹⁴⁾

시행기간이 아직 짧기 때문에 2008년 개정법에 의한 고아저작물의 이용의 성패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고아저작물의 수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건수가 많지 않음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비단 헝가리의 경우에만 그러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유형의 강제허락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도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⁹⁵⁾

일본 저작권법은 1970년 이후 저작자불명 등의 경우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정제도'를 시행하였는데, 2015년 3월 4일까지 211건의 재정(저작물의 수는 22만개 이상)⁹⁶⁾이 있었다. 1993년까지는 총 재정건수가 20건, 25개 저작물에 대한 재정이 있었다. 그러다 1999년부터 재정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09년에는 15건,

92) 바로 앞의 각주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마지막 4건을 영리 신청으로 분류하면,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도서관에서 신청한 것이다.

93) 마지막 4건을 영리 신청으로 분류하면, 총 31건의 영리 신청 중 25건을 헝가리 관보 출판사가 신청한 셈이다.

94) 이상 보상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Péter Mezei, IIC 2014, The New Orphan Works Regulation of Hungary, p. 940, 945. 와 2015년 10월 19일 공표된 고아저작물 목록을 참고하였다.

95) 이에 대해서는 Katharina de la Durantaye, "Orphanworks: A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in Daniel J. Gervais(E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Edward Elgar Publishing, 2015, p 190, pp.195-196 참조.

96) 1건의 재정에 의한 이용허락에 의해 다수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수는 재정건수보다는 많다. 2011년 1월 26일까지는 총 82건의 재정이 있었으며, 저작물의 수로는 158,601개에 달한다고 한다. 당시까지 국립국회도서관에 대한 재정건수가 8건으로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지만, 저작물의 수로는 153,986건으로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한다고 한다(이에 대해서는 今村哲也, EUにおける孤児著作物への対応, カレントアウェアネス, NO.312 (2012.6), 12, 15, 주 2 참조. <<http://current.ndl.go.jp/ca1771>> (2015. 12. 10. 방문). 2012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용허락된 전체 저작물(실연 포함)은 220,509개에 달한다고 한다(이에 대해서는 平成25年度文化審議会著作権分科会 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第3回), 平成25年9月12日, 資料5, 裁定制度の在り方等について, 2頁. <http://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25_03/> (2015. 12. 10. 방문).

2010년 27건, 2011년 20건, 2012년 30건으로 점점 증가하였다. 이용허락된 저작물의 수도 1999년 10,835개, 2005년 72,583개, 2010년 67,912개, 2011년 60,230개로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다.⁹⁷⁾ 특히 헝가리와 비교하여 일본 재정제도의 활용도가 많은 이유는 권리자 찾기를 위한 구체적 요건, 수수료, 보상금 등에서 그 차이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6.2. 2013년 개정 저작권법

1) 서

2013년 10월 17일 개정법⁹⁸⁾이 공포되었다. 고아저작물 관련 개정법은 2014년 10월 29일 시행되었다. 이 개정법의 목적은 유럽연합의 고아저작물지침(Directive 2012/28/EU)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2) 2008년 개정법과의 관계

2008년의 개정법은 ‘라이선싱 방법’(licensing scheme)에 기초하여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 2013년 개정법은 복제권과 이용제공권에 대한 ‘예외 또는 제한’(exception or limitation)을 도입하는 방법에 의하여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이선싱 모델’(licensing model)이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제한 모델’(limitation model)은 특정 기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헝가리 저작권법에는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위 두 개의 방식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개정법에 의하여 도입된 ‘라이선싱 모델’은 고아저작물지침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지는 않고, 오히려 고아저작물지침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⁹⁹⁾

97) 이와 같이 재정제도의 이용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2009년 일본 저작권법 개정에 의하여 재정제도를 실연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고, 재정 신청 중에도 담보금을 공탁하여 저작물 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절차에 있어서도 권리자 찾기를 위한 ‘상당한 노력’에 대해 시행령과 고시에서 구체화·간소화하였고, 이를 알기 쉽게 ‘재정 안내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켰고 평의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자 찾기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복잡하고, 권리자의 연락처 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량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비영리 이용의 경우 등에 있어서 금전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절차비용의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위 平成25年度文化審議會著作権分科会 法制・基本問題小委員会(第3回), 平成25年9月12日, 資料5, 裁定制度の在り方等について, 1-2頁 참조.

98) 2013. évi CLIX. törvény a szellemi tulajdonra vonatkozó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지적재산권에 관한 특정 법률들의 개정에 관한 2013년법 CLIX), 제16조. 개정법률의 원본은 2013(172) Magyar Közlöny 73969-73972(헝가리어), <<http://www.kozlonyok.hu/nkonline/MKPDF/hiteles/MK13172.pdf>> (2015. 12. 10. 방문). 이 법은 여러 지적재산권법과 함께 저작권법도 개정하였다.

2013년 개정법은 ‘고아저작물의 이용’이라는 제목으로 제4/A장을 신설하였다. 이 장은 (i) 일반 규정, (ii)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라이선싱, (iii) 수혜기관에 의한 고아저작물의 이용, 이렇게 세 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다. 2013년 개정법은 2008년 개정법에 의하여 신설된 제57/A조~제57/D조를 그 내용상 실질적인 변경 없이 제41/B조~제41/E조로 그 위치만을 이동시켰다.

2013년 개정법에 의해 제정된 2014년 시행령¹⁰⁰⁾은 강제허락(라이선싱 모델, 구법상 제57/A조~제57/D조, 개정법상 제41/B조~제41/E조)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개정하였다(동 제3조~제8조). 즉, 2014년 시행령에 따르면, 이제 강제허락의 신청서는 미리 인쇄된 특허청 양식으로만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비용은 영리목적의 경우 92,500 HUF, 비영리목적의 경우 30,000 HUF를 납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 제2항). 이는 2008년 시행령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이다. 특허청이 이용신청을 심사 없이 거절한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시행령 제4조 제3항).

‘일반 규정’이라는 절에서 신설된 제41/A조 제1항은 고아저작물을 정의하고 있다. 정의규정은 기존의 라이선싱 시스템 하에서 고아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소(구법 제57/A조 제1항)에 덧붙여 ‘성실한 검색’(diligent search)과 ‘선의’(in good faith)의 개념에 관한 요소들을 추가하고 있다. 만일 저작물 또는 그 밖의 보호대상의 권리자가 그를 찾기 위하여 성실하게 그리고 선의로 검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 때에는, 이는 고아저작물로 간주된다. 성실한 검색을 하였다고 보기에 적절한 정보원(출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즉 2014년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고아저작물지침의 그것과 유사하다.

3) 수혜기관에 의한 고아저작물의 이용(저작권재산권의 예외)

고아저작물지침을 국내법에 수용한 규정들은 위 제3절에 신설되었다. 여기서 ‘수혜기관’(beneficiary institutions)이라 함은 공공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영상 또는 오디오 기록보존소, 공공 미디어서비스 제공사업자(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기관)를 말한다. 이러한 수혜기관들은 그 소장된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그 기관의 공익적 임무에 부합하고, 그 소장물의 보존, 복원 또는 교육적 및 문화적 접근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라이선스를 받을 필요 없이 그러한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1/F조 제1항).

99) Péter Mezei, IIC 2014, The New Orphan Works Regulation of Hungary, p. 940, 946.

100) 138/2014. (IV. 30.) Korm. rendelet az árva mű felhasználásának részletes szabályairól(고아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자세한 규칙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 138/2014. (IV. 30.)), 시행령의 원본은 2014(61) Magyar Közlöny 8815-8820 (헝가리어), <<http://www.kozlonyok.hu/nkonline/MKPDF/hiteles/MK14061.pdf>> (2015. 12. 10. 방문)

디지털화와 이용제공의 대상은 고아저작물지침의 그것과 동일하다(제41/F조 제2항 a-d, 제4항). 고아저작물에는 특히, 2002년 12월 31일까지 공공 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기관에서 제작되어 소장하고 있는 음반, 영화 또는 기타 시청각저작물이 포함된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EEA)) 내에서 최초로 발행되거나 최초로 방송된 것이어야 한다(동조 제2항 d).

수혜기관들은 (i)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아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고, (ii) 디지털화하거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인덱싱하거나, 목록화하거나 보존하거나 또는 복원하기 위하여 고아저작물을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동조 제1항 a, b). 고아저작물지침 제6조 제4항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 동업(partnership)하는 것은 허용된다.

수혜기관은 특허청에 성실한 검색의 결과, 구체적인 이용, 고아저작물 지위의 변경과 연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제41/G조 제1항). 특허청은 이러한 정보들을 즉시 OHIM에 전달해야 한다(동조 제2항). 전술한 정보의 제출은 저작물 이용개시의 전제조건이다(동조 제3항). 정보의 제출과 전달을 위한 플랫폼은 OHIM이 제공하는 것을 사용한다(시행령 제9조 제1항-제2항).

수혜기관은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그 수익은 그러한 이용을 가능하도록 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에만 쓰여야 한다(제41/J조). 즉, 수혜기관은 영리목적으로 고아저작물 이용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유럽경제지역(EEA) 내의 국가에서 고아저작물로 간주된 것은 헝가리 내에서도 고아저작물로 간주된다(제41/H조 제1항). 즉, 고아저작물의 지위를 상호 승인하는 것이다.

권리자는 제41/A조 제8항에 따라 언제든지 고아저작물의 지위를 종결시킬 수 있는데, 이때부터 수혜기관은 권리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41/I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이는 강제허락의 경우 권리자가 출현하더라도 추가로 1년 동안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 권리자가 출현하여 고아저작물의 지위를 종결시킨 경우, 그는 6개월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1항). 수혜기관은 지급청구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41/I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보상금의 액수는 2014년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액수는 이용의 범위,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분량에 따라 정해진다(동 부록 I).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7〉 헝가리 수혜기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

보호 대상	기초보상금	이용 범위	이용 기간
소설, 학술저작물	3,000 HUF ¹⁰¹⁾ /인쇄면 ¹⁰²⁾	오직 복제만 하거나 이용 제공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1/2로 함	첫 1년: 기초 보상금 그 후 매년: 기초보상금의 1/2
시	100 HUF ¹⁰³⁾ /줄		
편집물	600 HUF ¹⁰⁴⁾ /인쇄면		
영화, 시청각저작물	100 HUF/분		
음반	100 HUF/분		
공공 방송기관에서 제작한 영화, 시청각저작물과 음반	100 HUF/분		
전술한 것들에 포함된 기타 보호대상	각 200 HUF ¹⁰⁵⁾		

예컨대 100쪽 분량의 책을 디지털화하여 이를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전송)하였는데, 그로부터 6년 반 경과 후 저작자가 나타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위 산정 기준에 따르면, 최초 1년 동안 3,000 HUF × 100쪽 = 300,000 HUF, 그 후 6년¹⁰⁶⁾ 동안 1,500 HUF × 100쪽 × 6년 = 900,000 HUF, 총 합계 1,200,000 HUF(약 4,900,000원)에 달하게 된다. 만일 수혜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위 산정기준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4) 평가

헝가리는 이미 2008년 개정법에 의하여 고아저작물 이용에 관한 강제허락제도를 신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개정법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의 제한 내지 예외 사유로서 고아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후자는 물론 유럽연합의 고아저작물지침을 국내법에 수용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요컨대 헝가리에는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강제허락’과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는 두 가지의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양 제도는 권리자 찾기를 위한 성실한 검색 이외에는 이용절차, 이용자, 이용권의 범위, 보상금, 권리자 출현 후의 조치 등 여러 면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2013년 개정 전에도 헝가리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¹⁰⁷⁾에 따르면, 공공도서관, 교육시설, 박

101) 약 12,000원.

102) 1인쇄면은 40,000 자(공백 포함)에 해당한다.

103) 약 400원.

104) 약 2,400원.

105) 약 800원.

106) 산정기준은 1년 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반년은 1년으로 계산한다.

물관, 기록보존소, 사진과 음 기록보존소 등의 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연구, 교육 또는 보존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고 이를 위 기관 내의 단말기를 통하여 그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2013년 개정법은 위와 같은 제한된 목적과 범위를 벗어나서 디지털화(format-shifting), 색인화, 분류, 보존 또는 복원을 위하여 저작물을 디지털 방식으로 복제하고 이를 제한 없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있다.

사실 색인화(indexing) 및 분류(categorizing)에서는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정보(metadata)만이 저장될 뿐이며, 반드시 저작물 자체의 복제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색인화 및 분류 행위 자체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가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등이 제35조 제4항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저작물을 (디지털 형식을 포함하여) 복제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이미 허용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2013년 개정법의 실질적인 의미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 널리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예컨대 일반인들에게 관외 전송)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2013년 개정법 제41/F조에 따라 수혜기관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와 전송을 함께 하거나, 복제 또는 전송만을 하는 경우 차등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제35조 제4항에 따라 공공도서관 등에서 연구 등의 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포함하여) 저작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공공도서관의 입장에서는 관외 전송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사실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제35조 제4항에 따라 저작물을 디지털 복제하여 관내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의 이용에 제공하면 그만이다. 그 후 만일 그 저작물이 고아저작물이고 이를 관외 전송하려 할 경우어야 비로소 제41/F조가 적용되어 보상금을 지급하면 그만이다. 요컨대 보상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양 규정의 모순이 존재하며, 향후 이의 개선이 요구된다.¹⁰⁷⁾

우리 저작권법도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규정에서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복제하는 경우(제1항 제1호)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제3항)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5항), 자체보존을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제1항 제2호)와 그 도서관 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제2항)의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의 의무가 없다. 따라서 향후 고아저작물에 관한 규정을 도입할 경우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복제와 전송, 복제 또는 전송 중 어느

107) 이는 정보사회지침(Directive 2001/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May 2001 on the harmonisation of certain aspects of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OJ L 167, 22.6.2001, p.10)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108) 이러한 취지로 Péter Mezei, IIC 2014, The New Orphan Works Regulation of Hungary, p. 940, 950.

행위와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제41/F조에 따라 수혜기관이 고아저작물을 디지털 복제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였는데 나중에 권리자가 출현하여 고아저작물의 지위를 종결시킨 경우, 이미 생성된 디지털 복제물을 삭제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헝가리 저작권법은 침묵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등은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으므로, 사후에 출현한 저작자가 제41/F조에 따라 생성된 디지털 복제물이라고 하여 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¹⁰⁹⁾

109) 이러한 취지로 Péter Mezei, IIC 2014, The New Orphan Works Regulation of Hungary, p. 940, 950.

3.7. 일본

일본에서의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도서관 면책 조항과 우리나라의 법정허락제도에 해당하는 재정제도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서가 바로 그것이다.

3.7.1. 저작권법상 도서관 관련 조항

먼저 도서관 면책 조항에 따른 저작물의 디지털화와 공중송신에 관한 사항이다. 저작권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은 소장자료를 활용해서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서관 자료를 원본으로 이용시키는 데에 따르는 도서의 훼손과 멸실,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는 면책의 범위는 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자료가 포함되며, 저작물의 손상이나 멸실,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저작물의 전량을 디지털로 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은 국립국회도서관의 저작물 공중송신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절판 등의 이유로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자료로 그 범위가 다소 제한이 된다.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주체는 국립국회도서관으로 한정되고, 공중송신할 수 있는 범위도 도서관 내로 한정된다. 저작물을 공중송신 받은 도서관은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해서 도서관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일본의 저작권법 제31조가 규정하는 도서관에 대한 저작권 면책은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도서관을 국립국회도서관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도서관이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는 다소 다른 점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도서관 상호간 전송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과는 달리 도서관 상호간 전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급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3.7.2. 재정신청 제도

1) 일반사항

한편 저작권법 제67조는 우리나라의 법정허락제도에 해당하는 재정(裁定)신청 제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저작권자 불명인 저작물을 재정신청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정허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저작권자 불명 등의 사유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이 조항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필요로 한다.

첫째, 이 조항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거나 상당 기간 동안 저작물이 공중에게 제공이 되었거나 이용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저작물이어야 한다.

둘째, 재정신청에 앞서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자와 연락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저작물 사용료에 준하는 금액을 담보금으로 공탁하고 문화청 장관에게 재정신청을 하고 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재정신청의 처리 기간은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2009년에 개정된 법에 따라서 문화청 장관의 허가를 얻기 이전이라도 신청과 동시에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 수수료와 보상금

한편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1건당 13,000엔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정령에서 정한 독립행정법인의 경우에는 수수료는 면제가 된다. 문화청 장관의 검토를 거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문화청 장관이 정하는 보상금을 납부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상금의 액수는 통상 저작물의 사용료에 준하는 금액으로 책정 된다. 도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지급 되는 인세의 수준에서 금액이 결정된다. 금액이 결정되면 저작물 이용자는 담보금과 보상금의 차액을 납부하거나 돌려받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만일 문화청 장관이 저작물 이용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신청 기간 중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제외하고 담보금을 되돌려주게 된다.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다. 다만 그동안의 재정신청 승인공고를 통하여 국립국회도서관의 재정신

청에 대한 보상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14년 60건의 고아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10,083엔(약 97,000원, 즉, 1저작물 당 1,600원 정도 부과됨)이 부과되었다. 2005년 72,583건의 저작물을 5년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1저작물당 약 51엔(약 490원)이 부과되었다¹¹⁰⁾.

3) 상당한 노력의 요건

재정 신청에 앞서 이루어져야 하는 ‘상당한 노력’에 관한 구체적인 요건은 문화청 고시(平成 21년 문화청 고시 제26호)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첫째, 간행물이나 기타 자료의 열람을 통해서 저작권자의 소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권리자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간행물, 저작물, 실연, 레코드, 방송 또는 유선 방송의 종류에 따라서 작성된 명부 또는 이에 준하는 것과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을 가진 웹 사이트를 검색하고 열람하는 행위가 포함한다. 또한 권리자의 이름이나 주소를 찾기 위해 명부, 명감류 등을 도서관 등에서 참조하고, 권리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조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물 등이 발행·공표된 것을 2종류 이상 열람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 등의 표제, 저작자 등의 이름, 저작물 등의 내용을 키워드로 2개 이상의 인터넷 검색을 이용하여 권리자에 관한 정보를 검색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청 홈페이지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등록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도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울러 이러한 검색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둘째, 권리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분야와 관련되는 저작권 관리사업자 또는 그 밖에 저작권 등의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을 출판한 적이 있는 출판사나 해당 저작자가 창작한 다른 저작물을 출판한 적이 있는 출판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출판사로부터 해당 저작자의 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외에도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등이 운영하는 단체나, 해당 저작물의 분야와 관련된 연구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학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단체로부터 해당 저작자의 정보를 조회하여야 한다.

셋째, 일간 신문에의 게재에 준하는 방법으로 저작자를 찾기 위한 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저작권정보센터의 웹 사이트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관련 공고를 게재하거나, 저작물의 표제,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의 종류 및 내용 등 권리를 찾는 데 있어서 필요한

110) <<http://d.hatena.ne.jp/npn2sc1815j/20150803/1438549232>> (2015.12.10. 방문)

항목에 관해서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국립국회도서관 뿐만 아니라 미술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디지털 아카이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지털 복제가 허용되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아저작물을 포함한 과거 콘텐츠 자산의 활용을 위한 권리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제도의 보상금 공탁과 저작물 재사용 절차의 간소화 등을 검토해서 법 개정을 제안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¹¹¹⁾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제31조

(1) 국립국회도서관 및 도서관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과 기타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서관의 활동의 범위 내에서 도서, 기록 및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관 자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 i)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 부분(발행 후 상당기간이 경과된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개별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전부. 제3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의 복제물을 개인에게 1부 제공하는 경우
- ii) 도서관 자료의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경우
- iii)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유로 일반적으로 입수하기가 곤란 한 도서관 자료 (이하 "절판 등의 자료"라 한다)의 복제물을 제공하는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경우뿐만 아니라 국립국회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원본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의한 멸실, 손상 또는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원본을 대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절판 등의 자료와 관련된 저작물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공중송신('송신가능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 자료에 관한 저작물을 기록 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3) 국립국회도서관은 절판 등의 자료에 관한 저작물을 도서관 등에서 공중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 매체에 기록된 저작물의 복제물을 이용하여 자동 공중송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도서관 등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당해 도서관 등의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연구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자동공중송신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111) 『知的財産推進計画2015』等で示されている著作権関係課題
<http://www.bunka.go.jp/seisaku/bunkashingikai/chosakuken/hoki/h27_01> (2015.11.30. 방문)

복제물을 만들고 해당 복제물을 1인 1부 제공할 수 있다.

국립국회도서관법에 의한 인터넷과 온라인 자료의 수집에 따른 복제
제42조의 4

- (1) 국립국회도서관의 관장은 국립국회도서관법 (소화 23년 법률 제5호) 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하는 인터넷 자료 (이하 "인터넷 자료"라 한다) 또는 동법 제25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항에 규정하는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인터넷 자료 또는 해당 온라인 자료에 관한 저작물을 국립국회도서관의 사용을 위한 기록 매체에 기록할 수 있다.
-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당해 각 호의 자료에 관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 i)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및 제24조의 2에 규정하는 자 : 동법 제25조의 3 제3항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인터넷 자료
 - ii) 국립국회도서관법 제24조 및 제24조의 2에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 : 동법 제25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제공하는 동항에 규정하는 온라인 자료

제67조 저작권자 불명인 경우의 저작물 이용

- (1) 공표된 저작물 또는 상당 기간 동안 공중에 제공되거나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저작물은 상당한 노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 불명 등의 이유로 그 저작권자와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청 장관의 재정을 받아야 하고 일반 사용료에 준해서 문화청 장관이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을 저작권자를 위해서 공탁하고 그 결정에 관한 이용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결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저작물의 이용 방법과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저작권자와 연락 할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기타 정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함께 문화청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저작물의 복제물에는 그 복제물에 재정이 인정된 날짜와 취지를 함께 작성해서 표시하여야 한다¹¹²⁾.

112) <<http://www.copyright.or.kr>> (2015.12.13. 방문)

3.8. 미국

3.8.1. 현행 법률과 제도

미국 저작권법(United Copyright Act)에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 법정허락이 인정되는 경우는 음반의 제작과 배포에 대한 경우(제115조)뿐이고, 고아저작물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문제가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은 구글 도서프로젝트가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부터이다. 구글이 디지털화한 도서 가운데 상당수가 고아저작물에 해당 되었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작권청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입법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이다. 몇 차례에 걸쳐서 관련 입법을 시도하였지만 아직까지 법률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 고아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fair use) 조항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공정이용 조항은 저작물 이용자를 위한 방어수단의 일종에 불과한 것으로, 면책에 해당할 수 있는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저작물의 이용이 적법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준거로 활용되기에는 미진한 측면이 존재한다.

공정이용 이외에 미국 저작권법에서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는 조항은 저작권법 제108조 (h)항이 규정하는 도서관에 관한 면책과 제504조 (c)항 (2)호의 선의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감면에 관한 사항이 있다.

저작권법 제108조 (h)항은 1998년 저작권법 개정 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면서 보호기간의 연장이 오래된 저작물을 다루는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기간이 20년 미만으로 남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비영리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도서관이나 아카이브는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연구, 학문, 조사의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 또는 그의 일부를 디지털 형태로 복제, 배포, 전시, 실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해당 저작물이 통상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거나,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이 조항에 따르는 복제, 배포, 전시 또는 실연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조항에 규정된 면책은 도서관이나 아카이브 이외의 다른 이용자에 의한 후속 이용에는 적용 되지는 않는다.

이 조항이 직접적으로 고아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도서관이나 기록관리기관에 보관된 자료 가운데 포함된 상당수의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될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특히 이 조항은 저작권자의 소재 불명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합리적인 조사나 검색을 요건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이 조항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고아저작물은 발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것들에 불과해서 고아저작물 전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¹¹³⁾

한편 저작권법 제504조 (c)항 (2)호가 규정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감면에 관한 사항도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때에는 손해배상액을 총 200달러까지 감면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이 제107조에 따른 공정이용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영리교육기관, 도서관 또는 아카이브와 그 직원이 직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을 복제한 행위에 대해서 법정 손해배상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공정이용을 활용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것이어서, 고아저작물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표 18〉 미국 저작권법 중 고아저작물과 연관이 있는 조항

<p>제108조 (h) (1) 이 조의 목적상, 발행된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의 마지막 20년 동안에는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을 포함한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는, 그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가 합리적인 조사에 근거하여 (2)호의 (A), (B), 그리고 (C)에 규정된 조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차적으로 판단한 경우에, 연구, 학문, 또는 조사의 목적으로 그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 또는 그의 일부를 팩시밀리 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 배포, 전시 또는 실연할 수 있다.</p> <p>(2) 다음의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복제, 배포, 전시 또는 실연이 허용되지 아니한다.</p> <p>(A) 그 저작물이 통상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때,</p> <p>(B) 저작물의 복제물 또는 음반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는 때, 또는</p> <p>(C)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저작권청장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A) 또는 (B)에 규정된 조건 중의 하나가 적용된다는 통지를 한 때.</p> <p>(3) 이 조에 규정된 면책은 도서관이나 기록보존소 이외의 다른 이용자에 의한 후속 이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113) 홍유미, 2013. 고아저작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p.34.

제504조 (c) (2) 저작권자가 그 침해가 고의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행하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법정 손해의 판정액을 총 150,000달러까지 인상할 수 있다. 침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이행하고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의 재량으로 법정 손해의 판정액을 총 200달러까지 인하할 수 있다. 침해자가 보호되는 저작물을 사용한 것이 제107조에 따른 공정사용이라고 믿었고 또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은 법정 손해액을 감면하여야 한다. 침해자가, (i) 그 직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복제함에 의하여 침해를 한, 비영리 교육기관,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의 직원이나, 그 교육기관, 도서관, 또는 기록보존소 그 자체인 경우; 또는 (ii) (제118조 (g)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영방송국의 정기적인 비영리적 활동의 일부로서, 발행된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을 실연함으로써, 또는 이러한 저작물의 실연을 수록한 송신 프로그램을 복제함으로써 침해한 자 또는 그 공영 방송기관인 경우¹¹⁴⁾.

3.8.2. 고아저작물 관련 법률 개정 시도에 대한 검토

1) 2006년 저작권청의 보고서¹¹⁵⁾

구글 도서 프로젝트가 사회적인 문제로 등장하면서 저작권청은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이후 2006년과 2008년에 제안된 입법안의 토대가 되었다. 합리적인 성실한 조사를 수행하였으나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저작물 이용자에 대하여 향후 저작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이전에 권리자를 찾기 위해서 '선량한 의도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상당히 성실한 조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성실한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다양한 사정과 기술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조사 기준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성실한 조사'에 대한 판단을 위한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저작권청이 제안한 판단 요건은 저작물 복제본의 정보, 공표 여부, 창작 연대, 저작권청의 등록 여부, 저작자의 생존 여부에 대한 사항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그렇지만 저작권청은

114) <<http://www.copyright.or.kr>> (2015.12.13.)

115)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2006. *Report on Orphan Works*.

이러한 사항은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법안에 이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둘째,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사’를 수행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금지명령을 제한하고 있다. 저작물을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자가 침해 주장에 대한 통지를 받은 직후에 그 이용을 중단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배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보상까지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고아저작물을 포함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등에는 합리적인 보상금을 지불하면 저작권자의 권리구제 행위 이후에도 저작물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지명령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¹¹⁶⁾.

2) 2006년 고아저작물법안

(Orphan Works Bill, H.R.5439, Orphan Works Act of 2006)

이 법안은 2006년 저작권청의 고아저작물에 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고서의 제안 내용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법안이 제안하는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저작물 이용에 앞서 저작권자의 거소를 파악하는 데에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저작권자를 찾았을 때 권리소유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저작권청의 보고서가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했던 것과는 달리 법안에는 ‘합리적인 성실한 조사’의 요건을 세 가지 방법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첫째, 이용자들이 성실한 조사를 수행한 이후에 이를 기록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둘째, 저작권청이 합리적인 조사를 위한 출처를 공중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시 말해서 저작권청이 저작권 등록 정보와 조사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를 돕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셋째, 합리적인 조사의 사례들을 나열하여 성실한 노력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예컨대 합리적인 조사는 저작권청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성실한 노력을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과 허락 없는 이용이라는 사실을 저작권청에 게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자는 이용 개시 이전에 담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편 종교나 학술, 교육 등 박애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침해소송고지를 받은 직후에 침해행위를 중단할 경우에는 배상 책임

116) 홍유미, 2013. 고아저작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pp.35-37.

을 면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¹¹⁷⁾.

그렇지만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어서,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적절한 규율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었다.

3) 2008년 고아저작물법안

(Orphan Works Bill, H.R.5889, Orphan Works Act of 2008)

2008년에 제출된 법안도 2006년에 제안되었던 HR5439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상당 부분을 보완하여 새로운 제안들이 이루어졌다.

이 법안에서는 ‘자격 있는 노력(qualifying search)’을 수행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자의 구제 행위에 대한 제한을 제안하고 있다. 법안이 제안하는 ‘자격 있는 노력’은 합리적이고 성실한 조사를 달리 표현한 것으로, 이러한 조사를 수행한 사람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을 내포하며,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수행해야 하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성실한 노력을 뜻한다. 저작물 이용이 ‘자격 있는 노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검색이 합리적으로 수행되었고, 검색을 통해서 발견한 사실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미국 저작권등록소가 제시하는 ‘최선의 방법(best practices)’을 통해서 검색이 이루어졌는지, 이용자의 검색이 저작물을 이용하기 이전에 이루어졌고, 그 시간이 침해가 이루어진 시점과 가장 근접한 것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06년 법안과는 달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합리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저작권등록소(Register of Copyrights)에 저작물 이용의 통지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의 보관과 관리를 위해서 저작권청에 아카이브를 설립하고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고아저작물의 이용이 침해라고 밝혀졌을 때의 금전적인 배상을 제한하는 것이다. 법률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는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침해를 주장하는 권리자의 손해는 합리적인 보상액으로 제한이 된다. 또한 비영리교육기관, 도서관, 아카이브와 공공방송기관의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침해에 대한 고지를 받은 이후에 곧바로 침해 행위를 중지한 것을 입증한 경우에 한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침해 주장에 대한 통지 이후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침해자와 저작권 소유자와 합리적인 보상의 협의에 실패한 자, 적절한 때에

117) 정경희, 2014, 도서관 보상금 체제에서 고아저작물 체제로의 전환 모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p.205.

합리적인 보상을 지불하지 않은 자는 권리구제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고아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의 일부이며, 이용자가 합리적인 보상과 함께 지속적인 저작물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법원이 금지명령을 강제할 수 없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법안 역시 H.R.5439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표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아서,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규율하는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말았다.

4) 2008년 Shawn Bentley 고아저작물 법안

(Shawn Bentley Orphan Works Act of 2008, S.2913)

2008년 4월 상원에 제출된 이 법안은 H.5889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몇 가지 다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H.5889가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자격 있는 조사를 한 이용자가 저작권청에 고아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통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러한 사항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용의 통지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아카이브의 설립과 유지에 대한 저작권청의 의무도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법원이 합리적인 보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요구하지 않아서 이전의 법안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 법안은 2008년 미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미국 광고사진가협회 등을 비롯한 많은 권리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까지 가지 못하고 폐기되었다.¹¹⁸⁾

5) 고아저작물 관련 보고서 2015¹¹⁹⁾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법안의 입법 시도가 수차례 무산되었지만, 미국 저작권청은 관련 입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6월에 다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저작권청의 의견을 정리해서 담아낸 것으로, 2008년에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결국 폐기되었던 Shawn Bentley 법안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다. 제안하고 있는 법안의 대체적인 내용은 이전 법안들의 내용을 대체로 수용하고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이전의 것과는 구별이 된다. 선의를 가지고 성실한 검색을 수행하고 일정한 주의사항들을 준수한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118) 홍유미, 2013. 고아저작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p.42.

119)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2015.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한다는 주요한 내용은 이전 법안들과 모두 동일하다. 다만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를 위해서 포괄적 집중관리제도(ECL, Exclusive Copyright Licence)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러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의 법안들과는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 이와 함께 Shawn Bentley 법안에서는 채택하지 않았던 저작권청의 저작물 이용 통지에 대한 사항과 이러한 기록물의 보관과 관리를 위한 아카이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H.R.5889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되살려내고 있다. 아울러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할 때에 해당 저작물이 발견된 도서관이나 아카이브도 함께 명기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외국 저작물에 대한 ‘자격 있는 노력’도 상호주의에 입각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이전의 법안들과는 차별화가 된다.

미국 저작권청은 이 법안을 통해서 고아저작물이나 저작물의 대량 디지털화에 대한 법적인 확실성을 보장해 주고, 저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만들고, 오랜 동안 잊혀졌던 저작물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¹²⁰⁾.

120)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2015.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p. 106.

3.9. 캐나다

3.9.1. 저작권법 제77조

캐나다에서 고아저작물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법(Copyringt Act) 제77조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조항은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출판된 저작물, 실연자의 공연에 대한 고정물, 출판된 녹음자료, 방송신호의 고정물 등에 대하여 적용이 된다.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저작권자와 연락하는 데 실패한 경우에는 캐나다 저작권평의회(the Copyright Board of Canada)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법정허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작물 이용자는 저작권평의회가 제시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저작권평의회는 이용 허락은 일정한 기간과 조건에 한정된 비독점적인 허락이며, 저작권 소유자는 법정허락 기간 만료 후 5년 이내에 라이선스에 기재된 저작권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법정허락 기간 만료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저작권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저작물 이용자의 저작권료 지급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저작권평의회는 해당 저작권료를 관련 분야의 집중관리단체에 선급금으로 우선 지불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해당 집중관리단체를 통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집중관리단체를 활용해서 저작권료를 선지급하도록 하는 까닭은 집중관리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저작권자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집중관리단체로부터 저작권료를 수령하는 편이 저작물 이용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용만료 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저작권자가 저작권료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집중관리단체는 해당 저작물 이용자에게 저작권료로 맡겨 놓은 금액을 다시 환불해 주게 된다.

3.9.2. 합리적 노력

저작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저작권평의회로부터 법정허락을 받고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불한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정허락을 위해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상세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저작권평의회에 재량에 맡겨져 있다. 특히 '합리적인 노력'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

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저작권평의회는 ‘합리적인 노력’의 기준을 제정하여 제시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사안별로 판단하여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않는 까닭은 고아저작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¹²¹⁾ 저작권평의회는 각각의 사안별로 ‘합리적인 노력’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허락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이 때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는 사안을 둘러싼 환경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저작권평의회는 고아저작물 이용허락 취득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는 홈페이지¹²²⁾에 저작자의 이름이나 거소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집중관리단체와 접촉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나 출판사, 도서관, 대학, 박물관, 지방교육청 등과의 접촉을 함께 권고하고 있을 뿐 그 상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

3.9.3. 도서관과 아카이브에 대한 예외

이렇게 저작권평의회가 이용허락을 하게 되면,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권평의회가 지정하는 해당 분야의 집중관리단체에 소정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료는 대개 해당 분야의 집중관리단체가 저작물 이용허락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액의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도서관이나 아카이브, 박물관과 같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이용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지 명목상의 금액으로라도 저작권료를 부과하고 있다. 명목상의 금액이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향후 이러한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캐나다의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제도는 저작물 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된 상당 부분을 저작권평의회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121) Jeremy de Beer & Mario Bouchard. 2009, Canada's "Orphan Works" Regime : Unlocatable Copyright Owners and The Copyright Board, pp.17-18.

122) <http://www.cb-cda.gc.ca/unlocatable-introuvables/brochure2-e.html> (2015.12.13. 방문)

〈표 19〉 Canada Copyright Act (R.S.C., 1985, c. C-42)

제77조 (1)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아래의 저작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

- (a) 출판된 저작물
- (b) 실연자의 실연에 대한 고정물
- (c) 출판된 음반
- (d) 방송 신호의 고정물

저작권평의회는 신청자가 저작권자의 거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저작권자의 거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법 제3조, 제15조, 제18조, 제21조에 언급되는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용허락은 비독점적인 것이어야 하고, 저작권평의회가 정한 기간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3) 저작권 소유자는 이용허락이 만료되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저작권 라이선스에 저작권의 존중을 위해서 제시된 일정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 손해 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저작권평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의 세부적인 요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10. 호주

3.10.1. 유연한 예외 규정

호주 저작권법(Copyright Act)에는 고아저작물과 관련된 조항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고아저작물은 공정이용이나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0조AB의 조항에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항들이 제시하는 것이 너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고아저작물 이용에 앞서 성실한 검색(diligent search)를 수행해서 위험에 대비하기도 한다.¹²³⁾

2006년 저작권법 개정에서 도입된 ‘유연한 예외(flexible exception)’ 규정에 따라서 문화기관과 교육기관 등에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가진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호주 저작권법 제200조AB는 문화기관(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및 교육기관 등의 저작권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관들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또한 아무런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는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한다. 첫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주체가 직접 또는 이들 기관을 대리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이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둘째, 도서관이나 아카이브를 유지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때 ‘운영’은 도서관이나 아카이브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저작권 면책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조금이라도 영리목적이나 상업적인 이윤 추구와는 관련이 없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WTO의 3단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작물 이용의 상황이 특별한 것이어야 하고,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 또는 다른 보호받는 저작물의 일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를 충족해야만 한다.

그렇지만 이 조항을 통해서 도서관이나 아카이브가 소장한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호주 정부의 법률개정위원회(ALRC, Australian Law Reform Commission)가 2013년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조항이 활용된 사례는 거

123) ALRC. 2013. Copyright and the Digital Economy. p.291.

의 없다고 한다. 법 조항의 문구가 지나치게 모호해서,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에서 ‘유연한 예외’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가운데에서도 저작물의 이용 상황이 ‘특별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도서관이나 아카이브가 소장한 저작물 등의 대량 디지털화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¹²⁴⁾고 보고서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문화기관들은 이 조항이 대량 디지털화 프로젝트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이유로 이 조항의 적용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이 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대량 디지털화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까닭이라고 한다. 호주 아키비스트협회는 이 조항은 ‘아카이브가 소장 기록물을 보존하는 의무를 수행하고 그 전체로서 그 컬렉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의 경제적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패한 조항이라고 규정하면서 해당 조항을 폐지하고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에 의한 저작물 사용이 저작권 침해로 구성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이용에 관한 예외 조항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도서관이나 아카이브의 보존 목적의 복제에 대한 예외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러한 예외 조항은 복제물의 수량이나 형식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함께 제안하고 있다.

3.10.2. 강제허락제도

한편 호주 저작권법의 법정허락제도(statutory licence)는 고아저작물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항목이 아니다. 호주의 법정허락제도는 오히려 저작권의 독점이 야기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강제허락제도(compulsory licence)로 보는 편이 합당할 것이다. 이 조항은 고아 저작물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목적이나 정부의 이용 등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¹²⁵⁾

호주 저작권법에서 고아저작물의 문제는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 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2012년 호주 정부가 발간한 고아저작물에 관한 보고서¹²⁶⁾는 고아저작물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지만 저자를 알 수 없거나 저작권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고아저작물의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저작권자를 밝히거나 찾으려는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면 추후의 저작권 침해 없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124) ALRC. 2013. Copyright and the Digital Economy. p.292

125) ALRC. 2013. Copyright and the Digital Economy. p.291.

126) Australian Copyright Council. 2012. Orphan Works.

주장하고, 반대로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고아저작물 이용허락을 입법하는 것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규제할 권리를 해치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들과 함께 저작권법의 개정을 권고하고 있다.

3.10.3. 법률개정위원회 보고서

2013년에 호주 정부의 법률개정위원회의 보고서¹²⁷⁾는 고아저작물에 관한 제안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적인 방향을 저작물을 이용한 이후에 저작권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성실한 검색’을 수행하였고, 저작물의 이용이 저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입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성실한 검색’에 대한 판단을 위한 몇 가지 기준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이용되고 있는 저작물의 성격, 검색을 누가 그리고 어떻게 수행하였는지, 당대에 사용되는 기술, 데이터베이스, 레지트리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였는지의 여부, 당대에 적합한 검색에 관한 가이드라인, 프로토콜, 산업적 관행을 따르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성실한 검색’의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에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고 그 기준만을 제시하려는 까닭은 ‘성실한 검색’의 기준이 기술적인,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요건들을 나열하기 보다는 판단의 기준만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제안13-1 저작권법은 침해의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벌어진 경우에 저작권 침해 행위에 부과하는 손해 배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 (a) 권리보유자에 대한 합리적인 성실한 검색을 실행한 이후에도 권리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 (b) 저작물의 이용자가 분명하게 저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다고 합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경우

제안13-2 저작권법은 합리적인 성실한 검색을 수행하였는지를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야 한다.

- (a) 저작물의 성격
- (b) 누가, 어떻게 검색을 수행하였는지
- (c) 시의적절한 기술, 데이터베이스, 레지트리에 대한 검색
- (d) 시의적절한 성실한 검색에 관한 가이드라인, 프로토콜, 산업적 관행

127) ALRC(2013)

3.11. 비교분석

각국 저작권법의 고아저작물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 법개정을 하였거나 구체적인 개정안이 제출되었던 국가들은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하여 예외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EU 고아저작물지침에 따라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진 EU 국가들(영국, 프랑스, 독일, 헝가리)은 예외규정으로 입법화하였다. 미국의 경우 최근 저작권청 보고서에서 도서관에 대한 예외규정 도입과 대량디지털화에 대해서 시범적인 ECL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호주는 유연한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캐나다 및 일본은 일반적인 법정허락 규정에 따라 도서관에서 고아저작물을 활용하고 있다.

EU지침을 따르는 각국에서 도서관이 수행해야 할 성실한 검색에 대한 요건은 일반적인 이용자가 수행해야 하는 것과 동일하다. EU 회원국의 도서관은 성실한 검색 후 고아저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의 DB 즉, OHIM에 수집하고 있다. 미국의 개정안, 캐나다, 일본의 법정허락 규정에서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시 성실한 검색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고아저작물 권리자를 찾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EU지침을 따르는 각국은 도서관에서 고아저작물을 사용한 후 권리자가 나타났을 경우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공정한 보상(fair compensation)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보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각국 입법에 맡기고 있다. 다만, 도서관의 공적 목적, 이용의 비영리성, 권리자의 손실을 고려하여 실제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만 보상받도록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헝가리를 제외하고 각국의 법에서 공정한 보상의 구체적 기준을 입법화한 경우는 없다. 영국은 공정한 보상금액을 도서관이 책정하고 그 산출기준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허락 방식을 취하고 있는 캐나다, 일본의 경우 집중관리단체의 요율에 기준하여 보상금을 정하고, 도서관에 대한 보상금 예외 규정은 없다. 다만, 실무에서 도서관에 대하여 일반적 이용과 달리 명목상의 금액만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예외규정으로 입법화한 EU 각국의 경우 법정허락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국가기관에 대하여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고, 헝가리는 강제허락 규정에서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일반적 이용의 절반수준에서 부과하고 있다. 그 외의 국가에서 도서관 혹은 비영리 목적에 대한 수수료 예외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EU 각국은 도서관에 소장된, 공표된 저작물(공개된 미공표저작물 포함), 독립저작물 및 단독 저작물에 포함된 저작물(독립된 사진저작물을 제외), EU 회원국에서 처음 발행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15년 미국 저작권청 보고서에서 도서관에 대한 고아저작물 예외에 상호

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 저작물에 대하여도 적용하되 성실한 노력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수행
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표 20〉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각국 저작권법 규정 비교

국가	법률 개정	내용	법정허락 또는 예외 규정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				고아저작물 지위종료
				대상저작물	이용절차	상당한 노력의 기준	수수료 및 보상금	
한국	시행령 개정 (2005, 2012,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방법 및 공고기간 변경('06) 3년경과 미분배보상금 관련 저전물, 권리자찾기사업('12) 공고기간 단축('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허락제도 있으나 도서관에 대한 특별 규정 없음 일반적 도서관면책규정에 도서관보상금제도 있으나 고아저작물 이용에 응용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표된 저작물 내국인저작물 	상당한 노력 → 승인 → 보상금공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권등록부 검색 신탁관리단체에 조회 의뢰 신문, 권리찾기 사이트 공고(10일경과) 인터넷정보검색도구 검색 3년경과 미분배보상금저작물 이미 법정허락된 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료: 개별 1만원 보상금: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정허락업무처리규칙'에 의거하여 산정 	관련규정 없음
EU	고아저작물 지침 (2012, 1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 복원과 전송을 위한 저작권인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보시행지침 (2001/29/EC)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복제권과 전송권에 대한 예외(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보존기관에 소장된 책, 저널, 신문, 잡지 및 기타 문서에 포함된 저작물 위 기관들에 소장된 영화, 시청각저작물과 음반 200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상당한 검색 → 각국의 규제당국에 검색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록에 권리자를 검색하여야 할 출처를 책, 신문, 미술, 시청각저작물 4개의 분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책: 법률상 남본 도서관 목록, 각국의 출판자협회나 저작자협회, 현존 DB나 등록부, WATCH, ISBN, 저작권진흥관리단체의 DB, ARROW 신문, 잡지 등: ISSN, 도서관 색인과 목록, 법률상 남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적으로 무상 이용 수수료: 디지털화와 전송에 대한 실제 상응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리자가 고아저작물 지위 종결 가능 권리자는 기 이용에 대한 상당한 보상 청구 가능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								
국가	법률 개정	내용	법정허락 또는 예외규정	대상저작물	이용절차	상당한 노력의 기준	수수료 및 보상금	고아저작물 지위종료
				공영방송사에서 제작되고 소장된 영화, 시청각저작물과 음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 저작물 등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내에서 최초로 공표 또는 방송되어야 함 		각국의 출판자협회나 저작자협회, 저작권집중관리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술, 사진 등 시각저작물: 위에서 언급한 출처들,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DB, 사진 에이전시의 DB 시청각저작물과 음반: 법률상 남본, 각국의 저작자협회, 영화 및 음 유선보존기관과 국립도서관의 DB, ISAN, ISWC, ISRC,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DB, 포장의 크레디트, 관련 권리자단체의 DB 	수수료/보상금 없음	
영국	저작권법 개정 (201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비영리 목적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법정허락 도서관포함 문화유산기관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기관에 대해서는 법적규정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아저작물 이용을 위한 문화유산기관 (도서관포함) 면책규정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기관에 소장된 저작물 /저작인접물 미공표저작물 (공개접근이 가능한) 공영방송 기관에서 생산되었거나 위탁된 저작물 	상당한 노력 → 입증자료 OAIEM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OAIEM의 DB OAIEM에 없을 경우 저작물유형별로 검색해야 할 자원제시 도서관목록, 출판/저자단체, WATCH & ISBN, 도서관DB들, 저작권관리단체DB 	수수료/보상금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작재산권자가 OAIEM 또는 고아저작물임을 처음 확인한 기관에 권리자증명서류 제출 도서관은 정당한 보상방법과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								
국가	법률 개정	내용	법정허락 또는 예외규정	대상저작물	이용절차	상당한 노력의 기준	수수료 및 보상금	고아저작물 지위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또는 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저작물 • 회원권 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액을 관리자에게 제공 • 보상금액 할인될 경우 저작권심판소에서 중재
프랑스	2012. 3.1 개정 & 2015. 2.2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판저작물의 이용(2012년 개정) • 고아저작물의 이용(2015년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판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허락(ECJ 유사) •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저작권산권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판저작물은 2001년 1월 1일 전에 발행된 것 • 고아저작물은 EU지침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판저작물 국립 도서관 권리(6개월 경과, 관리자 의 이의제기 없 아야) → 집중관 리단체의 허락 • 고아저작물은 EU 지침과 동일 		수입은 고아저작물의 디지털화와 전송에 대한 비용만 부담 가능	권리자 출현시 고아저작물 이용 중지 및 보상
독일	저작권법과 저작권신탁관리법 개정 (2013.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아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저작권산권 예외규정 신설 • 절판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저작권산권 관련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에 저작권산권제한규정이 있고(제100조), 절판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제102조~104조를 신설 • 절판저작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교육기관, 박물관, 기록보존소, 영화 및 음향 영상보존기관에 소장된 것으로 이미 공표된 아래의 것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세한 검색 → 특허상표청(DPMA) 검색 결과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법 제102조 부록에 권리자를 검색하여야 할 출처를 책, 신문, 시간지식물, 영화, 미공표 저작물 등 5개의 분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함 • 책, 독일 국립도서관 목록, 출판자협회와 저작자협회 정보(특히 VLB), 현존 DB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무상 이용 • 수수료: 디지털화와 전송에 대한 실비 상당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자가 확인되거나 소재가 파악된 경우 지체 없이 고아저작물 지위 종결 • 권리자는 기 이용행위에

국가	법률 개정	내용	법정허락 또는 예외규정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				
				대상저작물	이용절차	상당한 노력의 기준	수수료 및 보상금	고아저작물 지위종료
			<p>이용을 위해 저작권신탁관리법 제134조와 제135조를 신설</p>	<p>대상저작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 전문저널, 신문, 잡지 및 기타 문서에 포함된 저작물과 기타 보호대상물 • 영화저작물, 영화저작물이 수록된 수록된 녹화매체, 녹화 및 녹음매체 • 녹음매체 	<p>이용절차</p>	<p>상당한 노력의 기준</p> <p>등록부, WATCH, ISBN,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DB(특히 VG의 D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문, 잡지 등: ISSN, 도서관 색인과 목록과 정기간행물DB(ZDB), 법률상 논문, 출판저널, 저작자 및 저널리스트협회, VLZ·VLB 등의 목록 •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DB • 미술, 사진 등 시간저작물: 위에서 언급한 출처들, 저작권집중관리단체(특히 VG Bildkunst)의 DB, 사진 에이전시의 DB • 영화, 녹음매체 등: 법률상 논문, 제작저널, 연방과 주의 영화진흥기관의 정보 영화 및 음 유산보존기과의 DB, ISAN, ISWC, ISRC,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DB, 포장의 크레디트, 관련 권리자단체의 DB • 미공표 저작물: 저작물의 형식 또는 원래 소유자, 국립 유산목록, 국립기록보존소의 	<p>수수료 및 보상금</p>	<p>고아저작물 지위종료</p> <p>대한 저작권 보상 청구 가능</p>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								
국가	법률 개정	내용	법정허락 또는 예외규정	대상저작물	이용절차	상당한 노력의 기준	수수료 및 보상금	고아저작물 지위종료
헝가리	2008 12.28 개정 & 2013 10.17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허락에 의한 이용 (2008년 개정) 저작재산권제한규정에 의한 이용(2013년 개정) 	고아저작물이용을 위해 강제허락과 저작재산권제한규정을 병행함	강제허락의 경우 저작물의 종류 불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허락 특허청이 5년 비배타적 이용권 부여, 보상금 징수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은 전자접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록, 비물권의 목록 정보자료와 전화번호부 접근가능한 DB 검색 해당저작물의 다른 이용자에 대한 문의 전국신문공지 외국에서 발행된 자료는 가능할 경우 최초 공표국에서 위의 절차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제허락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금 징수 비영리목적의 경우 권리자 출현 후에만 징수, 권리는 5년 동안 특허청에 보상금 청구 가능. 5년 경과 후 집중관리단체에 양도, 위 단체가 없는 경우 국가문화기금에 양도 저작재산권제한규정의 경우 전자접과 동일 	강제허락이나 저작재산권제한규정이나 권리자 출현시 보상금 청구 가능
일본	2012년 & 200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도서관의 도서관 상호간 전송 및 이용자 복제를 제공 가능 조항 신설(2012년) 재정신청(법정 허락)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의적인 도서관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회도서관에 한하여 고아저작물(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도서 공표된 저작물 또는 상당 기간 동안 공중에 제공되거나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한 노력 → 재정 신청 부 → 담보금 납부 → 저본물 이용 → 승인 (미승인시 보상금에 준하는 금액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행물 기타 자료의 영란 (권리자 정보를 게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간행물 등에 작성된 명부 명단류·발행된 2종0상을 참고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한 조사 권리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수료 : 신청 건당 13,000엔 국가기관 및 정령에서 지정하는 독립행정기관의 경우 수수료 면제 보상금은 해당 분야의 저작권집중관리단체 	

국가	법률 개정	내용	법정허락 또는 예외규정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				고아저작물 지위종료
				대상저작물	이용절차	상당한 노력의 기준	수수료 및 보상금	
		<p>하기되기 이전에 신청 자체만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내용 개정(2009년)</p>	<p>도서 등의 일부분에 대해서 디지털화하고 도서관으로 공증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면책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신청 제도를 통해 저작권자 불명인 도서의 법적 허락 추진 	저작물	<p>담보금에서 차감 후 돌려 줌</p>	<p>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의 접촉(저작권관리단체, 해당 자자의 다른 저작이나 동일한 저작을 출판한 출판사)</p>	<p>의 저작권료에 준하여 책정(도서의 경우 도서의 인쇄 등에 준함)</p>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적인 도서관 예외규정과 공정이용 조항을 통한 면책만 인정 • 수차례 저작권법 개정 시도하고 있으나, 의회에서 부결 또는 폐기됨 	발행저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보호기간 종료 20년 미만 저작물 합리적 조사후 디지털 복제, 배포, 전시, 실연 •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고아저작물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물이 통상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아야 함. • 복제물 또는 음반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장에서 취득할 수 없어야 함 • 저작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저작권청장이 공포한 규정에 따라 저작물이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복제물 또는 음반을 합리적인 가격에 취득할 수 있다고 통정한 사실이 없어야 함 	<p>해당 없음</p>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 및 요건					고아저작물 지위종료	
국가	법률 개정	내용	변정허락 또는 예외규정	대상저작물	이용절차	상당한 노력의 기준	수수료 및 보상금	
캐 나 다	199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적인 도서관 정책 규정을 두고 있으나, 복제에 관한 시행만 규율하고 있음.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평의회가 허가를 받아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표된 저작물 실업자의 공연에 대한 고정물, 공표된 녹음기록, 방송신호의 고정물 가운데 저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저작물 	저작물 이용자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저작권자의 연락처를 찾아내는 데 실패한 경우에는 저작권평의회에 허락을 받고, 담보금을 지급한 이후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저작권평의회에서 판단(사용하고자 하는 분야의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를 접촉, 인터넷, 출판사, 도서관, 대학교, 박물관, 지방교육청 등을 활용해서 관련 정보조사 등을 권고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캐나다의 해당분야 저작권 집중관리단체가 정수하는 저작권료에 관한 담보금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담보금 예치 	
호주	200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기관(도서관, 아카이브) 및 교육기관 등에 유언한 예외(flexible exception)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B 특별한 목적을 가진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면책 인정(사회적으로 유용한 목적을 가진 교육기관, 문화기관) 고아저작물에 관한 일반 규정 없음 		합리적인 상실한 검색 후 저작권자 불명인 경우 도서관이나 아카이브는 저작물을 이용, 별도 비용 부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당한 노력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음. 다만 해당 저작물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일반적인 요건만을 제시(3단계 테스트 통과를 위한 기본요건) 		

제4장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정허락 제도 적용 방안 제안

4.1. 제도개선의 필요성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까지 약 45만건의 소장자료를 디지털화 하였고 이중 30만건의 자료를 도서관보상금제도에 따라 도서관간 전송 및 관내출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상금징수단체와 약정체결을 한 도서관에 방문해야만 한다. 안방도서관을 넘어서 모바일 시대를 살고 있는 이용자들에게 이와 같은 방식의 서비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까지 디지털화한 자료와 향후 지속적으로 디지털화할 자료를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밖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시대의 이용자요구에 맞게 서비스하는 것은 국가대표도서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데 디지털화한 자료의 상당수는 고아저작물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를 관외전송하기 위하여 권리자를 찾는 노력을 충분히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권리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3.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23조는 저작재산권자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 규정은 외국인 저작물을 제외한 공표된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수행한 후에도 권리자를 찾을 수 없거나 그 거소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정허락 승인신청시 저작물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개별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이용을 전제한 규정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대량으로 디지털화한 자료 중 고아저작물 이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이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이를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된다. 1건당 1만원인 수수료가

현재까지 디지털화된 자료 30만건에 부과될 경우 이 금액만으로도 30억원이 소요된다. 이러한 비용이 국립중앙도서관에 그대로 요구될 경우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아저작물의 권리자가 다시 출현할 가능성은 매우 예외적일 것이므로 설령 도서관이 어떤 정도의 보상금을 공탁하더라도 권리자가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소멸하여 국고에 귀속하게 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결국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인 세금으로 지불한 공탁금이 다시 국고로 귀속하게 되는 상황이 초래된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된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에도 외국인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계획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만일 소장자료 중 외국인 저작물을 디지털화할 경우 제50조에 외국인 저작물을 배제한 규정은 도서관입장에서 큰 장애가 된다.

3.2~3.10장에 걸쳐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사용에 대한 국외의 저작권법 규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입법의 형태가 법정허락의 방식이든 저작재산권 제한의 방식이든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대량 디지털화하여 관외전송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었다. EU지침을 따르고 있는 국가들은 권리자가 출현한 후 도서관이 그 동안의 사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호주는 유연한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기존에 법정허락제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와 일본은 도서관을 위한 법정허락 예외규정은 없으나 실무에서 도서관이 공익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이용에 비해 매우 낮은 명목상의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헝가리의 경우 EU지침에 따른 고아저작물 예외규정 도입 이전에 마련한 법정허락 예외규정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고아저작물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이용행위 전에 공탁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한 영국의 경우 고아저작물의 법정허락 승인시 비영리 목적의 이용일 경우 승인기관인 GPO가 저작물 1건당 10펜스(약 180원)라는 명목상의 금액만 책정해 놓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최근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도서관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예외규정을 도입하여 권리자가 출현한 후 보상금을 지급해야함을 제안하였다. 저작재산권 제한규정을 도입한 국가들에서 고아저작물 권리자가 출현 후 도서관이 권리자에게 지불해야할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헝가리를 제외하고는 없었다. 한편 도서관이 고아저작물 사용 전에 수행해야할 성실한 검색에 대한 요건이 일반적인 고아저작물 이용과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고 있었다.

각국 저작권법 혹은 실무에서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사용에 대하여 이와 같은 예외를 적용하

는 것은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은 결국은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는 보상금을 사전에 부과할 경우 그 금액이 상당하여 대량 디지털화하는 도서관으로서는 실제로 부담하기 어려운 금액이기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대량 디지털화는 유통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고아저작물을 인터넷에 널리 공개하여 공공이 인류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로써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이나 지식산업의 발전 등 새로운 가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결국 각국의 고아저작물 사용에 있어서 저작권법상 도서관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이러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4.2.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법정허락제도 개선에 대한 제안

4.2.1.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 도입

현행 제50조는 보상금의 측면에서 개별적이고 영리적인 목적의 고아저작물 이용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앞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저작권법 제50조 2항에 국가대표도서관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제한하여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납본도서관으로서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후대에 전승하는 것과 더불어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대표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예외는 법정허락 신청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로 함으로써 소장된 외국인 저작물을 승인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보상금의 기준과 공탁절차를 일반적인 법정허락의 경우와 다르게 정하는 것이다. 이 예외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도서관이 해당 저작물을 디지털로 복제한 후 관내, 관간은 물론 관외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어느 곳에서나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량의 외국인 저작물 특히 번역저작물을 감안할 경우 이것이 법정허락 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

다. 이미 베른협약이 취하고 있는 보호국법주의와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도서관이 외국인저작물에 대해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실한 노력만 수행하고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특히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저작재산권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적 손실을 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용을 전 세계에 공개하여 공공의 지식접근 기회를 확대시킨다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이용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저작권법 제50조 제2항 신설

국립중앙도서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용자가 도서관 등의 밖에서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그 보관된 도서 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을 공탁하는 것에 갈음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보상금이 공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4.2.2. 보상금의 기준과 공탁에 갈음하는 절차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은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포함하여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디지털로 복제한 후 이를 도서관내에서 출력하거나 도서관간에 전송하는 것에 대한 보상금을 정하고 있다. 소위 도서관보상금은 권리자가 확인되는지 여부와 관계없고 그 이용범위도 도서관간 전송과 도서관내에서의 출력에 대한 것이다. 즉, 권리자가 분명히 확인되는 저작물을 도서관이 이용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다. 고아저작물의 이용은 이보다 범위가 확장된 것이기는 하나, 도서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디지털화하고 이를 서비스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도서관보상금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저작물보다 권리자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제2장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도서관보상금이 징수된 저작물 중 대다수가 보상금이 분배되지 않아 결국 고아저작물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고아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U지침은 추후 저작권자가 나타나는 경우 도서관과 같은 문화기관이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는 실제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만 보상받도록 하고

있고, 공정한 보상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는 문화기관의 공적인 목적, 이용의 비영리성 등과 권리자의 손실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지침이유 18번)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보상(fair compensation)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지 않고 각국의 입법에 맡기고 있다. 문화유산 기관이 그 저작물을 사용한 날짜, 고아저작물 지위에 대한 고지(법에서 요구한 대로) 여부, 저작물이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문화유산기관에 의한 사용이 해당 저작물의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미쳤는지 즉, 절판저작물이었는지 등을 고려하거나 교육용 저작물인지를 고려하여 책정될 것이라는 견해¹²⁸⁾와 공정한 보상은 곧 손실과 손해에 대한 입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상당히 낮은 비용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EU지침의 의도된 모호성에 대하여 문화유산기관의 예산이 다시 나타난 권리소유자들에 의해 약탈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즉 회원국에서 해당 저작물이 다운로드된 총량이 공정한 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어 좀 더 대중적인 저작물이 거의 이용되지 않은 저작물보다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¹²⁹⁾.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건대,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사용에 도서관보상금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관외열람과 출력의 빈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에 근거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사용량에 기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저작재산권자에게 제공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탁에 갈음하는 절차란 도서관보상금을 적용하여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한 후 저작권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승인 신청을 하되,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지 않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승인신청시 산정한 보상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권리자가 출현한 후 그의 요청에 따라 도서관이 직접 권리자에게 이를 지급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정기적으로(도서관보상금에서와 마찬가지로 1년을 적용할 수 있겠음) 도서관보상금 기준에 따라 관외 전송 및 관내 혹은 관외 출력이 이루어진 빈도에 근거하여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고 이를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보상금 지급을 요청을 받았을 경우 그 요청자가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임을 확인한 후 이미 공지된 바에 따른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할 것이다. 저작재산권자가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기관

128) Stamatoudi, I. A. & Torremans, P. 2014. *EU Copyright Law: A Commentary*.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p.686

129) Guibault, Lucie. 2012. Are European Orphans about To Be Freed?
<http://kluwercopyrightblog.com/2012/09/21/are-european-orphans-about-to-be-freed/> (2015.12.11.방문)

을 고아저작물 이용을 승인한 기관 또는 기존의 법정허락 보상금을 징수하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로 보상금을 관리하는 기관이 도서관이고, 신탁관리단체의 경우 실제로 징수된 보상금을 관리하는 단체이고, 보상금 관리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도서관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아저작물 이용기관인 도서관이 직접 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이 고아저작물 사용에 대한 승인을 얻은 후 권리자가 최대 몇 년까지 보상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지도 문제이다. 법정허락 승인을 위하여 공탁된 보상금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유지되며, 도서관보상금 등의 보상금은 분배공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미분배보상금으로 전환되어 이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5조 7항). 공탁에 갈음하는 절차에 따른 보상금은 실제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권리자가 출현한 후라는 점에서 공탁금과는 성격이 다르고, 10년의 시점을 적용할 경우 도서관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커지므로 도서관보상금의 미분배보상금 전환기간인 3년의 시점을 적용하여 보상금지급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일 도서관이 특정 고아저작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최대 3년간의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권리자 출현 후에 보상하는 방법은 도서관으로 하여금 재정적 부담 없이 고아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미분배보상금 발생 혹은 이용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예산 즉, 국가의 세금을 공탁한 후 다시 국고로 환수되는 번거로운 절차를 제거한다는 장점이 있다.

저작권법 시행령 제23조 2항 신설

제50조 제2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을 경우 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한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권리자의 보상금 청구요청에 따라 해당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한다.

4.2.3. 수수료의 면제

현행 승인신청시 1개 저작물당 1만원의 수수료가 공익목적에 위한 도서관 등의 고아저작물 승인신청시 면제가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제23조에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수수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이 특정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총당 또는 보상으로써 부과 징수하는 요금”이다. 수수료의 개념은 특정인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인은 특수 이익을 얻게 되며 이는 행정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특수경비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비스를 받은 특정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¹³⁰⁾. 이 서비스가 공공기관에 대한 것일 경우 행정주체가 또 다른 행정주체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모양이 되고 이는 또 다른 행정주체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국가예산으로 지불된다는 점에서 무의미하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저작권의 등록(저작권법 제53조) 또는 저작권 권리 변동 사항을 등록할 경우(저작권법 제54조) 그리고 저작권인접권의 등록(저작권법 제90조)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저작권법 제98조)을 할 경우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의 지분을 50퍼센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면제가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 국외의 경우 헝가리는 법정허락 신청시 비영리목적의 경우 일반적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차등적용하고 있고, 일본의 재정신청의 경우에도 국립국회도서관의 재정신청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저작권법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신설

국립중앙도서관이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 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130) 김태일, 2009. 민원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안전행정부. pp.15-18.

4.2.4. 상당한 노력의 문제

현행 저작권법시행령 제18조의 상당한 노력의 기준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다. 다만, 상당한 노력의 마지막 기준인 ‘국내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권리자를 찾는 것은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특히 대량의 저작물에 대하여 이를 수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며, 개별적인 이용자의 경우에도 그 방대한 정보통신망의 정보검색도구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권리자를 찾아야할지 불분명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저작물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달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제18조 제2항 4호의 요건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예컨대 ‘네이버’, ‘다음’, ‘구글’ 등 포털사이트를 몇 개 제한적으로 또는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그 중 1개 또는 수 개의 포털에서 저작물의 제호, 저작자의 성명 등으로 검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의 성명이나 그 거소 등을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결과물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구체화하여 검색의 시간과 비용을 축소시켜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는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저작물, 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이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만일 저작권등록부에 등록된 저작물 전체, 신탁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전체가 이 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한다면 시행령 제18조 상당한 노력의 기준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노력은 중복된 노력일 수 있다. 신탁관리업자는 저작권법시행규칙 제20조 (보고) 규정에 따라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어 저작권위원회가 관리하는 권리자찾기 정보시스템에 신탁관리단체의 관리 저작물이 모두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1장에서 확인하였듯이 현재 이 시스템관리기관에서는 신탁관리 저작물이 모두 이 시스템에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저작물등록부와 신탁관리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관리저작물을 일괄적으로 권리자찾기 DB에서 관리하여 권리자를 찾으려는 이용자와 고아저작물이 하나의 레지스트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성실한 검색에 대한 기준은 개별적인 저작물 이용자에게는 적합하지만 도서관이 대량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를 권리자찾기 사이트를 통하여 일일이 검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요된다. 도서관이 이용하려는 저작물이 권리자찾기 사이트에 등록된 저작물인지를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수준에서 기관간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3.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적용 및 서비스 방안 제안

4.3.1.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적용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에 대한 법정허락제도 예외규정이 도입될 경우 실무상 가장 어려운 점은 법정허락을 신청하려고 하는 자료에 대한 성실한 검색을 수행하는 문제일 것이다.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고아저작물로 판명된 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들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다시 성실한 검색을 수행하지 않아도 법정허락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3.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현재 권리자찾기 사이트를 통하여 성실한 노력을 수행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은 약 74만건이다. 물론 이中には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 중 도서관보상금이 미분배된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 중 보상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이용된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2.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국립중앙도서관이 2004~2013년간 디지털화한 29만건의 보상금부과대상 저작물 중 보상금이 징수된 저작물은 75,954건(26.2%)이고, 이중 보상금이 분배된 저작물은 544건(0.7%)이다. 따라서 2013년까지 디지털화한 자료 중 75,410건에 대하여 성실한 노력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도 법정허락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한 리스트는 한국복사전송저작권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보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권리자찾기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74만건 중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법정허락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75,410건을 제외한 약 21만건에 대하여 권리자찾기 사이트의 법정허락대상 저작물인지를 검색할 수 있으나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결국 권리자찾기 사이트 운영기관인 저작권위원회와의 기관간 협력을 통하여 법정허락대상 저작물 DB와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저작물 목록의 매칭작업을 통하여 동일 저작물을 선별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권리자찾기 사이트의 검색화면 상으로 제공되는 메타데이터가 서명, 저자, 출판사 등 매우 간략하게 제공되고 있어 DB에도 ISBN 등의 도서고유식별기호가 관리되고 있지 않다면 매칭작업 또한 쉽지 않으리라고 보인다.

그런데 미분배보상금 저작물이 정기적으로 새롭게 추가되고 법정허락 기승인 저작물도 지속

적으로 추가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복된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정 시점 이후에 권리자찾기 사이트에 추가된 법정허락대상 저작물을 국립중앙도서관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3.2. 디지털화와 상당한 노력의 수행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 중에서 권리자찾기 사이트의 법정허락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저작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상당한 노력을 수행한 후에 법정허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상당한 노력의 절차는 3.1장에 상세히 제시되었다. 상당한 노력의 첫 번째 요건인 저작권등록부 열람은 현재 권리자찾기 사이트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는 등록시점이 2005년도 이후부터인 저작물만 검색되므로 그 이전에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부 열람을 해야 하나, 어문저작물의 경우 2005년 이전 등록자료는 34건에 불과하므로 권리자찾기 사이트를 통하여 거의 모두 열람할 수 있다. 권리자찾기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한 등록된 어문저작물은 37,864건이다. 다만, 앞서 법정허락대상 저작물에 대한 확인과 마찬가지로 수십 만건에 이르는 도서관의 대량의 저작물을 일일이 권리자찾기 사이트의 저작권등록 DB에서 확인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면에서 실제로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에 대해서도 저작권위원회의 협조를 통하여 일괄검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수행해야할 상당한 노력의 두 번째 요건은 법정허락 승인을 신청하려는 저작물이 저작권신탁관리단체에 신탁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은 어문저작물 분야의 승인된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에 저작재산권자의 성명(명칭), 주소를 조회하는 문서를 보낸 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거나 회신이 없을 경우 문서발송일로부터 최대한 1개월이 지나야 한다. 사실 신탁관리단체의 신탁저작물도 권리자찾기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는 신탁관리단체 저작물이 그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전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저작권법시행규칙 제20조(보고)에 따라 신탁관리업자는 신탁받은 저작물 등의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일 이 규정대로 신탁저작물 내역이 모두 제출되어 권리자찾기 사이트 상에서 검색될 수 있다면 상당한 노력의 두 번째 요건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현재로서는 도서관도 상당한 노력의 2번째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문서로서 권리자 조회를 의뢰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예컨대 도서관이 약 1만건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조회를 신탁관리

단체에 요청하였을 경우 해당 단체에서 이를 한달 만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결국 도서관이 파일형태로 전달한 권리자에 대한 정보를 권리자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할 터인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탁관리단체의 DB가 도서관에 대한 고유 식별기호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일괄처리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당한 노력의 세 번째 요건은 권리자가 확인되지 않는 저작물을 권리자찾기정보시스템에 10일간 공고하는 것이다. 이 요건은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요건은 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하여 저작권자와 그의 거소를 검색하는 것으로서 대량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행하기는 어려운 요건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에 따라 지정된 한 두 개의 포털을 대상으로 한 권리자 찾기라도 도서관으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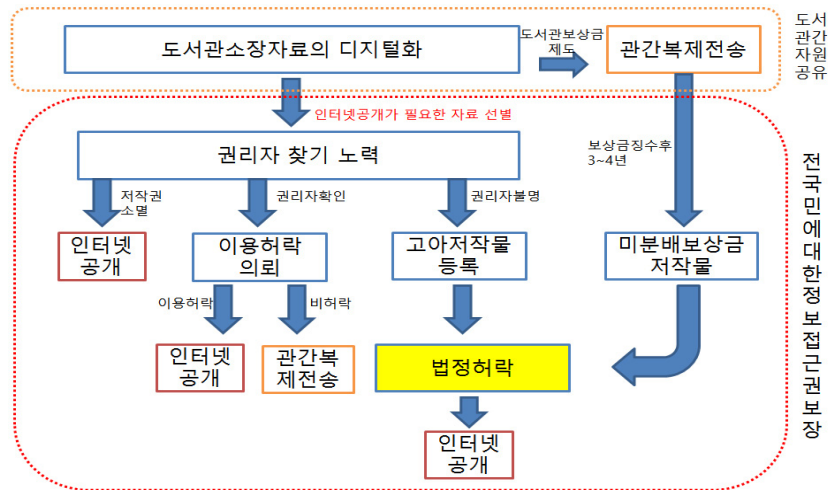
4.3.3. 법정허락제도를 활용한 서비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사용에 대한 법정허락 예외규정이 도입될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자료 디지털화는 두 가지 제도 하에서 진행되게 된다. 하나는 현행 도서관보상금제도이다. 도서관보상금제도는 디지털로 판매되지 않는 한 도서관이 소장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디지털화한 자료의 제공범위가 도서관간으로 제한되므로 이용자 입장에서의 접근한계가 존재한다. 법정허락 예외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할 수 있는 저작물은 도서관보상금제도에서보다 제한된다. 그 절차도 복잡하고 수수료와 보상금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간접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외규정이 필요한 것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전국민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장시켜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활용하는 것은 그것이 고아저작물이기 때문이어서는 아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자료 중 어떤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에 공개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예컨대 절판 등의 이유로 일반인이 쉽게 구하기 어려운 자료 등)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앞서 기술한 기존에 이미 디지털화한 자료를 법정허락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서비스하는 것과 달리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의 법정허락예외 규정을 활용하는 것은 곧 인터넷에 공개해야만 하는 자료를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용빈도나 특정 주제에 대한 컬렉션, 희귀한 자료 등 여러 가지 선별기준이 있겠으나 이들 자료의 공통분모는 아마도 절판자료일 것이다. 절판자료는 고아저작물일 가능성은 높으나 그것이 반드시 고아저작물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터넷에 공개할 자료가 선별되면 이들 자료를 대상으로 저작권자를 찾는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상당한 노력의 수행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저작권이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거나 권리자를 찾거나 혹은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임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권리자를 찾은 경우 도서관은 이용허락의 절차를 통하여 비용을 지불하거나 혹은 저작권 기증을 받아 해당 저작물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으나, 권리자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 도서관보상금제도에 따른 서비스만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상컨대 저작권이 소멸된 자료나 권리자를 찾을 수 있는 자료는 극히 드물 것이고, 따라서 권리자찾기의 절차를 수행한 후에도 계속 도서관보상금제도에 따라 서비스해야 하는 자료가 얼마나 될 것인지 의문이다.

저작권자인가 도서관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한 자료의 서비스 범위는 관내전송, 관간전송, 관외전송으로 다소 복잡하게 보여질 것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목록 정보에 해당 저작물의 공개범위와 그 사유 즉, 저작권보호기간 만료자료인지, 법정허락 승인에 따른 것인지, 도서관보상금제도에 따른 것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법정허락 승인에 따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승인일자, 해당 시점까지의 보상금액, 보상금액의 수령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저작물의 권리자가 나타났을 때 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25]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의 인터넷 공개 절차

4.3.4. 권리자찾기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베이스 연계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저작권찾기시스템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대량의 저작물에 대하여 권리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지 않다. 이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한 도서관의 권리자찾기 작업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저작권찾기시스템에 국립중앙도서관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자찾기시스템에 국립중앙도서관 서지DB를 연계함으로써 4가지 데이터 품질(정확성, 최신성, 완전성,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저자명과 서명의 데이터 항목별 데이터값의 정확성, 데이터 항목들의 최신성, 데이터 항목과 데이터값의 완전성, 데이터 항목과 데이터값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한가지 권리자찾기시스템은 전거파일 및 식별자의 활용을 통하여 특정 저자와 출판사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구축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권리자찾기시스템에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거파일을 연계함으로써 저자와 출판사 등에 대한 정확한 식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의 전거파일을 연계함으로써 식별 범위를 확대하거나 UCI와 함께 DOI, ORCID 등의 식별체계를 도입하여 국제적 식별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권리자찾기시스템이 이와 같은 기능을 갖추는 것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저작물 정보가 많아질수록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권리자찾기시스템의 데이터가 이와 같이 관리될 때 도서관이 이 시스템을 통하여 권리자를 찾는 과정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권리자찾기시스템 관리자 측에서도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하는 목록의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부가적 정보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디지털화하고 있는 자료 중 고아저작물을 관외전송서비스하기 위하여 저작권법 제50조 저작재산권자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법정허락 규정의 개정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을 현행 저작권법 제50조에 따라 이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법정허락 승인 신청시 저작물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과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이 신탁관리단체의 사용료를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어 도서관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는 점, 외국인 저작물이 승인신청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도서관에 소장된 외국인 저작물이 고아저작물일 경우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점, 성실한 노력의 4번째 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광범위하여 대량의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려는 도서관이 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둘째, 국외의 저작권법 규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는 달리 입법의 형태가 법정허락의 방식이든 저작재산권 제한의 방식이든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대량 디지털화하여 관외전송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거나 준비 중에 있었다. EU지침을 따르고 있는 국가들은 권리자가 출현한 후 도서관이 그동안의 사용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호주는 유연한 예외 규정을 이용하여 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비용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기존에 법정허락제도를 가지고 있는 캐나다와 일본은 도서관을 위한 법정허락 예외규정은 없으나 실무에서 도서관이 공익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영리목적의 이용에 비해 매우 낮은 명목상의 보상금을 부과하고 있었다. 헝가리의 경우 EU지침에 따른 고아저작물 예외규정 도입이전에 마련한 법정허락 예외규정에 따르면 비영리 목적으로 고아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고아저작물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이용행위 전에 공탁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셋째, 국가대표도서관이 고아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현행 저작권법 제50조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국가대표도서관에

대한 법정허락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보상금을 기준으로 고아저작물의 관외전송 및 관내외 출력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되, 이를 공탁하는 대신 권리자가 나타나 보상금을 요청할 도서관이 직접 저작재산권자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승인신청에 따른 수수료 면제하는 것 등이다. 또한 상당한 노력의 4번째 기준인 ‘국내정보통신망 정보검색도구’를 이용한 권리자 찾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이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 향후 디지털화하는 자료에 대하여 상당한 노력을 수행하는 절차, 디지털화된 원문자료의 목록에 저작권 관련 정보를 포함시킬 것, 권리자찾기 데이터베이스와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만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다. 또한 도서관의 고아저작물 활용을 위한 다양한 입법의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고 다만 현행 저작권법 제50조의 적용방안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다. 인류의 지식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들은 다양하다. 설립주체나 소장자료의 유형 등은 다양하나 공공에게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도서관들을 포함하여, 기록관, 박물관 등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기관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장자료 서비스를 위하여 다양한 디지털화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기관 역시 고아저작물의 문제에 봉착해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된 시각을 확대하여, 향후 국립중앙도서관 이외의 다양한 도서관 및 국내의 문화유산기관의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고려한 고아저작물 활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Alpin, Tanya. 2010. A global digital register for the preservation and access to cultural heritage: problems, challenges and possibilities. (in Copyright and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and access to works in a digital world. The Lypiatts: Edward Elgar Publishing Limited, 2010): 3-27.
- ARL. 2011. Resource packet on orphan works: legal and policy issues for research libraries. <http://www.arl.org/bm~doc/resource_orphanworks_13sept11.pdf>
- ARL. 2015. Issue brief: copyright office report on orphan works. <<http://www.arl.org/storage/documents/IssueBrief-OrphanWorks-5JUNE2015.pdf>>
- Athique, A. 2013. Digital media and society: An introduction. Cambridge, England: Polity Press.
- Borghi, Maurizio and Karapapa, Stavroula. 2013. Copyright and mass digitiz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enter for the Study of the Public Domain. 2005. Orphan works analysis and proposal. <<https://web.law.duke.edu/cspd/pdf/cspdproposal.pdf>>
- Cornish, G. P. 2015. Copyright: Interpreting the law for libraries, archives and information services. London: Facet Publishing.
- David, Matthew and Halbert, Debora(ed.). 2014. The SAGE handbook of intellectual property. Los Angeles: SAGE.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 2009. Digital Britain.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culture.gov.uk/images/publications/digitalbritain-finalreport-jun09.pdf>>
- Derclaye, Estelle(ed.). 2010. Copyright and cultural heritage : preservation and access to works in a digital world. USA: Edward Elgar.
- European Commission. 2011. Impact assessment on the cross-border online access

- to orphan works.
<http://ec.europa.eu/smart-regulation/impact/ia_carried_out/docs/ia_2011/sec_2011_0615_en.pdf>
- Gervais, Daniel J. 2015.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UK: Edward Elgar Publishing.
- Gompela, Stef van and Hugenholtza, P. Bernt. 2010. The Orphan works problem: the copyright conundrum of digitizing large-scale audiovisual archives, and how to solve i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Media and Culture*, 8(1): 61-71.
- Guibault, Lucie. 2012. Are european orphans about to be freed?
<<http://kluwercopyrightblog.com/2012/09/21/are-european-orphans-about-to-be-freed/>>
- Hansen, David R. et al. 2013. Solving the orphan works problem for the united states. *Columbia Journal of Law and Arts*, 37(1): 1-55.
- Hargreaves, Ian. 2011. Digital opportunity: a review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growth.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2563/ipreview-finalreport.pdf>
- i2010: Digital Libraries. High level expert group: copyright Subgroup. 2008. Final report on digital preservation, orphan works, and out-of-print works.
<http://www.cenl.org/docs/Report_Digital_Preservation_Orphan_Works_Out-of-Print_Works_Selected_Implementation_Issues_June07.pdf>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d.]. Government response to the technical consultation on orphan work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15078/Orphan_Works_Government_Response.pdf>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4. "Factsheet: orphan works licensing scheme and extended collective licensing."
<<http://www.ipso.gov.uk/orphanworks-licensing.pdf>>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4. Orphan works diligent search guidance for

- applicants : literary work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52834/orphan-works-literary-works.pdf>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5. Orphan works diligent search guidance for applicants: Literary Work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352834/orphan-works-literary-works.pdf>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5. Orphan works licensing scheme overview for applicants.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50649/Orphan_Works_Licensing_Scheme_Overview_for_Applicants.pdf>
- Ioannides, Marinos(ed.) and Magnenat-Thalmann, Nadia(ed.) and Fink, Eleanor(ed.). 2015. Digital heritage: progress in cultural heritage. documentation, preservation, and protection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EuroMed 2014, Limassol, Applications, incl. Internet/Web, and HCI). Cham: Springer.
- Janssens, Marie-Christine and Tryggvadóttir, Rán. 2014. Facilitating access to orphan and out of commerce works to make Europe's cultural resources available to the broader public.
 <<https://lirias.kuleuven.be/bitstream/123456789/473876/1/2014+Final+paper+Orphan+Works+Conference+Athens+2014.pdf>>
- Jeremy de Beer & Mario Bouchard. 2009. Canada's "Orphan works" regime : unlocatable copyright owners and the copyright board.
 <<http://www.cb-cda.gc.ca/about-apos/2010-11-19-newstudy.pdf>>
- JISC Collections Trust. 2009. In from the cold: an assessment of the scope of 'orphan works' and its impact on the delivery of services to the public. JISC Collections Trust.
 <<http://www.jisc.ac.uk/media/documents/publications/infromthecoldv1.pdf>>
- Klein, Bethany.et al. 2015. Understanding copyright :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digital age. Los Angeles: SAGE.

- Library Copyright Alliance. 2011. Library copyright alliance statement on copyright reform.
 <http://www.arl.org/storage/documents/publications/lca_copyrightreformstatement_16may11.pdf>
- Library of Congress. 2013. Comments of the Library of Congress. In response to the copyright office notice of inquiry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 Manuel, Kate M. 2009. The Google library project: is digitization for purposes of online indexing fair use under copyright law?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http://cdm16064.contentdm.oclc.org/cdm/ref/collection/p266901coll4/id/2322>>
- Palfrey, John. 2015. *Bibliotech*. New York: Basic Books.
- Pallante, Maria A. 2012. Orphan works & mass digitization: obstacles & opportunities.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27(3): 1251-1258.
- Pedley, Paul. 2015. *Practical copyright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London: Facet publishing.
- Rydén, Jerker. 2013. Legal restrictions and the digital library: is digital access to knowledge achievable? IFLA WLIC
 <<http://library.ifla.org/223/13/198-ryden-en.pdf>>
- Sag, Matthew. 2012. Orphan works as grist for the data mill.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http://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038889>
- Sneftleben, Martin. 2014. How to overcome the normal exploitation obstacle: opt-out formalities, embargo periods and the international three-step test.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Commentaries*, 1: 1-19.
- Stamatoudi, I. A. & Torremans, P. 2014. *EU copyright law: A commentary*. Cheltenham, UK: Edward Elgar Publishing.
- Stratton, Babra. 2010. Seeking new landscapes: a rights clearance study in the context of mass digitisation of 140 books published between 1870 and 2010.
 <<http://www.arrow-net.eu/sites/default/files/Seeking%20New%20Landscapes.pdf>>

- The Authors Guild, INC., and Betty Miles, Joseph Goulden, and Jim Bouton. 2013. On behalf of themselves and all others similarly situated against Google Inc., 2013. Circuit judge chin, case 1:05-cv-08136-DC document 1088, Filed 11/14/13)
<<http://www.documentcloud.org/documents/834877-google-books-ruling-on-fair-use.html>>.
-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2. Directive 2012/28/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October 2012 on certain permitted uses of orphan works.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2:299:0005:0012:EN:PDF>>
- U.S. Copyright Office. 2006. Report on orphan works.
<<http://copyright.gov/orphan/orphan-report-full.pdf>>
- U.S. Copyright Office. 2015. Orphan works and mass digitization: A Report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North Charleston, South Carolina: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 Urban, Jennifer et. al. 2013. Report on orphan works challenges for libraries, archives, and other memory institutions.
<http://www.cmsimpa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report_on_orphan_works_challenges.pdf>
- Walker, Robert Kirk. 2014. Negotiating the unknown: a compulsory licensing solution to the orphan works problem. *Cardozo Law Review*, 35. 983-1018.
- White, Andrew. 2014. *Digital media and society : transforming economics, politics and social practic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고경대, 박행웅, 박종찬, 박호상. 2015. 디지털자료의 국내외서비스 사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mcst.go.kr/web/s_data/research/researchView.jsp?pSeq=1449>
- 김태일. 2009. 민원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안전행정부.
- 안효질. 2012. 권리자 미확인 저작물에 대한 관리 방안 연구. 서울: 한국저작권위원회.

- 오승종. 2012. 저작권법. 제2판. 서울 : 박영사, 2012.
- 이해완. 2012. 고아저작물 도서 등에 대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방안. 문화체육관광부.
- 정경희. 2014. 도서관보상금체제에서 고아저작물 체제로의 전환 모색.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4): 193-214.
- 정경희. 2015. 도서관보상금제도 운영현황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265-288.
- 최진원. 2011. 권리자불명 저작물 활용 방안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법정허락제도를 중심으로. 정보법학 15(2): 217-254.
- 홍유미, 윤종민. 2012. 고아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과학기술과 법 3(2): 189-222.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정경희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 공동연구원 :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과)
이호신 (한성대학교 지식정보학부)
김규환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보조연구원 : 장지영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박태섭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자문위원

홍재현 (중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경숙 (상명대학교 저작권보호학과)
김종철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연구협력관

김태경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최유진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기획과)

2015년 연구보고

도서관에서의 고아저작물 활용 및 서비스 방안 연구

- 법정허락을 중심으로 -

인 쇄 : 2015년 12월 15일

발 행 : 2015년 12월 18일

발행처 : 국립중앙도서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반포동)

Tel. 02-590-0653 Fax. 02-590-0502

<http://www.nl.go.kr>

연구기관 :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

ISBN 979-11-5687-205-4

